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1998년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새롭게 수립·시행된 해이다. 특히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삶과 사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 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펴 온 선도·보호·교화 위주의 청소년정책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에 대한 기본발상과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이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천정웅, 1998b: 1).

국가정책적인 방향전환과 함께 전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의 자율적 삶과 주체적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생겨났는데, 이는 전 인류·전세계적으로 인간의 자율과 참여, 그리고 권리에 대한 이슈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의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 신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 청소년의 권리를 세계적인 권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인권신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 확대 등으로 사회국가적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시키고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를 맞기도 했다. UN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비준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10월 25일에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울을 강조하는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에 상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인식의 전환이자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잘못된 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는 ‘학부모헌장’과 새로운 교육을 위한 실천사항을 담은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였으며(98. 9. 29),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학생인권선언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98. 11. 3). 교육부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와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학생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999년도에 가칭 ‘학생권리보호헌장’을 제정·공포할 예정에 있다(교육부, 1999: 47).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대명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청소년 분야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이자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명확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즉, 1998년이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세계적인 동향에 따른 정책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청소년 자율·참여·권익증진’이라는 새로운 정책가치가 창출되고 정책·제도화되기에 이르는 시기였다면, 1999년은 본격적으로 수립된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구현하

고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99년도는 새로운 청소년정책 비전이 구현·실현되는 본격적인 시기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이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로서, 청소년의 일상생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회 부문과 영역에서 이러한 정책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여 다양한 수준의 개인 또는 집단이 실제 실행해 볼 수 있게 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의 우수사례를 발굴·소개하여 보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현시점에서 청소년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제시된 정책추진과제들을 각 지역과 다양한 조직 수준에서 실천할 때 그 운영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예측하고 보다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새로운 청소년정책 가치인 ‘청소년 자율·참여 및 권익증진’을 실현 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권익증진’의 이론적·역사적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가 청소년 연구 및 활동의 한 분야로 개발·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UN 등 국제기구의 관련논의와 정책방향 및 주요 외국의 관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권리의 세계적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기구의 세부 활동프로그램과 주요 외국의 활발한 모범정책·제도 사례와 국내의 의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자율참여와 권익증진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사례제시와 모범 정책 소개는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 모든 청소년 관련 부문에서 올바르게 정착되고 실천프로그램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청소년 권익증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 및 의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가치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어 사회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된 사회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연구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 분야가 정책방향으로서만이 아니라 학문적·이론적으로도 독자적으로 체계화된 연구영역과 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청소년 권리 유형에 대한 구분과 개념을 명확히 하며, 특히 아동의 권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청소년 권리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이후 청소년자율과 권리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이론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기존의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아동 연령을 중심으로한 생존·보호권적 권리 중심의 논의로 이

루어져 옴으로써 ‘자율과 참여’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자율적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시민적 권리의 향유와 사회참여 등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최윤진, 1998. 5 : 67)에 착안하여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청소년의 적극적 권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권익증진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외국 활동사례 조사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의 관련역할과 활동 동향을 검토하였다. 유엔총회보고서 및 유엔 인권 비준서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논의의 역사적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적극적 권리와 자율참여활동에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도록 하였다. 주요 세계회의에서 권고 또는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이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권익증진과 관련된 외국의 활동프로그램과 기관·단체의 주요사업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 국내의 청소년 권리현황과 권익증진 활동사례 조사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 현황과 주요활동 및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을 위한 주요 기구·단체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특히,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구체적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우수 활동사례가 더욱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¹⁾ 국외의 활발한

1) 일례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직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샵(98. 8. 21)을 개최하여

활동사례들을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내실있는 활동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에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던 주요 활동들의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자생적 자율참여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단체·기관과의 공동 논의와 협력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 분야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일반 인권·권리 관련 기관·단체의 ‘청소년 권리’ 부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였다.

(4)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제시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사례를

다양한 청소년 자율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천활동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나누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당시 워크샵에서 소개된 활동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동아리인 ‘FIT(이웃을 위한 침대 자원봉사)’, 밝은 꿈·맑은 뜻·바른 정서를 주요 가치로 표방하며 문화활동을 위주로 자율활동을 펼치는 ‘푸른이 모임’,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제작·운영하는 청소년웹진 ‘CH 10’, 청소년들이 주체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 및 토론회개최까지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청소년 토론광장’, 그 외에도 ‘또래 상담활동’,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의 하나인 ‘청소년시책모니터단’, ‘청소년구정평가단’ 활동,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위원회’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활동인 ‘환경탐사활동’, 학교에서의 자율참여의 의미를 갖는 ‘청소년열린법정’ 등의 활동 소개도 있었다. 워크샵을 통해 참여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의 사례를 듣고 배우며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하는 다양한 청소년 모임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더욱 자부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때 소개된 활동들은 이후 각 분야와 타지역들에 널리 소개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청소년의 자율활동과 권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관련 자료와 연구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새롭게 정책영역화된 이 분야가 하나의 연구분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인터넷 자료 검색 및 번역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의 국외 동향 파악을 위해 유용한 국외 문헌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활발한 활동프로그램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의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자료를 조사·발굴하여 번역·소개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권익증진에 관련된 학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기관·단체 관계자, 청소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행 과정과 연구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와 청소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제 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우리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자율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4) 워크숍 개최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 기관·단체 관계자, 청소년, 교사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권익증진 관련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모여 활동프로그램과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며, 서로의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긴밀한 연계·협력관계를 갖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며,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 권익증진 관련 연구

(1)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저자는 우리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심화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의 무시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존재가치가 경시되고 세대간의 갈등이 커진다는 점에서 지금 이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지적하고, 과연 청소년에게도 권리가 있는가의 여부와 있다면 어떤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문제와 함께 비행청소년과 자립시기의 청소년의 권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성격 그리고

각 생활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과 이슈들을 연구하고, 관련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사안별로 관련된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실태와 현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현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행사의 정도를 가늠하고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2) 성정숙(1998). 학생과 교사의 아동·청소년 권리인식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이 시혜적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시민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게 유보되어 왔던 참여적 권리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 연구는 실증적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보장 실태와 권리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의 인식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분석을 통해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교사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현황을 드러내 주었다는 데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학생의 인권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현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학생권리의 현주소를 분석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헌법이 학생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구조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결과,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대다수의 학교에 있어 입시문화와 권위주의문화가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이러

한 문화를 기반으로 통제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장치’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구성된 통제 메커니즘이 학생들의 인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당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정적 시선과 무관심, 통제위주의 학교방침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인권침해의 경험이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반인권적인 구조와 문화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적극적 저항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학생인권 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위해 성인들이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할 것, 교사들의 지지, 학교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통한 학생 참여 확대, 외부 인권단체 등의 사회적 감시망 활동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 천정용·김영지·임지연(1997).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이 책은 『청소년참여 증대 방안 연구』 수행에 따른 국내·외 전문가의 원고와 관련문헌을 번역·정리하고 주요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발간한 것이다.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주요 외국의 청소년참여 동향」 부분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사회참여 현황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의 실태가 실려있으며, 네덜란드의 청소년참여 현황과 실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청소년기관으로 청소년이사회, 유럽청소년센터, 유럽청소년재단이 소개된다. 두 번째로 「청소년참여 정책의 실제」에서는 국내·외의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로서, 국내의 ‘청소년대표와의 대화’, ‘청소년구정평가단’ 활동과 영국과 미국의 ‘청소년위원회’ 활동, 그리고 워싱턴시의 ‘청소년위원회’ 현상이 소개된다. 세 번째 부분인 「청소년참여와 청소년 로비활동」에서는 유엔의 청소년 참여와 권리에 관한 권고, 학생 참여와 시민권, 청소년들의 로비활동 지침이 소개된다.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를 인터넷과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현지 연구자의 원고집필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5) 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 청소년참여증대방안 연구

이 책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정책을 자율적으로 계획·수행·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정책과정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연구된 것이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일상화하여 지역 청소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연구, 청소년의 참여 의식과 실태 분석 및 참여여건 진단, 국내·외 청소년참여 사례조사 등이며, 특히,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시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양한 선진 외국의 청소년참여 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소년참여 증대 방안으로는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등 전반적인 사회여건 확보, 다양한 제도의 보완·개발 등이 제시되는데, 그 중 공식적인 청소년참여기구로서 ‘청소년대표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제안된다.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연구라 할 수 있다.

(6)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 신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청소년의 인권을 국제인권규약의 일반적인 분류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혹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분류하기보다는 청소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시민권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양육과 보호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 각 분야별 인권상황, 인권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의 결과를 다룸으로써 열악한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청소년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하며,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를 조직·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킨 시발점이 된 연구라 할 수 있다.

(7) 황성기(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아동은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인권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권’에 관한 체계적 인식과 그 정립은 아동관련정책이나 제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아동의 지위와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한 연구 결과로서 첫째, 아동은 부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둘째, 학생으로서의 아동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로 교칙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셋째, 아동 고유의 권리인 생존, 성장, 발달권과 의견표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섯째, 소년보호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여섯째, 일정한 표현물에 대한 아동의 접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제규정들의 명확성의 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일곱째,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인 아동학대를 부모의 양육·교육권의 행사와 구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서비스제도를 정립하여야 하며, 여덟째,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상 아동의 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청소년 자율과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자료와 매뉴얼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권리를 알고 이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권리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질적인 권리증진 방법을 안내해주는 자료들로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참여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1) Hong Kong 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이 책은 아동복지연맹의 훈련교재 중 홍콩판을 한국지역사회복지회(Save the Children Korea)가 번역한 것으로, 아동을 위해 일하는 교사, 사회사업가, 전문가, 학부모 등을 위한 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이다. 전체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아동의 생존권, 아동의 보호권, 아동의 발달권, 아동의 참여권, 조사와 보고에 있어 NGO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교재인 만큼 아동권리협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과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권리 관련 실무자들의 워크숍 교재로 활용되기 적절하다.

(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이 책은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쉽고도 핵심적인 인권교육활동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 인권의 내용, 인권이 추

구하는 가치, 인권지킴이 등 5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장별로 기초 이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 관련 실태와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에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조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이 실려 있다. 인권운동 분야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쌓아온 단체에서 다양한 시도와 접근으로 개발한 인권교육 교재인 만큼 의미와 흥미를 모두 갖춘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3) 이배근·이용교·류은숙(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 책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펴낸 것으로서 “아동권리 캠페인 : 평화가족 만들기”의 지침서로 개발된 것이다.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화가족’, 게임으로 배우는 어린이권리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부모에게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끝으로 부모나 교사가 아동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인권교육의 새로운 교육방식 모색을 위하여 기획되었으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지도안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권교육의 이론과 방법, 인권교육의 현실과 분석과 인권교육의 수업모형들이며, 도덕과와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을 기초로 하고, 동시에 학교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인권적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일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방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5) 국제사면위원회 · 이용교, 이희길 역(1996). 인권교육의 기법

이 책은 국제사면위원회가 1994년에 출판한 초보자를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을 번역 · 소개한 것으로서 자신의 권리 알기,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인권의 존중 · 보호 · 증진, 국제적 유대를 향하여 등 네 단계의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된 이 책은 경제적 생활수준에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었다.

(6) 유니세프뉴욕세계교육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펴냄(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

이 책은 아동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로서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협약의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협약의 조항들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가 침해 당하는 사례에 대한 해결책 마련 단계,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크게 ‘아동의 권리협약을 배웁시다’, ‘행동계획’, ‘교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유엔인권센터 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이 자료는 유엔인권센터가 1989년에 발간한 「Teaching human rights -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인권에 관한 각성과 지식을 배양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상호호혜와 보편성 그리고 몇가지 실제적인 행동을 원하는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의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주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학습, 그리고 각국의 교사지침이나 이미 이용가능한 시청각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제안,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실규칙 만들기과 자신의 인권과 책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습으로서 더욱 현실적인 내용과 현상적인 문제 - 인종차별 등 - 등을 다루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본 기존연구의 미비점과 본 연구방향과 관점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는 질적 우수성 논의 여부를 떠나 앞에서 검토한 연구물들이 청소년권리 관련 연구의 상당부분에 가깝다고 할만큼 연구실적의 양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동권리학회나 청소년학회 등에서 청소년권리와 인권에 대한 주제를 활발히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논문이나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등도 이 시기에 들어서야 서서히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이다.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권리에 대한 연구는 연구제목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연령대 중 ‘아동’(만18세 미만)연령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그러므로 ‘청소년’만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권리이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아동,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범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쌓아가는 노력은 절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심도깊은 학문적 논의보다는 인식 전환과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 자료의 주제로 다루어진 것도 하나의 실례라 하겠다.

이제 아동과는 차별화되는 청소년 연령규정, 청소년 권리의 개념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이론틀을 갖고 종합적인 설명력을 갖는 청소년 권리에 대한 논의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청소년 권리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연장된 청소년기를 생애 주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재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조혜정, 1998: 34)이나,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하며,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평등한 사회적 존재로서, 나름대로의 자의식과 무한한 잠재능력, 순수한 비판의식 등 성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책임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협력해 나갈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천정웅, 1998a: 207), 그리고 그동안 청소년을 보호, 간섭,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자율적 권리 주체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복지권’보다는 ‘자유권’²⁾을 중요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최윤진, 1998: 68)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나이가 어리거나 미숙할수록 자유권보다 복지권이 더 중요시된다고 볼 때, 그동안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보호, 규제, 선도의 대상으로

2) ‘복지권’은 청소년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약물중독, 영양실조, 열악한 노동환경,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등 부모나 사회, 국가의 보호와 간섭을 통해 신체를 보존하고 기본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자유권’이란 결정 선택의 자유, 프라이버시, 종교, 양심, 표현,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합목적적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향유되어야 할 일종의 불간섭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이봉철, 1991, 최윤진, 1998: 67에서 재인용)

과약한 채, 자유권을 많이 제한해 온 것은 청소년들을 ‘아동’처럼 미숙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해 온 데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성인에 비금가는 자유권이 부여되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아동 수준의 복지권만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적 사고 및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UN에서는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로 공식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많은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시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체적 권리가 미흡한 한국사회의 수준에서 볼 때 정책 수준에 있어 많은 간극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도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인기와는 다른 독자적인 생애 주기로 인정하고 그들을 삶의 주인이자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이러한 철학이 드디어 청소년정책에까지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발언권, 참정권, 시민권을 책임있게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독자적인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영역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자율과 권리 실태와 현황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본적으로 미흡하고 열악한 청소년 권리현황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는 문제점과 원인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과 세부실행 방법’ 등을 제시할 때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새로운 정책전환 이후 청소년들의 자율참여 활동 사례들을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구체적인 활동대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8).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국내외의 다양한 우수 정책·제도와 활동프로그램사례들을 발굴·소개하는 주요한 연구내용의 하나로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증진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현장의 개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존에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와 매뉴얼 등이 개발된 바 있다. 이 자료들은 청소년권리와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인식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에서 나온 자료들의 번역·소개에서 점차 국내에서 관련 지도자나 교사,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 구성·집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권리수첩’과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접하고 활용 가까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 의식 고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지만 후속연구로 반드시 수행될 의미가 있는 과제라고 볼 때, 본 연구 결과가 앞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개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이론적 논의 : 청소년권리의 이해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1. 인권의 발달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다. 그러나, 역사적, 실정법상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은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다.

인권의 발달과정을 보면, 왕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절차적 보장책을 강구하고 귀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존왕의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Magna Charta, 1215), 찰스 1세의 폭정에 항거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그리고 명예 혁명기에 시민의 자유를 법제화한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은 인권보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권리장전들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규정을 담았고,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등에서 인권의 추상적 원칙들이 선언되었다. 이 두 선언문은 당시 자연법적 계약설에 바탕을 둔 18세기 계몽사상의 산물로 근대시민사회 건설과 세계 인권사상발달의 주춧돌이 되었다³⁾. 독립선언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3) 미국의 독립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어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입법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민중의 저항권, 혁명권을 승인하였다.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가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정부의 원리로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 제시되어 있다(스기하라 야스오 저·석인선 역, 1995: 34-41).

이처럼, 인권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왕의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 남성, 성인, 백인 등의 인권은 상당히 보장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반 민중,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흑인 등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유례 없는 대량살상 전쟁을 끝낸 세계각국은 한 나라의 인권수준은 다른 나라의 인권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각성하고,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⁴⁾. 또한

며한 양도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이치라고 믿는다”라고 선언하였고,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두 선언은 자유, 평등,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적 인권사상의 전형적인 표현이다(정태수, 1991: 27).

- 4)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본인권의 광범하고도 가공할 침해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과, 다른 하나는 유엔이 창설 당시부터 부여받은 희망과 권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1945년), 동 위원회는 발족 당시부터 ‘국제권리장전’ 작성에 착수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긴급 과제로 삼은 이유는 인권의 존중이 세계 평화유지의 기초라고 인식하였기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제법으로 만들어서, 회원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대한 제1선택 의정서(일명 C규약)’ 등 ‘국제권리장전’으로 지칭되는 문서들이다. 이러한 국제권리장전들은 인권에 대한 각성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강제력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개의 국제권리장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획기적으로 신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은 1959년에 아동의 권리선언, 1989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각성이 어린이, 여성, 노동자, 흑인 등 사회적으로 열등한 인구집단에게로 확장되는 가운데, 인권의 개념도 점차 확장되었다. 인권의 초창기 개념은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맞추어져 왔으나, 그 후 사회적·경제적 권리로 확대 발전하였다. 이어서 인권의 개념은 자결권, 환경권, 인류공동유산권 등과 같은 권리로 발전하였다. 첫 번째 개념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신체의 보호, 인종차별금지, 고문금지와 같은 ‘무엇

때문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전체주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독재정치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대외적으로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침략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확보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유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인임이 절실히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인권의 존중이 세계평화 유지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국제권리장전이 요구되었다. 이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규약, 및 실시수단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중 ‘선언’ 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 채택되었다(정대수, 1991: 38-39).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인데 반하여, 이후의 개념은 '무엇을 할 권리'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인권이다. 이를테면,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적 형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권개념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구호, 평화, 환경 등의 인류전체의 문제에 관한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김용자, 1998: 19)

인권의 변화와 발전을 인권의 주된 내용에 따라서 '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입장이 있다. 즉,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1세대 인권, 사회권 혹은 사회·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2세대 인권, 그리고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3세대 인권이 있다. 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등장해 앞의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⁵⁾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80-84).

'1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는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하였는데,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부터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다. 대표적인 것은 차별로부터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2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제4조),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제5조),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제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제10조),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제12조),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의견·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0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5)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성내용을 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졌다. 전문은 8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본문 30개 조항은 자유권적 기본권(제1조~제21조)과 사회권적 기본권(제22조~제3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 참여할 권리(제21조) 등이다.

‘2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배세력의 수용을 통해 등장하였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 등(제23조),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제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제25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제27조) 등이다.

앞의 1세대와 2세대 인권이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사회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인권보장 체계를 세우는 동안 인류 구성원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제3세계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심지어 서구의 발전은 제3세계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각성에 따라, 제3세계 민중이 식민지로 빼앗긴 세월을 되찾고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재난 등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라고 불리는 3세대 인권이 출현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자결권,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구와 우주자원·과학·기술·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와 문화적인 전통·유적·기념물 등의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물론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로 획일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고,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은 각기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의 인권이 끊임없이 신장되었음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발달의 여지가 있다.

2. 아동권리의 발달

1) 제네바선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만을 따로 규정한 협약은 아직 없고 청소년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기에는 사회통념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나이 어린 아동과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을 하나의 범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용교 · 고성혜 · 이희길, 1996: 1).

“전세계 아동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1989년이었지만, 아동의 인권사상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인권사상은 근대 인권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정태수, 1991, 26-28).

시민의 인권이 확인·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당시에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조차 오랫동안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참정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계몽사상가인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어린이’를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 고유의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페스탈로찌, 프로벨 등 근대교육 사상가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학습의 주체로서 아동의 인간성이 존중되었다.

이러한 인권사상의 발전에 힘입어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⁷⁾.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고 그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선언은 그 대상을 일반 남녀로 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고 인정하는 이 정신은 이후 ‘아동의 권리 선언’(195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년)으로 계승된다.

‘아동의 권리 선언’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국제문서이다⁸⁾. 아동의 권리 선언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6) 루소는 교육소설 ‘에밀’의 서문에서 “도대체 우리들은 어린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린이 가운데에서 어른을 찾고 있으며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역설했다.

7)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1924년에 ‘국제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5대 원칙을 포함한 ‘제네바선언’으로 발표된 것을 같은 해 9월 26일 제5차 국제연맹 총회에서 추인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은 1922년에 ‘세계아동헌장’을 선언한 바 있다.

8) 유엔은 창설직후인 1946년부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을 만드는 작업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되었지만, 많은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별도로 ‘아동의 권리’만을 떼어서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기도 했다(정태수, 1991: 42-49).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네바 선언에 비교할 때 한층 상세하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내용을 확대·개선한 것이다. 기본 정신은 성장 도상에 있는 아동, 즉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선언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아동의 인권선언 사상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이 국제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아동의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정태수, 1991: 54-65).

아동권리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인권위원회는 1979년부터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인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협약초안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전반부(1980~1983년)에는 전문과 가족관계 조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는데, 가족제도를 둘러싼 각국의 다양한 제도나 관행을 조정하는 문제, 친권문제, 그리고 이민이나 난민문제 등이 논쟁거리가

을 시작하였지만 13년이 지난 1959년 11월 20일에야 ‘아동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선언이 늦어진 것은 세계인권선언과의 중복성문제,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규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되었다. 1984년부터 시작된 후반부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은 큰 변화가 생겼다.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아울러, 1988년 2월에 완성된 초안은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국제 동향에 입각해서 협약을 보다 세계적·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수렴되었다. 마침내 인권위원회의 초안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제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발효되고 있다.

2) 권리공약삼장에서 어린이헌장까지

한국에서 처음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제네바선언’(1924년)보다 한 해 앞선 1923년이였다. 당시 우리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새싹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씩씩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바로 그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였다⁹⁾.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9) 윤석중, “축사”, 국제연합아동기금 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전국대회, 1989, p. 8.

권리공약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무상 또는 유상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도록 역설한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 연소노동의 금지, 적절한 교육과 여가시설의 제공 등의 정신은 이후 ‘어린이헌장’(1957년)으로 이어졌다.

어린이헌장은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 공약 3장, 그리고 세계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과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전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상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제1조)는 표현에서처럼 어린이는 ‘인격체’이지만 ‘양육의 대상’이란 제한된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헌장은 1988년에 전문과 11개의 조문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하여야 한다.”(옛 헌장 제7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새 헌장 제2조) 등으로 크게 수정하였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제6조)와 같이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헌장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새 어린이헌장 전문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

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할을 길잡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나 국민이 그 소임을 태만히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자 우리나라에서도 협약가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외무부와 유엔아동기금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하고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한국 정부는 비준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9조 3항), 입양 허가(21조 가항), 상소권보장(40조 2항 나호 5) 등 3개 조항을 유보하였는데, 이 조항은 국내법과 배치되기 때문이었다¹⁰⁾.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8년 현재 19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0조). 그런데, 외무부는 이 협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국회동의 불요”라고 하였고, 이 협약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비준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헌법 제6조).

3) 아동권리장전의 주요 내용

‘제네바선언’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아동권리 내용은

10) 한국의 협약 비준과정과 유보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태수의 ‘아동의 권리협약(1991)’을 참고할 것.

점차 풍부해지고 보다 확고해짐을 알 수 있다. 제네바선언의 본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에 필요한 여러 수단을 가져야 한다
- 제2조 : 굶주린 아동은 음식, 병을 앓고 있는 아동은 치료,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갱생되고,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를 얻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제3조 : 아동은 위험한 때에는 먼저 구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 아동은 생계를 세울 수 있는 지위에 놓이고, 또한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제5조 : 아동은 그 재능을 인류 동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받쳐야 한다는 자각 밑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제네바선언은 전문에서 “아동은 최선의 것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보다도 불우한 조건하에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혜적 성격이 농후했다(정태수, 1991: 34). 제네바선언에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소득,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에서 사회적 욕구가 있는 아동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별도로 특별히 아동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선언’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이 선언의 전문은 모두 6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제1단락),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확인(제2단락),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의 법률상 특별 보호(제3단락), 특별보호는 국제적 선언과 국제기구의 규약으로 인정(제4단락),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의무(제5단락), 모든 개인과 집단은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준수를 위한 노력(제6단락) 등을 강조하였다. 본문은 모든 아동의 차별금지(제1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2조),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3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4조), 장애아동의 특별한 치료·교육·보호(제5조), 가정보호와 가정이 없는 아동의 특별보호(제6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조), 맨 먼저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제8조), 모든 형태와 학대와 연소고용의 금지(제9조), 모든 형태의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보호(제10조) 등을 규정하였다. 아동의 권리 선언은 일부 국가가 주장한 것처럼 ‘조약’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제네바 선언에 비교할 때 아동의 권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선언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이 이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실현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의 권리 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인권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 등이다.

永井憲一은 이 협약을 크게 1) 총칙, 2) 국제적 인격권과 시민적 자유, 3) 아동으로서 양육되고, 보호될 권리와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4) 절차규정으로 분류한 바 있다(이용교·고성혜·이희길, 1996: 8-10).

총칙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인 아동의 정의(제1조),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부모의 지도의 존중(제5조)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면서도 부모의 지도를 존중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총칙에는 조약이 적용되기 위한 가맹국의 실시 의무(제4조)와 기존 권리의 보장(제41조)이 포함한다.

국제적 인격권과 시민적 자유는 주로 협약의 전반부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 국제적 인격권으로는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받을 권리(제7조), 주체성의 보전(제8조),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과 분리된 경우의 아동의 권리

(제9조),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출입국의 자유(제10조), 국외불법이송 및 불환환의 금지(제11조), 의견표명권(제12조) 등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정신적 자유는 표현·정보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프라이버시와 명예의 보호(제16조),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권리(제17조) 등이다. 정신적 자유는 ‘보호의 대상’으로 본 아동권에서는 크게 보장되지 못했던 권리이다. 또한 인신의 자유는 사형·고문 등의 금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적절한 취급(제37조), 아동의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제40조) 등으로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성인과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으로서 양육되고, 보호될 권리와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는 주로 협약의 후반부에 열거되어 있다. 부모에 의한 양육과 국가의 원조의 무는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제18조),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양호와 원조(제20조), 입양(제21조), 난민인 아동의 보호와 원조(제22조) 등이다. 건강과 의료, 생존·발달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로는 장애아의 권리(제23조),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정기적인 의료진료를 받을 권리(제25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26조), 생존·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할 권리(제27조)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 문화에 관한 권리는 교육에 관한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제29조), 소수자·원주민의 아동의 언어등의 문화에 관한 권리(제30조), 휴식 및 여가, 놀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가(제31조) 등이다.

아동으로서 보호될 권리는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제32조), 마약,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제34조), 아동의 유괴·매매·거래의 방지(제35조), 기타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제36조),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아동의 보호(제38조), 희생당한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등

이다.

끝으로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즉, 조약의 홍보의무(제42조),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제43조), 가맹국의 보고의무(제44조), 위원회의 작업방법(제45조), 서명(제46조), 비준(제47조), 가입(제48조), 효력발생(제49조), 개정(제50조), 유보(제51조), 폐기(제52조), 기탁(제53조), 정문(제54조)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기존의 제네바선언,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선언의 주요 내용을 이어받으면서도 기존 선언들의 한계를 크게 극복했다. 무엇보다도 선언이 아니라, 당사국이 협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아동의 권리를 국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에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협약은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선언들은 아동을 ‘인격체’로 인식하면서도 주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했지만, 이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발전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아동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부모의 양육과 함께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소년권리의 범위와 특징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오랫동안 아동의 권리에 포함되어서 논의되어 왔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1924년 제네바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의 권리는 선언에서 권리협약으로 발전하였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여전히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 인구집단으로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권리장전은 행동계획이나 실행지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유엔이 정한 ‘세계청소년의 해’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1985년에 열린 ‘세계청소년회의’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고 행사됨으로써 청소년이 정치적 상황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같은 해에 열린 ‘세계청소년의 해’ 세계회의(UN총회)도 청소년이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도록 하는데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이었다. 비정부단체가 주관한 이 회의의 제2분과에서 ‘아동과 청소년 인권’이 논의되었는데, 이 회의는 아동과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전세계적인 비준,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이나 국제협약법의 철폐” 등 8개 항목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제안사항 중에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탄핵을 접수할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내 특별기구의 설치, 당사국가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권교육의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회의에서도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와 함께 다루어지고 청소년의 권리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1994년 세계청소년 비정부단체 포럼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면서 오늘의 변화의 동인임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는 청소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활동의 기획, 실행, 가치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비정부단체 실천사항으로 6개 사항을

제안하였다. 비정부단체포럼은 청소년권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청소년에게 지역 토론회모임을 개최하도록 한다
-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단체들은 인권교육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한다
-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정부와 비정부단체에 대해 로비를 벌인다
- 비정부단체는 차별에 대항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중교육운동을 조직한다
-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단체들은 사회·경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개발하고 장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상품들을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 청소년 비정부단체는 청소년의 관심사를 지지하기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고,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정치, 시민, 사회, 경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교육시킨다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는 국가 발전의 목표달성과 사회정의 성취에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청소년 행동프로그램’도 그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는 모든 청소년이 인권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 유엔헌장과 일치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는 1998년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참여가 인류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신하며, 인류의 발전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라는 문구로 집약된다. 같은 해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도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된 한 인격체로서 청소년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특히 청소년의 완전한 참여에 의해서만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관련 비정부단체가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이 청소년에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범법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옹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다면, 한국사회에서 최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1990년 청소년헌장이 제정될 때만 해도,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청소년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헌장의 전문은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로 시작되고, 제5항은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국가와 청소년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1998년에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헌장은 청소년관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새 헌장은 청소년은 오늘의 삶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헌장의 전문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 헌장은 전문과 12개 조항의 ‘청소년의 권리’와 9개 조항의 ‘청소년의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청소년의 권리로선 성장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일할 권리, 문화예술 참여의 권리,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열거되었다. 새 헌장은 평등권과 보호권과 같은 전통적인 권리부터 청소년에게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생활의 권리,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포괄하였다. 바로 이 점이 청소년권리의 새 장을 여는 헌장의 의미를 새롭게 해준다.

새 청소년헌장의 제정과 선포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1998년 10월 24일에 ‘학생인권선언’ 선포계획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를 위촉하였다. 학생인권선언은 실무초안이 마련되고, 전문가의 조언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한 후 공청회에서 그 시안이 발표되었다. 그 시안은 전문과 8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보편적 인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복지권, 문화·여가권, 보호받을 권리 등 소극적 자유권, 사상·표현의 자유 등 적극적 자유권, 참여권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훼손되기 쉽고, 사상·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적극적인 자유권이 제약되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학생인권선언 시안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서 학생과 학교운영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인권선언 시안은 선포 예정일을 넘기고도 아직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제정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문서로 공표하기 시작했다. 즉, 중고등학생의 인권단체인 중고등학생복지회에서 같은 해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와 별도로 강원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는 전문과 13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전문은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로 시작된다. 이 선언서는 학생도 보편적 인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히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스스로 극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서가 더욱 값진 것은 중고등학생복지회가 자생력 있는 청소년인권단체라는 점이다.

3) 청소년권리의 특징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보편적 인권과 함께 참여권이 강조되는 것은 보호받을 권리가 강조되는 아동의 권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은 오랫동안 아동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왔고, ‘장유유서’와 같이 연령이 적은 자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관습과 문화가 매우 뿌리 깊기 때문에 청소년이 보편적 인권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한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전문

에서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라며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청소년의 권리도 성인의 그것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서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다.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내외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소년의 ‘완전한 참여’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트(Hart)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참여수준을 8가지로 구분하고, 청소년이 조작, 장식, 명목주의 수준에서 참여하는 단계(1-3단계)는 의견상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이 먼저 시작하고 끝아가는 단계(7단계)를 거쳐서, ‘청소년이 먼저 시작하고 성인과 의사결정을 같이하는 단계’(8단계)를 이상적인 참여의 단계라고 한다(Hart, 1992: 12).

청소년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의 부여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통합선거법 제15조에서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이 대부분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참정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오스트리아 대표가 ‘선거연령 16세로 하향화 추진’을 제안한 것에 비춰볼 때, 한국에서 청소년의 선거권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칙의 제정과정에 참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결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은 오늘의 사회구성원이면서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성인이나 노인 등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아동과 청소년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은 특히 중요하다.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에 맞고, 교육방법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회에 비교하여 취학률은 높지만, 교육내용과 방법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체벌이 만연되어 있고, 이를 조장하는 듯한 구 교육법이 개정되었지만, 체벌 등 반인권적인 학교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반인권적인 학교문화를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1993년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에서 강조하였던 인권교육을 학교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행동계획은 “인권문화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학교내외에서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관련된 제도와 법령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일이다. 부모가 청소년자녀의 발달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하고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육자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양육권인 ‘친권’이 이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09조 제1항 규정으로 청소년자녀의 권리가 부모의 자의적인 친권의 행사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최근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의해서 부모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비인권적 상황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부모와 법정대리인으로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이들을 적절히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인권은 성인과 차별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을 갖는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청소년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아동,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등 다른 인구집단의 인권에 대한 논의와 행동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권도 현실의 차별과 모순을 넘어서서 당위적 수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다.

III. 주요 외국의 청소년권리 현황과 활동동향

1. 국제기구의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

이 장에서는 세계적인 청소년 회의와 청소년분야와 관련된 주요 UN 총회 결과 및 각종 결의문, 실행지침, 협약 등을 검토하여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발췌·소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청소년권익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¹¹⁾

전세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UN 청소년부(Youth Unit)는 아래의 결의문들을 청소년정책 전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 청소년에 있어서 평화 및 민족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이상 고취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1965)

11) 본 장의 내용은 손춘석 편역(1998a, 1998b), 임성호 편역(1998a, 1998b), 정희욱 편역(1998)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UN Internet site의 원문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Guidelines for the Future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의 경우, “www.un.org/esa/socdev/unyin/library/iyytxt1.htm”을,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은 “www.un.org/esa/socdev/unyin/library/wpay.htm”을,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은 “www.un.org/events/youth98/yforum98/bragayap.htm”을,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은 “www.un.org/events/youth98/docs/declarat.htm”을 참고하였다.

-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Guidelines for the Future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1985년 상정, 1995. 11. 제50차 UN 정기총회에서 채택)
-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1995. 11. 제50차 UN 정기총회에서 채택)
-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 1998)
-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1998)

이 장에서는 위의 주요 국제문서를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청소년 권익증진’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고 그 외 다양한 국제회의 결과로 제시된 제안과 권고들 중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다.

세계적인 회의결과와 국제문서들을 통해 청소년을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성인과 동등한 능력과 보다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권리를 제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요 세계회의에서 권고 또는 제안된 정책과 활동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세계적인 약속의 하나로써 국내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일 것이다.

(1) 1985년 유네스코 “세계 청소년회의”

1985년 7월 8일부터 15일 유네스코 후원으로 개최한 ‘세계 청소년회의’에서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노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전세계 청소년들이 단결해야 함을

촉구하며 ‘바르셀로나 선언’을 발표하였다.

회의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단체 대표, 정부 및 비정부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중요성과 사회집단으로서의 그들의 잠재력은 수적인 비중으로 보아서도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청소년이 인류미래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평등과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그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행 프로그램과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소외청소년층의 문제와 일반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 이해, 청소년들 사이의 평화, 상호존중, 단결, 관용과 이해를 위한 교육 증진,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 교육제도의 민주화, 정보화 및 직업훈련 등이 그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발전전략에서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의사결정과 주도권의 실행에 참여해야 함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청소년관련 기관·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역할 수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청소년 부문을 우선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 다루며,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이 능동적인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그들의 이상과 평화와 정의세계 건설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밝힐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집단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인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고 행사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는 결국 청소년집단의 능력과 발전정도에 따라 얼마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관련 단체들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 세계 회의 (UN 총회)

1985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세계 청소년의 해’ 세계 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세계 청소년의 해’의 목표인 “참여·발전·평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그리고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평화, 인권존중, 기본적 자유, 인류의 단결, 진보와 개발에의 목표 등의 이상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고, 국제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에너지와 열정, 창의력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오늘날 청소년의 역할과 이상, 독창력, 미래세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청소년의 해’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의 입장과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청소년 쟁점과 관련된 모든 차원에서의 공동협력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의 협력이 시작되었고, 국가, 지역, 국제적인 현안들의 해결과 의사결정과정, 연구들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음을 확신하며, ‘세계 청소년의 해’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관심을 북돋우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UN 체제와 청소년단체들간의 의사소통 채널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UN 총회나 기타 관련 UN 회의에 청소년 대표들을 국가 사절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파견해줄 것을 각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청소년 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을 모든 국가, UN 기구, 전문기관,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다른 국제기구들에게까지 전

달할 것은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이들이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회의는 ‘청소년의 해’의 정점으로서 청소년의 해의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언급했듯이 ‘세계 청소년의 해’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입장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의미있는 기회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발전과 사회 변혁의 동인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탄생시켰으며,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사회 참여에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계 청소년의 해’를 위한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은 앞으로의 청소년 관련활동을 위한 유용한 개념틀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제공해주었다고 밝혔다.

(3) 1993년 세계 비정부단체 청소년 인권대회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인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의 제2 실무분과에서 ‘아동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 실무분과에서는 먼저 모든 인권 문제가 아동과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고 아동과 청소년 인권 문제가 긴급하게 제안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각국의 UN 아동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다음의 8개 항목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 아동권리협약의 전세계적인 비준,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이나 국제협약법의 철폐
-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침해에 관여하는 비정부단체로부터 정보와 탄핵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별 기구를 UN 아동권리위원회 내에 설치

- 가정이 모든 아동을 위해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 인식
- 각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방어책 마련
-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 법률 제정
- 어린이 노동, 매춘, 불법거래, 매매, 노예 등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대한 항의 제기, 항의 체계와 수단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문화적·경제적·재정적인 프로그램들은 아동과 청소년 인권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함
- 영양 섭취, 깨끗한 물, 안전한 집, 질병 예방 등 적절한 의료 보호 규정
- 학교 교과과정 개편이 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치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경청될 권리,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이 고려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제시하고 인권문제를 다루는 모든 비정부 단체들이 그들의 목표로 아동의 인권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1994년 인구와 발전에 관한 세계 청소년 비정부단체 포럼

1994년 9월 5일부터 13일에 걸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비정부단체 포럼 결과 “청소년은 변화의 동인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청소년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에서는 청소년이 미래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우리 사회의 활동가이자 지도자이며 그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존재임을 밝히고 청소년들이 새롭고 진전된 사회발전 제도를 상상해 낼 수 있도록 인권과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참여자들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능력, 건강, 민족적 배경, 성적 지향, 교육적·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전세계적·국가적·지역적·개인적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음을 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변화의 동인으로서 청소년을 결집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청소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 활동의 기획, 실행, 가치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인구와 발전문제와 관련된 모임들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자원이 분배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인구와 발전 문제에 관한 활동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청소년 비정부단체 실천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에게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단체들은 인권교육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한다
-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정부와 비정부 단체에 대해 로비를 벌인다
- 비정부 단체는 차별에 대항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중교육운동을 조직한다
-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단체들은 사회·경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개발하고 장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상품들을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 청소년 비정부단체는 청소년의 관심사를 지지하기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고,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정치, 시민, 사회, 경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교육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별 철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가르칠 것, 그리고 인권을 수용할 뿐 아니라 적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UN 전문기구는 각 정부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 병사들이 모병되어 반란군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득해야 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의 법적 금지 협약과 인권 협약에 관한 대중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동협력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먼저, 청소년과 비정부단체들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비정부단체 포럼을 개최하여 서로 만나고 서로의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권리의 남용과 침해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청소년 비정부단체를 결성하고 청소년의 관심사를 지지하는 연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UN 전문기구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고 미래를 위한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동 토론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5)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Guidelines for the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은 제50차 UN 정기총회(1995. 11. 7)에서 채택된 보고서로서,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의 목적인 ‘참여, 발전, 평화’를 달성하고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 지역차원, 국제적 차원의 행동지침과 비정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행동을 위한 특정지침들을 담고 있다.

실행지침에서는 세계 청소년의 해의 주제인 ‘참여·발전·평화’에 대해 ‘참여’란 각 개개인이 사회를 통해 그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청소년의 참여는 국가 발전의 목표달성과 사회 정의 성취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UN 헌장의 원칙과 일치하도록 인종·성·언어·종교에 대한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 관용,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모든 국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유익하다고 실

행지침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UN과 청소년, 청소년단체들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 사용을 강화하고 확장하며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정한 관심을 표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시도들이 일관성 있는 청소년정책과 발전계획에 가능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으로 정부와 비정부단체들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단체와 교육기관 관련구조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주요한 목적은 청소년들을 격려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권고사항으로서 평화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관련문서에 언급되어진 대로, 특히 인권분야의 교육과 평화의 보존,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적절히 격려함으로써 청소년에 의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시도를 장려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교육과 훈련 분야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며,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실제상황과 요구에 교육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 하위집단들 중 학생에 대하여, 정부는 학생복지, 수당, 주거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하여 이를 증진시킬 것,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것, 학교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대안적 교육기회를 고려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도시청소년, 농촌청소년, 여자 청소년, 인종차별제도 아래의 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범법청소년, 약물중독 청소년 등 다양한 하위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이들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증진을 강조하는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분야에서 비정부 조직들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조직들이 직접적인 청소년참여를 위한 수단과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세계 청소년의 해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사회에서의 ‘청소년참여’는 주로 비정부 조직을 통해 일어나므로 비정부 기구가 청소년과 정부, 지역 기구와 UN 체제 사이의 대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비정부기구가 청소년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6)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은 제50차 UN 정기총회(1995. 11. 7)에서 채택된 보고서로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국가적 행동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정책을 제공하며, ‘세계 청소년의 해’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2000년과 그 이후까지의 행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총회는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이 사회 변화, 경제 발전, 그리고 기술 혁신의 주요 원동력이며, 발전을 위한 주요 인적 자원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도전과 잠재력이 정책에 표명되어지는 방식이 현재의 사회적·문화적 조건과 미래 세대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며, 세계의 어디에서나 남녀청소년들이 사회 생활의 완전한 참여를 열망하고 있음을 인식할 것 등의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 결의문을 받아들여 이를 정식 채택하였다.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으로 10가지 우선 영역이 제안되었는데,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 남용,

청소년일탈, 여가활동, 소녀와 젊은 여성, 그리고 의사결정과 사회생활에서 청소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그것이다. 행동프로그램의 수행에 청소년 참여를 격려하고, 총회나 UN 관련 모임 등에 그들의 참가대표자 중에 청소년 대표자를 포함시킬 것을 함께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프로그램 수행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 국가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습득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생산적인 직업을 획득하고, 자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국가는 모든 청소년들이 인권과 관련된 다른 국제 기구와 UN 현장과 일치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모든 국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통보되어지고, 일반 공중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모든 국가는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상호 존중과 협력, 평화의 정신을 청소년들 사이에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행동을 증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모든 국가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히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운명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취해야만 한다
- 모든 국가는 사람을 발전의 중심에 놓고, 경제가 인간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발전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이고 동시에 수혜자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이러한 원리 아래, 행동 프로그램은 10가지 우선 영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남녀청소년의 안전과 참여, 연대, 기회의 평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철학적 확신, 종교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전적인 존중과 함께 다양성에 대한 존경, 관용, 그리고 차별 반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영역별 행동제안들 중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사이의 관용과 연대, 그리고 평화의 이상과 상호이해, 상호존중의 증진
 - 평화이루기 학습이나, 논쟁과 갈등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은 정부와 교육기관에 의해 모든 수준의 학교에 소개될 수 있도록 장려되고 기획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모든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책임, 관용, 연대, 평화와 같은 가치들을 증진하여야 한다
- 인권교육 증진
 - 정부는 '인권교육을 위한 UN 선언'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증진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인정되어진 대로, 청소년들의 환경과 발전 관련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수행에 중요하다. 청소년은 적절한 환경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반드시 참여되어야 한다
- 환경문제를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시키기 위한 도구로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함
 - 정부는 지방, 국가,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을 포함시키며, 환경관련 문제의 회의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 여 청소년 모두의 참여를 허용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 어린 시절의 차별과 무시는 사회로부터 일생 동안 배제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소녀와 젊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취해져야 하고, 평등의 토대 위에 프로그램과 행동 계획, 전반적인 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전직인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 소녀들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지도력의 모든 수준에서 소년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도가 취해져야만 한다
- 소녀와 젊은 여성은 경제적인 그리고 관련되는 형태의 착취와 위협하게 보이는 어떤 형태의 작업 수행과 그들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에 대한 회의'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회의'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고용기회에서 젊은 여성을 위한 동등한 접근은 신장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남성지배의 영역에서 그들의 참여가 장려되어야만 한다

- 우리사회의 진보의 역량은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그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 청소년들의 기여와 책임을 엮어내는 역량에 토대를 두고 있다.
-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다른 우선영역에 대한 노력과 제안된 행동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청소년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느냐에 달려있다.
- 제안 과제 (a)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화시킴 (b)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기회를 개발하고 강화하며, 그들의 사회적·정치적·발전적 환경 분야의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의 전적인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임 결성의 자유를 존중할 것 (c) 청소년들의 모임과 그들의 활동을 신장시키는 재정적이고 교육적이며,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모임을 격려하고 증진시켜 나감 (d)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과 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데 청소년들의 기여를 고려함 (e) 증가하는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협력과 청소년단체 사이의 교류를 장려함 (f) 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청소년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등 국제무대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할 것

행동프로그램은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차원, 지역협력 차원, 국제 협력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국제공동체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의 지원을 받아 최충적인 이행책임을 지고 노력과 헌신을 쏟을 것을 권고하는 등 세계행동프로그램이 단순한 진술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 삶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와 조직들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은 1998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세계청소년포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청소년단체, 유엔과 여러 정부간조직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음의 내용들은 청소년참여와 잠재력에 대한 신념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의 참여가 인류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신 하며, 인류의 발전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청소년 들은 세계 문제들의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또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들은 여러 곳에서 자신들이 개발의 장애가 아니고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청소년들은 21세기를 위해 민주적 지도력,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건설하고 있다”

세계청소년포럼은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류 발전에의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함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 국제사회, 민간영역 및 정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전체 잠재력을 실현하고, 발전과정에 적극적이고 완전한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청소년들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주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남녀 청소년이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남녀차별은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며, 여성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 청소년들은 미래의 자원에 대해 오늘 내려지는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청소년들은 모든 수준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시민단체, 학생조합, 노조, 정당,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세계청소년포럼 결과 제안된 내용으로는 장애청소년, 원주민청소년, 여자청소년, 극빈지역 청소년 등 소외집단의 동등한 참여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있으며, 청소년관련 비정부단체(NGOs)들이 유엔체제의 전체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것, 유엔이 청소년 이슈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둘 것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교육권, 직장에서의 기본적 권리 등을 명시하고 사회적 발전 추진을 위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

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98년 6월 세계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채택된 “직장에서의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널리 알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서에 따른 청소년 권리에 대한 청소년교육을 위한 학술회의, 정보제공 및 훈련 등의 홍보캠페인을 제안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소년권리에 대한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권교육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밝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들과 그 침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청소년들은 인권교육에 핵심적인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에 책임이 있는 정부, 정부간조직, 유엔과 교육기관들은 청소년이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청소년단체들이 인권교육과 관련된 감시와 보고과정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는 인권교육에 관한 효과적인 전략 개발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각 청소년단체에 인권 전담부서(human rights focal point)를 지정하는 것이다. 인권 전담부서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계획(1995-2004)(UN Decade on Human Rights Education)의 틀 안에서 유엔체제와의 파트너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인권교육방법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 로비활동, 네트워킹, 좋은 방법의 교환, 능력함양, 지역언어로의 자료준비 등이 제안되었다.

그 외에도 유엔 청소년부는 현재 총회 보고서들과 유엔 인권 비준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권리를 편집한 청소년권리지침서(Compendium)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잘 접할 수 있는 출판물로 인쇄하여 배포할 것, 유엔 사무총장은 1999년 8월까지 지역별 비정부단체의 자문을 통해 ‘유엔 청소년권리 특별보고자(UN Special Rapporteur on Youth Rights)’를 임명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특별보고자는 매년 청소년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

을 포함한 보고서를 유엔총회나 다른 적법 조직체들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에서는 국가대표와 모든 관심있는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청소년 민간단체들의 대표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이 청소년권리에 관한 행사 준비를 시작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8)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은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결과 채택된 선언이다. 장관회의는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123조항의 제안에 의거,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정규회의를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¹²⁾ 이 회의의 핵심 기조가 바로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였으며, 회의에서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가진 존재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적 청소년정책과제로 청소년을 자문과정에 참가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국가와 지방 청소년정책·프로그램·실천계획의 형성·실행·평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며,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할 것이 제시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 실행

12)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제123조 :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라비안, 서아시아에서 서로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문제에 책임을 가진 장관들이 지역내 그리고 지역간 회의를 개최하며, UN의 지원 아래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만남은 청소년 관련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장을 제공할 수 있다

행의 국가적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마련을 위해 측정가능한 시간제약적(time-bound) 목표와 지표들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청소년 참여(participation)’와 관련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독려하며, 남녀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남녀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참여,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 과정과 시민정신, 시민적 책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촉진할 것, 청소년활동과 프로그램의 형성·실행·사후관리·모니터링·평가에 청소년들을 긴밀하게 관련시키고, 청소년들이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대표들을 통해 입법 및 정책 입안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촉진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지도자역할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제안되었다.

‘발전(development)’과 관련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발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밝히고 청소년들이 국가적·세계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쌍방적·지역적·세계적 협력을 장려할 것, 국민과 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복지를 방해하며, 인권 향유에 장애가 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합당하지 않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거부할 것 등이 결의되었다.

‘평화(peace)’와 관련하여 평화와 비폭력을 촉진하며, 평화구축·알력방지·갈등해소에 있어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강화할 것, 불평등과 싸우고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관용·존중·상호이해를 촉진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효과적인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건설할 것, 2000년 ‘세계 평화문화의 해’ 경축을 준비하는 일에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들을 도울 것 등이 제안되었다.

‘교육(education)’부문에서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할 것, 고통받거나 폭력적인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만들며 소외를 종식시키고 학교중퇴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 문화활동, 신체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통해 배우고 창조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장려하며 학생조직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학생조직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줌으로써 학생조직들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고용, 건강, 약물남용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연구, 자료수집, 통계적 자료축적과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널리 보급되기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청소년의 특수한 관점이 국가적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게 하며, 앞에서 언급한 조치들과 세계청소년실천계획 실행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9) 그 외 국제문서 및 회의에 나타난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① 아·태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북경선언 Beijing Statemen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Youth in Asia and the Pacific (1996. 10)

- 청소년참여지표(Youth Participation Indicator : YPI) 개발
 - 청소년 관련정책의 기획·실행·평가에서 청소년참여 현황 분석을 통해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활동 : 청소년참여지표의 합의된 목록의 공식화, 청소년참여지표에 의한 국내상황 조사분석, 국내 경험 정보교환, 청소년참여지표를 감시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려하기 위한 국내 워크숍과 지역회의 개최
- 정책결정 및 개발과정에 청소년참여 증진 제도화를 위한 국내 청소년협력구조 강화

②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프로그램 구성 Implementation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1996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세계청소년포럼 결과)

- 유엔 청소년권리헌장 작성, 청소년권리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청소년 권리현황 모니터 및 보고서 제출)
- 총회와 각종 회의에 청소년이 국민대표로 참석할 것
- 정부는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인권 분야 훈련 지도자 훈련 과정을 설치하고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할 것
- 청소년단체의 UN인권교육 10개년계획(1995-2004) 참여

③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93년 3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센터 공동 주최)

- 세계행동계획의 목표 : 인권문화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 건설
- 행동프로그램
 - 모든 수준의 학교체제의 교과내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학령전,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방학기간, 대학, 교사훈련과 교육, 교사 조직과 노동조합,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행정 관련 조직, 학부모 조직 등)
 - 비공식적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성인과 청소년 집단 등 대상 : 일터, 전문직 협회, 종교 및 문화조직, 레저와 스포츠클럽 소속 청소년, 농촌이나 벽지거주자, 인권옹호단체 지원 집단, 안전요원, 군인, 경찰, 교도관 등)
 - 특수한 맥락과 어려운 환경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무장충돌 및 긴급상황, 여성, 어린이, 원주민, 소수집단, 장애인 등 특정집단)
 - 연구, 정보, 문헌 : 인권정보에 관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연구센터와 검색기관 설립, 음향·영상, 슬라이드, 음악, 게임, 인형 등 문맹인이거나 아동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인권매체 개발

④ 「21세기 청소년과 교육」 유네스코 보고서 (1998. 8)

-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를 우선 순위에 둘 것. 청소년이 경제·사회·문화적 생활과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 활용 필요
- 인권존중은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인권교육은 현재의 교육과목과 비제도교육활동에 주체로 포함되어야 하며, 남녀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함.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청소년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생활에의 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을 사회의 강력한 자원으로 보는 것은 인류의 평화 공존을 위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 초·중등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지침서 개발
- 모든 청소년을 위한 공식교육과 비제도교육 내에 소녀와 젊은 여성을 위한 교육, 인권교육과 평화문화를 위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⑤ 오스트리아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998년 8월 세계청소년장관회의의 오스트리아 대표 연설문)

- 오스트리아 청소년포럼 : 참여에 대한 대회에서 입상한 12명의 청소년으로 구성, 오스트리아 청소년장관의 중요한 자문기구
- ‘청소년참여에 관한 결의안’ 작성
- 유럽위원회 공식 회의에 청소년대표자 참석
- 선거연령 16세로 하향화 추진
- 청소년을 위한 특별 인권감시인 제도 실시
-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의식 함양 : 직접적 노동력 참여, 자원봉사, 지역사회 서비스, 단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 복지에 기여
-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실시
-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참여 확대 ‘청소년 영향 발언’
- ‘청소년참여’ : 오스트리아 EU 회장이 선택한 정치적 이슈.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식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시민이 민중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참여는 양편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상호헌신 뿐 아니라 상호 존중이 성공적인 참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2. 주요 외국의 청소년권리 동향¹³⁾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역사적 상황, 국가별, 사회별, 정치체제별로 그 진척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금세기 안에 세계적 보편화 경향을 띠어가고 있다. 청소년이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청소년관련 대책과 제도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인권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신장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왔고, 이에 따른 정책전환과 이러한 정책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특히 1989년 채택된 UN 아동권리협약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아동으로서 올바르게 양육될 권리, 시민적·사회경제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인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결국 아동보호, 가족보호에 관한 법적 테두리를 밝혔고, 국가가 아동보호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장치를 마련하였고 아동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가동하여 아동들에게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명시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한 특징은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속력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극적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규정하여 의사표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한 점이다.(이기범, 1997)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당시까지만 해도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보다는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청소년인권을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권리주체로 보고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 정

13) 이 부분은 천정웅(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치적 권리도 누릴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에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인권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그에 따른 세계 각국의 청소년권익증진활동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권국가로 불리워지는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의 주요 선진외국의 아동권리협약이후의 청소년인권 정책동향을 알아보고 청소년인권교육의 최근 동향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요 외국의 이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권정책 동향에서 볼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노력들의 주요 특성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세계각국이 정치·사회의 모든 면에서 청소년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반적 상황을 살펴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 수준향상과 청소년권익증진을 위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이다.¹⁴⁾

1) 주요 선진외국의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동향

(1) 영국 : 아동권리증진에 관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아동권리사상의 싹을 키운 에글란타인 켄(Eglantyne Jebb)이 활동하고 1919년 아동복지회(Save the children)를 창설한 것이 영국이었다. 영국은 19

14)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인 함마버그Hammarberg는 이 협약이 가져다 준 중요한 결과들을 7가지로 -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념 정의부여, ② 아동에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의 지위부여, ③ 협약에서 사용하는 권리라는 용어는 더 이상 아동에 관하여 시혜적 접근이 아닌 시민적, 정치적 접근으로의 변경 필요 ④ 오늘날 아동들이 처한 빈부 격차, 전쟁과 갈등, 착취, 환경오염 등의 열악한 위기상황의 폭로 ⑤ 아동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증가 ⑥ 각국 정부, 유엔기관, 전문단체, 비정부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제간 협력의 촉진 ⑦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의 기준 설정 제시 - 요약한바 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갖는 의의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Hammarberg, 1993)

세기말 까지도 사회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이익보다는 부모의 권리보호가 보다 크게 인정되는 불문법 속에서 아동의 권리 개념은 수용되지 못한 반면 부모의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¹⁵⁾ 아동이 권리와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영국의 영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 of 1925)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최근에 영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하였고,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동권리개발단(Children's Rights Development Unit: CRDU)를 탄생시켰다. 아동권리개발단은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고 추가로 4명의 협력위원을 가진다. 운영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다.¹⁶⁾ 한편 아동복지회(Save the children)는 현재 스웨덴을 포함하여 세계 5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아동권리와 아동개발, 응급상황, 가정환경과 대안적 양육, 기본적인 보건, 복지교육이다. 주요 대상집단은 18세 이하의 아동과 가족, 여성, 지역사회, 해당 시민단체와 정부이다.(이재연, 1997: 12-13)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은 1991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아동의 복지 및 권리에 관한 큰 개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된 유아 및 유치원 교육법, 1971년과 73년의 후견인법, 1975년 아동법, 1980년 가정위탁법, 1982년 아동보호법 등을 포함하여 수십개의 법

15)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오늘날에도 19세기의 영국법을 답습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강력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16) 아동권리개발단(CRDU)은 ① 협약과 그 이행, 아동의 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② 영국의 입법이나 정책과 실체가 협약의 원칙과 일치되는 정도를 모니터하기 ③ 협약이행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 개발하기 ④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⑤ 협약 이행을 위한 수단을 파악하기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 활동하고 있다.

령을 단순화시키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용성있게 종합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한 수십개의 절차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에는 가족법, 1991년과 1995년에는 아동지원법, 1998년에는 범죄와 법질서 파괴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바 있다.

(2) 스웨덴 : 아동권리협약을 최초로 비준한 국가 중 하나이다. 1990년 6월 29일 어느 조항도 유보하지 않고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국가 법률이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협약의 조항들과 원칙들이 각 지역에 있는 아동들과 성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협약에 주정부의 참여를 의무화한 뒤, 이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스웨덴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권리증진 활동으로는 아동문제 옴부즈맨 사무국의 옴부즈맨을 임명한 것을 들 수 있다. 사무국은 스웨덴의 보건사회부 산하에 속해 있으며, 스웨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사항을 모니터하는 일이 주된 임무이다. 아동문제 옴부즈맨은 1994년 5월에 스웨덴 정부에 첫 연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민단체로는 스웨덴 아동복지회(Swedish Save the Children : Radda Barnen)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스웨덴 아동을 위한 활동을 계속 수행함과 동시에 중부와 동유럽 및 20여개국의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도움으로써 세계아동권리 신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미국 : 현재까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아동 권리에 관심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며 실제로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의 기안에 참여하여 거의 모든 조항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¹⁷⁾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동단체

17) 미국이 UN아동권리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① 법체제

뿐만 아니라, 교육자, 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법률 제정가, 지역정부 그리고 변호사들을 포함한다.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수적이거나 종교단체이다. 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논의의 특징은 인격으로서 인정되는 아동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⁸⁾ 법원의 관례는 또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취급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왔으며 다른 한편, 부모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를 포함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인권 단체로는 국가아동권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Rights of Child: NCRC)와 아동옹호기금(Children's Defence Fund: CDF)을 들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법률 실행 프로젝트는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때때로, 아동이 자신의 요청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소송에 의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확실한 비준을 위해 국회 의원과 비공식 논의를 하고 간결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옹호기금은 아

가 각기 다른 주별 특성 ② 조약의 비준에 상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내 협약비준과정의 특성 ③ 협약 비준후에도 협약의 이행은 주 수준에서 행해질 것이란 점 ④ 인권조약이란 국내법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며 ⑤ 조약자체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미국의 인권관련 조약에 대한 시각으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법률적인 측면이 완전히 검토 정비되어야 하는 점 ⑥ 소송을 통해서 법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⑦ 권리는 사법적인 결정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지지된다는 사법적인 해석의 관점 등 여러 가지로 논의된다.

- 18)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59년에 미국 아동권리선언에 표현된 아동권리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자기표현에 대한 아동권리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권리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전통적으로 ‘~에 대한 권리(to right)’보다는 오히려 ‘~로부터의 권리(from right)’에 대한 생각을 강조해왔다.

동권리협약을 위한 미국의 비준을 위한 움직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투표할 수 없고 로비할 수 없으며,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미국의 모든 아동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과 소수민족 가정의 아동, 그리고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동옹호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며 재단이나 회사 혹은 개인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미국아동의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Yearbook)를 발행하고 있다.

(4) 호주 : 호주는 권리를 일반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하는 국가가 아니다. 많은 아동들의 삶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장기적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았으며 가난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박탈감, 질병의 위험, 부수적인 권리 침해의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 주택, 교육, 보건서비스, 충분한 수입에 기초한 삶의 기준 - 아동권리의 현실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의 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위축으로 아동서비스 부분의 예산이 우선 감축되고 민영화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호주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있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아동에게 준다'는 핵심적인 규정 실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아동인권이 신장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제12조는 아동의 견해와 자율성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요점이다(Rayner, M., 1995: 188-199). 아동의 견해가 높히 평가된다는 것은, 아동의 의견이 경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을 참여시키고 이해하기 위한 성인들의 임무이다. 이것은 성인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아동들에게 적당하고 '그들의 최상의 이익'을 만드는 의사결정을 단지 추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권리는 인간존엄의 핵심이며, 모든 인간 권리의 기초이다.

물론, 이것은 호주의 아동법률에 반영되거나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연방 가정 법률 위원회(1989)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과정에서 아동 옹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최근 호주 법정은 아동 법률에 대한 해석에서 ‘권리’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법령에서 모호한 표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결정문을 참조한다. 아동권리협약이 그러한 법률화의 결함을 채울 수 있다.

(5) 노르웨이 : 이 나라는 옴부즈맨 사무국에서 아동의 필요와 권리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모두 맡아하고 있다.¹⁹⁾ 1993년 노르웨이 의회는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한지 12년후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아동 가족부에 요청하였다. 그 평가에 의하면 아동 옴부즈맨 제도는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학계에 반응으로 1993년에 국제아동보호단(Childwatch International)을 창설하였다. 이 단체는 아동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협약을 이행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아동연구기관과 관련단체를 연결하는 정보망 형성과 정보제공 활동도 하고 있다. (이재연, 1997: 11-15)

이 기구는 현재 아동연구를 주도해나가는 주요 연구기관으로 전 세계 6대주에 분포해 있는 다른 많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회의와 정보구축, 토론집단을 활성화시키는 전자정보망 구축 및

19) 노르웨이에서는 2차 대전 직후 행정 옴부즈맨이 생겼고, 1952년부터 1981년 사이에 6개 부처에 옴부즈맨이 생겼다. 그것은 국방 옴부즈맨(Ombudsman for Defences, 1952), 양심적인 참전 거부자 옴부즈맨(Ombudsman for Public Administration, 1962), 소비자를 위한 옴부즈맨(Ombudsman for Consumer Affairs, 1972), 평등을 위한 옴부즈맨(Ombudsman for equal Status, 1978),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Ombudsman for children, 1981)이다. 아동문제 옴부즈맨은 198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4년 임기로 노르웨이 왕에 의해 임명되었다.

정보제공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6) 일본 : 일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가까운 듯하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한 단위’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모호하다. 부모 쪽에서 느끼는 이 ‘한 단위’라는 개념이 때때로 자신의 자녀를 향한 지나친 통제와 아동의 개인성 존중을 저해한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사실상 자녀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권한을 빼앗는 결과가 되는 것은 모순적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왔지, 독립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가족법의 목표가 수직적 체계의 유지에 있었다. 예를 들어, 장남이 가정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가장이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전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치했으며, 자녀들의 불복종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독립적 개인관계가 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가족법은 원래 자녀들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데 부모에게 유리한 쪽으로 존재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가족법의 초점은 부모의 권한에서 부모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²⁰⁾ 오늘날 부모와 자녀간의 법 관계는 아동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모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법적 개혁은 매우 느리게 때로는 어렵게 이루어졌다. 과거에

20) 부모의 권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동보호의 권한으로 ①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권한과 책임 ② 아동의 거주위치를 결정할 권한 ③ ‘필요한 정도까지’ 아동을 처벌할 권한 ④ 아동의 직업 결정에 동의 할 권한 등이 포함되며, 둘째는 아동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으로 ① 아동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 ② 아동의 재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변할 권한 (부모와 자녀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법적 개혁은 외국 국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비준의 결과로, 국가 법령이 1984년 개정되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이 아동 권한을 인정하도록 개혁되는 과정에서 같은 작용을 하기 쉽다. 아동권리협약이 일본법과 법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지위향상에 큰 작용을 할 것이다.

2)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세계적 동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서구사회에서도 극히 최근에 이슈로 등장한 문제이다. 인권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게하며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고 미래에 대한 자기전망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는 서구에서는 1760년대부터 무상의무교육이 자리잡아 인간의 기본권리로 교육권을 인정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들어 아동을 하나의 고유한 인격을 갖춘 존재로 대우한다는 인권 의식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기구를 통해 제시되면서 1924년의 제네바선언,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아동과 청소년인권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다. 특히 유엔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점을 ‘유엔인권교육 10개년사업(1995-2004)’으로 제정해 각국의 아동인권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사업은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의 제안에 따라 UN총회가 1994년 12월 23일 결의안 49/184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UN인권교육10개년사업을 시작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세계인권회의는 당시의

비엔나선언(Vienna Declaration)과 행동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을 통해 인권교육, 훈련과 대중홍보는 공동체 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증진과 달성을 위해, 그리고 상호이해, 관용과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국가는 문맹을 없애고 완전한 인성발달과 인권 존중 및 근본적인 자유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와 기관들이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주제로 인권교육, 인권법(humanitarian law), 민주주의 그리고 법규칙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총회보고서에 담고 있는 10개년사업행동계획은 국가적·지역적 활동과 사업(initiatives)을 촉진하고 지지하는데 초점을 두며 정부, 국제단체, 비정부기구, 전문가 연합, 개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거대한 부문들 간의 아이디어 협력에 의해 수립된 것이다.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은 10개년사업 행동계획실행을 위한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총회와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UN 인권교육10개년사업 행동계획에는 국가인권교육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교육위원회는 정부 및 비정부 활동가들의 광대한 협력관계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적·세계적 조직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이고(범위 면에서) 효과적이며(교육전략 차원에서) 지속가능(오랜 기간동안)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책임을 갖는다.

세계인권교육10개년 사업행동계획과 관련하여 각국은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알제리아, 아로젠티나, 차드,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프랑스, 가나, 교황청, 이탈리아, 일본, 몰타,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루마니아, 수단, 튀니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국가가 관련 정책을 보고하였다. 여기에서는 총회보고서 A/53/313(1998.8.27)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E/CN.4/1999/87(1998.12.29)에 근거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등 주요 국가의 인권교육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1) 칠레에서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에서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여성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한 활동은 학교 내 인권교육 자료 보급, 교사 연수, 그리고 학교 경쟁 조직화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 10개년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간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2) 모로코정부는 국가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와 인권부(Human Rights Ministry)의 공동노력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인권교육 도입을 위한 9개년(1995-2004) 프로젝트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교육자료 개발, 학교 교과서 및 교과과정 개정, 그리고 교사훈련 등 세가지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같은 국제기구에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3) 스위스는 연방내무성에서 스위스공립교육지역교장회의(Swiss Conference of Cantonal Directors of Public Education)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다양한 국가기관과 비정부단체가 정기적으로 인권교육과 인종주의반대연방위원회(Federal Commission against Racism), 스위스“교육과 개발”재단(Swiss Foundation "Education and Development"), 그리고 스위스인권연맹(Swiss League for Human Rights)와 같은 대중홍보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오스트리아는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에서 각급 학교에 인권교육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어, 볼츠만(Ludwig Boltzmann) 인권연구소에서 10개년사업의 구조에 따라 구성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교사들의 워크숍과 연

수가 조직되었고 유네스코 UNESCO 출판물인 “인권 - 1문1답(Human Rights - Questions and Answers)”과 같은 적절한 자료가 배포되었다.

(5) 독일정부는 10개년사업을 위해 세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비록 연방정부가 학교제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법(Basic Law) 및 법적·행정적 규정과 교육 문화부 회의(Conference of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결의안 등은 인권교육을 모든 연방 국가들의 교육목적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둘째, 공적관계들과 정보 캠페인은, 정보서비스, 지역신문을 위한 편집서비스, 외국인과 독일인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외국인 통합을 촉진하고 시민들간의 상호편견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었다. 셋째, 몇 가지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사회적·행정적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여건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6) 인도정부는 다른 부처 장관들을 포함하는, 내무장관 직속의 조정 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가 인권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선영역들이 확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대학과 대학원 수준에서의 인권교육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훈련자료 준비와 전문가와 비밀경찰, 의사, 변호사, 판사, 정부 공무원, 정치가, 비정부기관, 노동조합원, 종교집단 그리고 지역공무원 등과 같은 집단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조직하고 일반대중을 위한 인권 토론회와 세미나를 조직하는 일이 포함된다.

(7) 체코공화국에서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를 통해 학교에

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이 세계적 인권수준을 포함할 것과, 아동권리 분야의 NGO활동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자료를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부는 또한 젊은 세대에 대한 국가정책(State Policy in Respect of the Young Generation)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특히 인권교육을 포함하며 이 분야에서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이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는 1990년 세계 아동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코의 국가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8) 덴마크에서는 교육부와 덴마크인권센터(Danish Centre for Human Rights)가 공동으로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사를 위한 두 차례의 과정이 1997년 봄에 교수보조센터(teaching aid centres), 교사양성대학(teacher training colleges), 덴마크 교육학회(Royal Danish School of Educational Studies), 덴마크 적십자회(Danish Red Cross), 덴마크 피난민협회(Danish Refugees Council),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의 대표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위한 자료로서 인권교육자료(교과서와 잡지, 시청각자료와 데이터베이스 등) 목록이 수집되었다.

(9) 멕시코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과 다양한 정부기관들과의 협력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공무원원을 위한 훈련과정(이민담당 공무원, 경찰, 비밀경찰, 교도공무원, 군인, 보건사무원 등), 특히 취약집단의 권리를 위한 과정(여성, 토착민, 아동, 이민자, 죄수, 장애인, AIDS환자 등), 이전교육체제(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기관을 포함하여) 내에서 교과과정에 인권 포함, 훈련자를 위한 훈련, 회의 및 다른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중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 웹사이트 개발 및 국가포상

(national awards)과 다양한 출판물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10) 페루에서는 우선 국가인권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를 통해 학교체제 내에서 특히 중등학교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제안서(New Curricular Proposal)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였으며 사법부를 통해서는 판사와 변호사와 같은 사법공무원과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출판물 준비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내무부(Ministry of Defence and the Interior)를 중심으로 군인과 경찰을 위한 훈련과정과 관련자료 개발, 아동권리에 대한 정부 공무원 훈련을 위한 비정부기구, UNICEF, 그리고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의 협력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11) 베네주엘라의 인권교육은 정부당국, 비정부기관, 그리고 국가인권 위원회의 공동노력으로 발전된 국가인권계획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 제안되고 있다. 워크숍과 지역교사회회가 교육부와 국제엠네스티 베네주엘라 지부 및 프로베아(PROVEA:Programa Venezolano de educación-Acción en Derechos Humanos) 등과 같은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협력으로 조직되었다. 관련 자료들은 국제엠네스티 베네주엘라 지부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배포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학교프로그램과 활동들, 그리고 교육자료들을 UNICEF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12) 아일랜드 정부는 외교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내에서 국가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두가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왔다. 정부는 이전 교육부문과 여성 및 지역사회 집단, 그리고 비정부단체를 포함하며, 교육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집단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발전교육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Development Education : NCDE)를 언급하였다. 동 위원회는 인권교육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 집단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그것은 학교 교과과정에의 인권통합에도 관련된다.

(13)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인권교육을 위해 가능한 국가기준 설립을 논의하는 동안 다양한 관련활동들이 실행되고 있다. 학교제도와 관련하여, 교수자료는 주로 비정부기구가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마련하였으며, 교실에서의 인권교수 수준이 교사의 지도에 맡겨졌다. 대학수준에서는 몇 개 법학과의 협력으로 인권연구학부가 만들어졌다. 또한 공무원, 경찰과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이 제도화되었으며, 대중 홍보캠페인이 피난민과 이민자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조직화되었다.

(14) 스웨덴에서는 1998년 1월 교육부가 위원회가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학수준에서 몇 개의 법학부가 인권에 대한 필수과정을 지정하였다(Lund University에서 Raoul Wallenberg인권연구소와 인권법이 있다).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대학살에 반대하는 특별한 대중홍보캠페인들이 최근 시작되었다. 교육부가 다양한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만든 공동프로젝트와 광범위한 비정부기구 연합에 의해 개발된 교사용 훈련자료로서, 50년 동안 스웨덴에서 출판된 인권문헌 목록과 같은 다양한 인권 출판물들이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15)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사법공무원(경찰, 비밀경찰, 판사 등), 교사, 정부공무원을 위한 인권훈련, 공·사립대학과의 협력과 연계사업 조직화, 지방수준에서 교육계획 개발, 학교 대회, 회의 및 스포츠경기 등과 같은 특별행사, 보편선언에 대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대중홍보 등의 인권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6) 크로아티아 연방정부는 1996년도에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인권교육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제도교육체제 내에 과외활동과 국가적·세계적 인권교육방법에 기반하고 국제기구(UNICEF, UNESCO)와의 협력구조 내에서 수행된 프로그램과의 통합에 초점을 둔 국가인권교육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f Human Rights Education)을 수립하였다. 크로아티아의 프로그램은 자그레브(Zagreb) 대학의 교육학 전문가집단에 의해 수행된 다른나라의 프로그램 조사에 기초하여 정교화되었다.

(17) 쿠바정부는 모든 쿠바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98년 9월 학년초에 새로운 학교 규정 - 학생들에 의한 토론에 개방되고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쟁을 북돋우는 - 이 적용될 것이다.

3)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세계적 동향의 주요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에 따라 세계 전지역에서 국가적 이행의 과정과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각 국가별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한 동향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²¹⁾

첫째,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령에 인권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경향이다. 대부분의 아동권리협약 비준국들은 다른 기본적인 인권기구의 비준들과 그러한 기구안에서 형성된 원칙들을 지역 법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모잠비크(Mozambique)가 반지뢰조약을 비준하고, 남아프리카공

21)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국가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unicef.org/crc/faq.htm>

화국에서 아동보호헌장(Child Care Act)을 검토한 일, 탄자니아 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에서 1998년의 성적 범죄에 대한 특별법안(Sexual Offences Special Provisions Act)을 통과시킨 일 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새롭게 마련된 헌법에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는데, 그 헌법에는 18세 이전의 아동의 전쟁징병 금지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디오피아(Ethiopia)의 개정헌법과 법률에도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모리셔스(Mauritius)에서는 아동보호헌장과 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관련있는 법률이 23종이나 국회에서 개정되고 채택되었다.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1998년에 승인하였고, 루마니아(Romania)에서는 국가정책개혁을 위해 아동의 공적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미국과 카리브해 지역(Americans and Caribbean region)의 16개국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그 중에서 베네주엘라(Venezuela)는 중요한 아동권리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칠레(Chile), 파나마(Panama), 우루구아이(Uruguay)는 아동 규칙을 입안하였고, 소년재판분야에서 사법개혁을 단행하였다. 브라질(Brazil)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권리를 반영하였고, 멕시코 의회는 최근 아동권리보호(Children's Rights Protection)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였다.

둘째, 많은 국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실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민간 단체의 역할을 조정하여 조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독립된 중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향이다. 일부 국가는 이를 통해 정책 발의를 촉진하고 정책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협약이행에 대한 과정을 감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민대표는 물론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지역권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스리랑카(Sri Lanka)의 경우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정부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국가 또는 국제 매스컴, 종교단체 그리고 비정

부단체들(NGOs)을 중심으로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Sweden)에서는 아동권리를 위한 적절한 실행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말레이시아(Malaysia) 아동권리위원회는 새로운 말레이시아 아동헌장을 승인했다. 가봉(Gabon)에서도 아동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모리타니아(Mauritania)는 유니세프(UNICEF)가 국회내 아동권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Ombudsperson for Children)의 형태를 가지고 국회와 협조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아동복지중앙위원회’(The Council for the Welfare of Children)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련된 모든 기구, 정부부처, 민간단체를 조정한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행정적·법적 기능과 함께 교육을 강조하여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법률센터’(Children’s Law Center) 또는 아동 법률지원센터(Center for Children’s Legal Aid)가 있어 아동, 부모,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에게 아동에 관련된 법과 규칙을 교육하고,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India)에서는 아동 의회, 아동법정이 만들었다. 스리랑카(Sri Lanka)는 아동권리를 위한 의회로비 뿐만 아니라 계획, 예산, 및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 Authority)을 구성하였다. 방글라데쉬(Bangladesh)에서는 아동권리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해 장관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셋째, 세계 각국은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어 임명하거나 국가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정책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면서 청소년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들의 권리를 중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10여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베닌, 카메룬, 케이프 베르드(Cape Verde),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가나, 리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잠비

아가 포함된다. 1997년에 설립된 잠비아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소위원회는 아동학대와 교육을 주요관심문제로 하고 있다. 최근에 루완다는 전국아동권리협회(National Assembly for Child Rights)를 만들고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는 인권에 대한 독자적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남아프리카도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의 법인체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모리셔스는 유니세프에 의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1991년에 설치된 국가아동위원회(National Children's Council)의 역할과 위치를 재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법원 지정 특별 지원단체'(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CASA)가 있는데 이 단체는 법원에 의하여 위촉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자격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재판 전후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된 '어린이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 재정, 법적인 권한은 없다.

넷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들을 보면 정부와 민간 단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공조체제가 성공의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사라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Sara Communication Initiative)는 아동권리를 테마로 하여 지방과 국제적 비정부조직(NGOs), 유엔관련 기관, 세계은행, 언론기관, 사회단체와 다른 지방 조직의 광범위한 공조체제를 강조하였다. 중동지역, 북미에서 아랍국가연합(League of Arab States), 아동과 발달을 위한 아랍위원회(Arab Council for Childhood and Development),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 Asia),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및 유니세프 등의 기구들은 상호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지역운동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애플컴퓨터 회사는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를 지

원하였고, 건축가들은 도서벽지 아동을 위해 초등학교 기숙사를 설계하였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이니시어티브(Sialkot Initiative)는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국제아동복지회 연맹, 비정부조직 및 유니세프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아테말라. 파나마, 페루, 카리브해 지역의 영어사용국 등에서의 방송매체와 다른 통신수단은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아시아, 태평양연안지역 국가에서는 아동의 국내노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무료 방송을 실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남필리핀 위원회(Southern Philippines Council for Peace and Development)와 모로 이슬람 자유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과 종교단체 및 개인들이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참여한다.

다섯째, 세계 각국은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와 계속되는 세계회의에서 세운 아동의 생존과 발전목표에 대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중동, 북아프리카의 6개국에서는 현재 이행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개혁 이니시어티브(Global Education Reform Initiative)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과정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교사, 학생, 그리고 부모사이에 관용, 존경, 협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보다 호의적인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글라데쉬에서 메스킴은 삶 자체(Facts for Life)의 중요성과 아동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잠비아의 공립학교 200여 곳에서는 사회, 교회, NGOs, UNICEF의 지원을 받으며, 기본적인 교육이 박탈되어진 수천명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코트 디부와르(Cote d'Ivoire), 가나, 세네갈, 토고 등 5개국은 여성의 성적착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케이프 베르드(Cape Verde)는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앙골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전쟁중에도 출생등록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여섯째, 각국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국가가 기관에서의 아동 쇠약, 부랑아의 삶과 활동, 동행자없는 난민아동, 불법적인 아동노동 착취, 국경지역에서의 아동 매매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인정하고, 보살피고,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

예컨대 루마니아의 사회발전 프로젝트는 아동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교육, 건강 그리고 보호 서비스에 그들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들과 그들 부모의 지식과 삶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란에서는 150명이상의 장애아동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이슈를 세우기위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 필리핀 아동보호위원회(Philippine Barangay Council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인도네시아 국가아동보호위원회(Indonesian National Child Protection Body), 말레이시아 지역보호팀(Local Protection Teams in Malaysia) 및 태국의 지역사회아동권리자원봉사단(Community Volunteers for Child Rights in Thailand) 등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파키스탄에서는 아동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소녀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해 매스컴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권리 문제를 국가 정책의제에서 우선순위를 높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곱째, 각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한 사법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청소년재판에 대해 UN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가들이 소년재판의 확실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청소년을 범죄자로서 취급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러한 시스템은 사회복귀와 재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더 폭력적이고 범죄화되게 이끄는 처벌정책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차드, 가나, 기니아, 모리타니아는 형법과 형법절차의 개혁에 착수했다. 1998년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정책과 몽

고(Mongolia)의 청소년비행담당관실(Juvenile Delinquency Officer)에서 아동권리 인식과 훈련을 다루었다. 필리핀에서는 사법부의 5개의 기둥인 법률집행, 구형, 재판, 교정, 사회간의 공조체제를 존속하게 하고, 마닐라 대학 법과정에 아동권리협약을 통합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방글라데쉬는 재판관과 경찰이 불리한 법규를 청소년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감옥에 구류된 청소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덟째,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권익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대책들이 아동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국가는 아동을 직접적인 목표로 정하지 않을 때에도, 어떤 방법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그것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지 그 정도를 평가한다. 벨기에 의회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취한 정책 효과를 보고받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감독하는 의미를 갖는다.

아홉째, 세계 많은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의 선거, 아동의 국회, 청소년 지방의회, 아동의 시장과 만남, 아동에 대한 정상회담과 세미나등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에 알려지고 말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콜롬비아에서의 평화를 위한 아동의 사회운동은 아동 참여의 좋은 예이다. 그것은 평화를 지지하는 활동과 메시지를 가지고 참가한 400개의 시민사회조직의 대중운동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선거참여(children's referendums)는 민주주의에 대한 훌륭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3. 선진 외국의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

1)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²²⁾

위스콘신의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WI)은 시민 자유와 헌법상의 권리와 시민권리를 옹호한다. 헌법상의 시민권리는 자유발언, 종교적 자유, 사생활, 동성연애자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ACLU의 목적은 위스콘신의 모든 주민의 시민자유와 시민권리를 옹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ACLU와 제단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옹호, 소송, 로비와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Wisconsin의 ACLU에는 24명의 자원활동 지도위원이 있다. 이 위원회는 정책을 만들고 단체의 재정을 책임진다. ACLU/WI는 정부의 원조나 재정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회비, 사적 제단 보조금, 개인기증 등으로 운영된다.

(1) 청소년·시민 자유권리 프로젝트(YCLP, Youth and Civil Liberties Project)

ACLU의 청소년·시민 자유권리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위스콘신의 현재 청소년이슈는 도시정화, 언어규범, 지구보호(Earth First)에 관한 것과 검열제도, 학생기자, 정학, 체적, 야간통행금지, 마약을 찾기 위해 학교를 순찰하는 경찰견, 인터넷 여과장치, 학생 마약테스트, 복장규범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것이다.

① 청소년·시민 자유권리 프로젝트 소식지(YCLP Newsletter) : ACLU의 청소년·시민 자유권리 사업 소식지의 기사와 정보는 자치신문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으로, 위스콘신의 자치신문 검열에 반대하며,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경찰의 청소년에 대한 불공정한 취급과 경찰과 문제가 생겼

22) <http://www.aclu-wi.org/youth>(검색일: 1999. 3. 2).

을 때 우리의 권리 알기, 고등학교와 대학세대 시민의 권리를 다루는 다양한 사이트 소개, 교과과정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미국헌법에 추가된 최초 10개조의 수정)을 소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학생에 대한 권리로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권리, 공정한 대우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학교 개인 기록부 보호에 관한 권리, ACLU의 도움으로 학교정책에 도전하는 학생들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② 청소년권리와 경찰 : ACLU의 체포 프로그램(Bust Card) : 경찰과 관련된 청소년권리에 대한 체포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접할 때는 법률이 주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경찰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과 마찰이 있을 때, 최상의 방어는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다. 우선 경찰에게 체지된다면, 절대로 경찰서에서 도망치지 말고, 수색할 때에도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자동차가 체지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당신이 체포된다면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이야기하지 말고, 변호사가 출석할 때까지 경찰에 말하지 말고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말할 때까지 당신의 경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법률 자료실(Law Library) : ACLU의 법률자료실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야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④ 질문과 대답 자료실Question and Answer Library : 질문과 대답 자료실의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CLU는 매년 수천개의 질문을 받고 있으며, 모든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질문은 시민자유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질문이며, 몇몇 질문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위한 법률 대리인 제공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이와같이 ACLU/WI는 위스콘신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민사소송을 조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해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살펴보면, 해방(emancipation)은 청소년이 18살 미만일 때 부모가 더 이상 법적인 권위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를 말한다.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다양한 경우에 해방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정의 명령, 군입대, 결혼, 또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포기하거나 그들의 부모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성년자 해방 법안(Emanicipation of Minors Act)을 통하여 해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해방의 결과로 청소년은 성인이 가진 대부분의 권한과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다.

체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살펴보면, 위스콘신에서 체벌은 허락되지 않는다. WI 법령 118조 31항에서는 학교의 피고용인, 대리인 또는 임원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외의 경우는 학교 재산, 그들 자신이나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힘”을 사용할 때이다.

2)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 재단 (AYF, Australian Youth Foundation)²³⁾

AYF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며, 리더쉽 정책을 개발하고 구조적이고 진취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청소년부문에 협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책임을 위하여 어려운 오스트레일리아의 청소년을 돕는 데 헌신하는 독립적 비정부 조직이다. 재단은 투자된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으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1) 국가 아동·청소년 법률센터 프로젝트

(NCYLC, 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 Project)

AYF의 국가 아동·청소년 법률센터 프로젝트는, 사우스웨일즈(South

23) <http://www.ayf.org.au>(검색일: 1999. 7. 10).

Wales)와 공익옹호센터(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의 연합 프로젝트이다.

NCYLC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옹호, 정보와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법률과 정책 실행을 위해 탐구하는 것 등이다.

센터는 연4회 발행되는 “권리 지금(Rights Now)!”이라는 회보를 발간하여 권익옹호와 신장에 관한 국가적 논평을 제공해 왔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정보질의·지문으로 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70개 이상 만들어 제출하여 왔다. NCYLC는 “학교에서의 권리를 알아라”라는 자료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사회활동과 법학과 학생들의 지원으로 토론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AYF는 1993년부터 3년간 750,000 달러의 자금을 NCYLC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아동·청소년법률센터 시상과 아동과 청소년권리에 대한 국가현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① 국가 아동·청소년법률센터 시상 프로그램(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 Awards) : 국가 아동·청소년법률센터 상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률가들이 모범적인 사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시상대상은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변호사들과 법무관들이다.

② 청소년 인권 대상(Australian Human Rights Awards-Youth Category) : ‘인권과 평등기회위원회(HREOC,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평등한 기회와 인권 보호 및 촉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기 위하여 1987년에 오스트리아 인권 메달과 장학금을 설립했다. 1997년에는 새로운 시상 부문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신장시킨 단체나 청소년들(25살까지)의 노력을 표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최종 결정은 AYF의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2년간 활동해 온 명예판사

심사위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상식은 9월 ‘인권의 날’에 개최된다. 1997년의 청소년 부문 수상자는 AYP 위원회 회원인 Miss Tammy Williams였다.

③ 아동과 청소년권리에 대한 국가헌장 프로젝트(National Charter of Righ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이 프로젝트는 국가 아동·청소년법률센터와 AYP의 공동 책임 하에 실시되며 오스트리아 재단에 의해 주도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특히 상처받은 개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법인설립을 위한 로비를 목적으로 했다. 논의를 위하여 헌장 초안과 보고서의 4,000개 이상 복사본이 배포되었고, 심의회에는 7세와 24세 사이의 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그들의 주요한 이슈는 청소년들의 생김새에 대한 판단이나 고정관념을 없애고 개성을 존중하는 것,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 경찰에 대한 불만이 없이 공공 장소에서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것 등이다.

3) 시민권과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CASE, Citizenship And Service Education Program)²⁴⁾

CASE의 사명은 학생들이 민주사회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며, 뉴저지(New Jersey)지역 시민을 위한 주립대학인 루저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의 서비스 사명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24) <http://www.scils.rutgers.edu/case/case.html>(검색일: 1999. 4. 20)

(1) 활 동

CASE는 1997~1998년 아카데미 해의 CASE 과정, CASE 국제 과정-해의 연구,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회관, 학생과 직원과 팀장을 위한 정보, 훈련, 지역사회 협력자에 관한 정보, Rutgers가 제공하는 소식지,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 위원회, 일반 자원활동가 정보, Americorps, 교육실습생, 실습기관 그리고 인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학습(다른 지역사회/서비스 학습 프로그램 웹)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사회복지 단체와 청소년을 위한 국가공동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서비스 단체에서 열렸던 2,000명 이상의 교육실습생에 관한 온라인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리스트는 교육실습생의 유형과 도시로 탐색할 수 있다. CASE는 1993년 3월 1일에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서비스계획안을 선언하기 위해서 루처스에 왔을 때, 재학생 교과과정에 관한 학습과 서비스를 혼합하는 방법의 국가모델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과 학구적인 연구를 결합한 것이다. CASE의 목적은 학생들을 오늘날 복잡한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뿐 아니라, 시민권의 본질과 대중적 서비스 윤리, 반성적 능력을 가진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CASE는 또한 모든 미국인들의 3가지 중요한 비판적 관심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다. 첫째는 지역사회 파괴, 시민권 의식의 부재, 청소년소의 증가에 대한 관심이며, 둘째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능과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술과 사회성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제도 실패에 대한 관심이며, 셋째는 국가 전역에서 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되지 않아 커져 가는 단절에 대한 관심이다. CASE는 지역중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루처스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2) CASE의 활동방법

CASE는 적극적인 학습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시민권, 봉사와 윤리와 미국의 다양성을 위한 이해는 책에서 배울 수 없으며 행동으로 배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CASE 과정은 과정의 주요한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1학점 서비스학습배치(1 credit service-learning placement)와 3학점 교실과정(3 credit classroom course)을 학술적으로 결합시킨다. CASE 과정은 교과과정이지만, 동시에 40시간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즉, CASE는 훌륭한 시민권에 대한 생각과 논의와 실천을 위해, 교실과 실제 세상 사이와, 서비스와 학습사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교과과정이다.

(3) CASE의 서비스제공

CASE 사무국은 루처스대학의 직원, 학생, CASE 지역사회 협력자와 뉴저지의 시민, 그리고 국내외의 다른 서비스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ASE는 학생의 현장 수행에 대한 평가에 교수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CASE는 적극적으로 학생의 지역사회 서비스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자를 모집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반응하여 지역사회 협력자를 투입하며, 지역사회 협력자들이 학생과 자원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며, 새로운 지역사회 협력자를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

CASE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 국내외 전역의 교육 기관에 서비스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지원,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자의 신규모집과 적응지도 등의 활용을 한다.

(4) 특별한 프로그램

CASE는 루처스대학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여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CASE는 여름 학기에 몇 개의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는 법률 및 시민권 프로그램이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은 3학년 과정의 하나로 뉴저지 법정의 행정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과과정 활동과 법정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에서 법률의 핵심적 역할과 독립적 사법부의 역할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농촌 연구와 공공정책에 대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 국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이미 루처스 대학은 민주주의와 민주화 연구를 위한 국가센터로서, 강력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CASE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권과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시민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도전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4)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국가 비정부 단체(CIVITAS)²⁵⁾

CIVITAS는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국제적 비정부단체이며, 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적 협회로서 책임있는 시민권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IVITAS 협회는 각국의 개인, 비정부단체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CIVITAS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며, 특정 당파에 속하지 않으며, 비영리적 단체이다. CIVITAS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모든 유용한 자료를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킹과 국제 교류와 다양한 다른 수단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신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교육으로 헌법 연구, 법률의 규칙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자 선거과정 연구, 훌륭한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가치 교육, 통치와 정치 기술 개발, 인권과 집단사이의 관계에

25) <http://www.civnet.org/civitas/civitas.htm>(검색일: 1999. 5. 31).

관한 이슈, 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이 있다. 시민교육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교육학으로서, 라디오와 TV 방송국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격 학습기술은 발전하는 세계에서 더욱 중요하다.

(1) 활동

두 개의 아프리카 소구역 워크숍이 다카르, 세네갈(서부·중앙 아프리카 워크숍)과 마푸토, 모잠비크(남부아프리카 워크숍)에서 개최되었다. 그 워크숍은 시민 교육가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이슈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소구역 CIVITAS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CIVITAS는 다양한 지역의 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규정하기 위한 국제회의의 뿐 아니라, 교사훈련 워크숍과 전략 조직 계획 회의를 주최하였다.

CIVITAS 조정위원회의 월간 회보와 신문, 회원 명부를 살펴보면, CIVITAS의 회원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유럽협정과 인권에 대한 UN 세계선언과 헌법의 목적에 맞는 원칙과 목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CIVITAS의 목적과 목표를 지원하는 제도와 개인을 위한 다양한 권리와 책임감을 신장시켜야 한다.

(2) 국제자료

Civnet는 시민교육과 시민사회를 위한 국제자료이다. CIVITAS에 의해서 개발된 Civnet는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를 촉진하는 시민교육 참여자들(교사, 교사 훈련가, 교과과정 설계자)뿐 아니라 학자, 정책입안자, 시민의식을 가진 언론인과 NGOs를 위한 웹사이트이다. Civnet의 목적은 건전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5) 4-H Center의 교육 프로그램²⁶⁾

전국 4-H 위원회(National 4-H Council)의 핵심적인 사명은 중요한 이슈와 응답을 결정하는데 협력자와 자원으로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4-H 위원회는 그 사명을 위해 사적·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비영리 교육 단체이며, 600명 이상의 숙박손님을 위한 시설로 연중 계속되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4-H 센터를 운영한다.

4-H 센터는 워싱턴(Washington)에서부터 1마일 떨어진 아름다운 시외의 캠퍼스로, 4-H 회원, 외부 회원, 시민 집단, 협회, 교회 집회, 청소년 집단 그리고 비영리 집단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한다. 15명에서 550명까지 활용할 수 있는 35개 회의실 및 다양한 실내외 공간과 700명까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센터는 회의, 훈련 세미나와 재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이다.

(1) 워싱턴 탐방 프로그램(WOW, Wonders of Washington)

WOW 프로그램은 25명의 참여자나 그 이상의 학교 집단, 4-H 클럽, 그리고 다른 청소년집단들이 워싱턴을 최대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6박7일 프로그램은 6~12 학년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청소년집단을 위한 훌륭한 교육여행을 체험하게 해 준다.

직원은 Washington, D. C.의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매력을 강조하는 워크숍과 편안하고 다양한 현장 견학 여행을 계획한다. 단체 지도자는 선택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WOW 안내서”를 받게 된다.

WOW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ashington, D. C.의 야간관광으로 도시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

26) <http://www.fourhcouncil.edu/4hcenter/CENTER4.HTM>(검색일: 1999. 9. 2).

장소와 모든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드라이브한다. 둘째, 국회의원와 함께 미국의사당, 미국 최고법정, 국회도서관 탐방을 위한 관광을 한다. 셋째, 국가 군인들의 묘지인 ‘알링턴 국가 공동묘지’를 차를 타고 안내를 받으며 탐방한다. 넷째, 국가항공교통과 우주박물관에서 잊을 수 없는 4가지 내용의 IMAX 영화를 관람하며, 미국국립박물관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받는다. 다섯째, 워싱턴 국가 대성당, 수사연방국, 고전적인 알렉산드라 타운, Mount Vernon(조지 워싱턴의 거주지와 묘지) 등을 현장견학 한다. 여섯째, 콘서트와 극장을 포함한 계절 문화 활동을 한다. 일곱째, 프로그램 지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워크숍을 포함한 야간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워싱턴 시민권·리더쉽 프로그램(CWF, Citizenship Washington Focus)

CWF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오늘의 훌륭한 시민은, 내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을 교육한다. CWF 프로그램은 국회 의사당에서 개최하는 가장 포괄적인 시민권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며, 전국의 고등학생을 위한 4-H 리더쉽 프로그램이다.

매년 여름마다 수천명의 청소년들이 Washington, D. C.에서 가까운 국가 4-H 회의센터에 머무르면서, 장기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6년동안, CWF는 청소년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 그들의 세계에서 청소년들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넓은 올바른 인식과 실행 관점, 시민참여에 대한 개인위원회 증가, 훌륭한 시민과 지도자 개발과 관련되는 시민적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적합하고 재미있는 활동

그리고, 다음을 통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 국가 수도의 감추어진 현장견학, 국회의원과의 만남, 시민참여에 대한 워크숍과 동기부여 연설, 성공을 위한 삶의 기술을 촉진하는 워크숍, 새롭고 영속적인 우정을 촉진하는 활동, 일상적으로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적극적인 대학직원, 적절성과 재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CWF에 참여자는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게 된다.

(3) 열린 법률교육 리더쉽 프로그램(SLL, Street Law Leadership)

Street Law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률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흥미진진한 실천적 접근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체험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법률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게 해준다. 5일간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첫째날, FBI, 국회의사당과 최고 법원 방문, 둘째날, 워싱턴의 새로운 첨단기술 박물관, 자유토론 박물관 방문, 셋째날, 최고법원 소송사건 논의법 학습, 넷째날, Georgetown Law School의 모의재판 참가, 다섯째날, 국회의 의회청문회에서 모의 입법청문회 참가.

6) 아동 옹호가(Children's Advocate)²⁷⁾

아동 옹호가는 “옴부즈맨과 아동 옹호가 법안”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공익 교육에 종사하며, 입법의회나 정부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한다. 아동 옹호가는 또한 입법의회에 연간보고서를 제공한다.

아동 옹호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 권리, 관점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그들의 요구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아동·청소년 옹호가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정부정책과 입법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하는 것이다. 아동 옹호가는 지방 정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위해 활동하며 법령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회의의 임원이다.

27) <http://www.legassembly.sk.ca/legassembly/children.htm>(검색일: 1999. 5. 31).

(1) 활 동

아동과 아동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검토하며,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고, 아동 복지를 향상하고 가능하게 하는 실천, 정책과 법률 개선을 촉구한다. 지역사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촉진하는 아동 옹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옴부즈맨과 아동 옹호 법안(Ombudsman and Children's Advocate Act)

이 법안의 “정부기구(agency of the government)”는 위원회, 위원, 협회등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법률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공무원이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은 청소년범죄자 법안(캐나다) 또는 청소년범죄자 서비스 법안에 준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18살을 포함하여 18살 이하를 의미하며, “부서”는 Saskatchewan의 정부 부서나 지부이다. 옴부즈맨(국회가 임명하는 민원조사관)은 조사를 위한 위원으로서 입법부의 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의회의 추천으로, 의회의 부 장관이 옴부즈맨을 임명해야 하며, 옴부즈맨은 사임하거나 죽거나 직책을 떠나지 않는다면, 임명한 날로부터 5년동안 공직을 맡아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의장이 없거나 의장이 그 지역에 없다면 의회발언이나 실행 의회의 의장이 요청한 문서로 그의 관직을 사임할 수 있다.

(3) Saskatchewan의 입법의회

Saskatchewan의 입법의회는 입법 출판물, 입법회의의 단체와 운영에 대한 서비스와 정보, 회원과 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법의회는 캐나다 레지나지역의 Saskatchewan에 위치해 있다. 지방 의회인 입법의회는 모든 시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사람은 의회 구성원들이 통과시킨 법률에 의한 의무가 있다. 정부 권한은 입법의회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모든 법률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구성원에 의해 의회에 소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Saskatchewan 시민은 지역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즉, 적어도 매년 5월 새로운 입법의회를 선출할 민주적 권리를 갖는다. 입법의회 임원은 정부지출 감독, 정부의 처우와 관련된 개개 시민을 지원하며,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정보를 공개하고 입법의회 위원들의 이익다툼을 저지하도록 돕고 있다. 정부로부터 법률독립을 위하여, 각 업무의 책임자는 입법회의의 임원으로 지명된다. 임원들은 직접적으로 아동옹호 활동을 하며, 옴부즈맨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한다. 또한 입법회의의 임원은 아동옹호가, 옴부즈맨(민원조사관), 지방 회계감사원 등의 역할을 한다.

7) 연령제한이 없는 사회를 위한 단체

(ASFAR, American for a Society Free from Age Restrictions)²⁸⁾

ASFAR는 헌신적으로 청소년의 법적인 시민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다. ASFAR는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야간통행금지법,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항한다. ASFAR는 미주리(Missouri)주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다. ASFAR의 목적은 비폭력적인 활동과 전국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없애고 개혁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ASFAR는 메릴랜드(Maryland) 대학의 학생 Matt Walcoff에 의해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자유와 권리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18살 이상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8) <http://www.asfar.org>(검색일: 1999. 3. 20).

(1) 연령제한철폐 프로젝트(ASFAR Project)

ASFAR 프로젝트는 나이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자유사회라고 믿으며,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 자유를 시민들에게 허락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의 헌법이 그러한 정책을 요청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령제한 법률이 미국의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 제정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연령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는 모든 정부 정책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투표권, 자유 발언, 성인연령과 법률해방, 교육, 법정, 공공 장소나 직무상 연령차별, 경제, 건강과 성, 여행, 야간통행금지법, 음주연령, 도박, 미디어에 대한 법률과 정책들이 검토·보완되었다.

청소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없애고 개혁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표권 : 투표할 권리를 연령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조항을 없애거나,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이 국가 비준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국가는 연방과 주 선거투표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허락하거나 투표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② 발언의 자유 :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

③ 성인연령과 법률해방 : 청소년과 성인을 법률적으로 분리하는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법률 차별을 축소해야 한다. 법률 해방을 적용할 자격과 성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는 미국의 모든 시민에게 승인되어야 한다.

④ 교육 : 공립학교에서 학생은 그들의 교육 운명을 선택하는데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을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⑤ 법정 : 청소년들이 그들 또래의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승낙없이, 그들을 위한 옹호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률 표현에 대한 권리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

⑥ 공공장소에서나 직무상 연령차별 : 지역정부는 그들의 연령에 기초하여 청소년 출입 제한을 금하는 명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연방정부는 40살이나 40살 이하로 연령 차별 고용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와 지역정부는 청소년들을 고용에 대한 연령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⑦ 경제 :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재정적으로 능력있는 청소년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대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⑧ 건강과 성 : 18살 이상의 십대에게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권리와 같은 권리에 대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여자 청소년에게는 피임약과 다른 피임장치를 획득을 금하는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ASFAR는 모든 법률승낙 연령에 대한 철폐를 지지한다. 그러나, 연령에 기반하는 독단적인,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인 승낙사이의 구별에 대한 법률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⑨ 여행 : 최소 운전 연령은 축소되거나 낮아져야 한다. 운전이 금지된 청소년들에게는 공공 대중교통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호텔 방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제한은 제거되어야 한다. 자동차 대여기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대여해 주어야 한다.

⑩ 야간통행금지법 : 연령을 기준으로 한 야간통행금지법은 삭제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는 마을 법률에 야간통행금지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음주연령 : 21살을 최소음주연령으로 강요하는 1984년의 국가최소음주연령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는 음주연령의 철폐를 시작해야 한다. 연령에 기반한 관용이 없는 법률은 철폐되어야 한다.

⑫ 도박 : 합법적인 도박연령은 선택적으로 철폐되고 낮아져야 한다.

⑬ 미디어 : 대중 매체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8) 청소년들의 가상국가(Nation 1)²⁹⁾

Nation 1은 전세계적으로 아동, 10대 그리고 청소년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설립된 국가이다. 청소년을 위한 “연합국가”로서 Nation 1의 기능은, 청소년들이 단합할 수 있는 중심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구성인구 공동체는 아동(8~12), 10대(12~18), 청소년(18~21),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미국인, 장애인, HIV(에이즈바이러스) 양성 감염자, 소년 공동체, 소녀 공동체로 구성되어있다.

Nation 1은 가상국가이다. 가상국가에서 시민은 지리적이거나 인종으로 구분되는 국가가 아닌, 기술과 연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국가를 가상공간에 만들려고 한다. 즉, Nation 1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청소년들이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다. 청소년집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잘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Nation 1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위한 채널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현재 Nation 1은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이며 이는 곧 세계의 청소년들의 온라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일단 이 온라인 공동체의 인구가 충분히 많아지면 Nation 1이 실제 국가가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Nation 1의 목표는 첫째, 의사소통과 의견교환, 의사결정, 프로젝트 창출, 상호 지원, 그리고 세계정치에 청소년 대표로서 참여 등의 활동이 가능한, 활기차고 신나는 온라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아동이 보다 활동적이고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셋째,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장려한다. 넷째, 가능한 한 분산된 체제를 유지한다. 다섯째, 미래에 대중의 의지에 따

29) <http://www.nation1.net/main.htm>.(검색일: 99. 9. 11).

라 국가의 목적과 구조가 변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다. 여섯째, 전세계의 아동이 Nation 1, 인터넷, 기술 그리고 일반적 의미의 의사소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Nation 1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가상 국가는 아동이 다른 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시야와 접촉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를 배우거나 지리적으로 지방에 있는 또래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기보다는 전세계의 또래들에 대해 배우고 그들과 보다 가까워 질 수 있게 한다. Nation 1의 웹사이트에서는 아동에게 일반 포럼, 다언어 포럼, 기술 포럼 등의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9) 미국의 청소년정치가(YPA, Young Politicians of America)³⁰⁾

‘미국 청소년 정치가’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민주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YPA의 목표는 민주주의, 정부에의 참여 그리고 훌륭한 시민권에 관한 것이다. 전 국가적인 클럽을 통하여, YPA는 청소년 권한부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YPA의 구조는 미국 50개 주의 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된 클럽의 정규회원은 적어도 10살 이상이고 35살 이하이어야 한다. YPA는 1998년에 설립되어 시작되었다.

YPA는 Hugh O'Brian Youth Leadership, Presidential Classroom, Washington Workshops와 같은 리더십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지지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의 지도자로서 직면해야만 하는 의무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Hugh O'Brian Youth Leadership’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들의 가정, 학교, 직장과 지역사회

30) <http://www.ypa.org/home.html>(검색일: 1999. 9. 15).

회에서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HOBY 프로그램은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지역회의센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른 리더쉽 기회와 다르다. 'Presidential Classroom Scholars Program'은 1968년부터 모든 유능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워싱턴에서 일주일을 보낼 기회를 제공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워싱턴 내부와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 국회 의원의 세미나와 국가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Washington Workshops'는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현장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세미나의 의도는 학생들이 국가지도자와 도전적인 대화와 회의를 통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YPA 총회는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되기 위해, 정치적 무지로부터 청소년들을 이끌어낼 역동적이고 좋은 방법이 되는 첫번째 단계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미국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러한 영향을 받은 청년들은 다른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청소년 협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PYN, Program for Young Negotiators)³¹⁾

PYN는 청소년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제약을 없애는 수단으로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협상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YN는 보스톤내 지역사회와 학생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PYN는 학교, 청소년관련단체, 지역사회와 청소년법정과 같은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미국의 사법부와 교육부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PYN는 Harvard 대학교의 Jared Curhan에 의해

31) <http://www.pyn.org>(검색일: 1999. 9. 3).

1993년에 개발된, 학생 사이의 폭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하나이다. PYN은 학교 폭력의 커져가는 문제에 대처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청소년권한부여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협력자들에게 Roger Fisher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s Without Giving In”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갈등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PYN의 기술은 하버드 법과 대학의 Program on Negotiation(PON)의 “양쪽이 다 유리한(win-win)” 협상이론에 기반한다.

청소년 협상자를 위한 교과과정은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지도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협동, 긍정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것, 사람들이 건설적으로 차이와 다양성을 통하여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 PYN은 협상 교과과정, 학교중심 프로그램, 협상훈련 세미나를 제공한다.

IV. 국내 청소년권리 현황과 권익증진 활동

1. 국내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사례³²⁾

선진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정부와 성인들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다. 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이를 모니터, 변호, 지원해 주는 단체나 시스템이 민간단체에서 활발할 뿐아니라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구(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등)의 활동 또한 활발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각 단체의 활동은 최근에서야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자문을 해주는 기관이 드물며, 청소년권리를 위해 일하는 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나 정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논쟁이 시작되었던 현정부의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권리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과, 각 민간단체와 청소년 주체적 모임의 자율적인 인권신장활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지구적인 청소년 권리신장 노력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UN 청소년부서를 중심으로, 새천년을 향한 청소년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논의와 청소년정책의 지역적·세계적 연계·협력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UN의 각종 행동프로그램이나 실천지침은 각 국가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인식

32) 국내의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은 관련문헌과 인터넷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찾기 운동이 필요하다. 국가정부나 UN 국제기구가 청소년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수혜적인 입장만 가지고는 진정한 청소년권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각 민간단체들이 정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국가정부의 원조나 재정을 받지 않으면서 기금과 회비, 사적 재단보조금, 개인기증 등을 받아 각 단체의 재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청소년 주체의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얼마전 서울에서 1,100여개의 단체가 참석한 ‘NGO 세계대회(99년 10월)’가 열린 것은 NGO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중적 인식과 각성, 다짐의 계기가 된다. NGO는 이제 유엔이나 국가권력 못지않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국제적으로 제5권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권리를 위한 국내 NGO들의 활동은 1990년대 중반이후 후반기에 활발하게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인 성인, 난민, 여성 등의 인권보호활동을 수행하던 인권단체들이 청소년집단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기 시작하였다. 90년대 후반에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은, 청소년권리관련 민간단체들이 1995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이후 인권교재개발, 청소년인권캠프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약10여 년이 지났음을 볼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정부나 각 민간단체,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모임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각 청소년권리 관련 민간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과 권리행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국가의 본질적 의무인 동시에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주된 활동 방향으로 삼아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NGO는 정부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청소년주체의 단체활동에 도움을 주고 연대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의 청소년 권익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기관·단체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수 활동사례가 더욱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한다.

1) 충남청소년인권센터

(1) 주요 활동내용

청소년인권 상담과 청소년인권 모니터제 실시,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청소년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1999년 설립운영)를 청소년상담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 인권침해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독립기관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도청소년상담실 중심으로 14군대시·군 청소년상담실을 연계하여 청소년 인권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 사업운영현황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목적은 청소년인권의식의 함양,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구와 개발,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연구이다. 기능과 사업으로는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의 수집과 대응방안 (신체적 학대, 체벌, 성폭력, 유기,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을 경시하는 전형적인 사례 발견; 인권침해 사례별로 예방, 응급조치, 법률구조 등) 제시,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구·조사, 청소년

년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조성과 대안모색,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연구, 청소년인권 모니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 자율활동 육성·지원 등이 있다. 기구와 인력으로는 대표, 운영부, 청소년인권 모니터(성인 모니터요원 20명, 청소년인권동아리 10명)가 있다. 청소년인권활동으로 소식지발간(99. 6. 창간), 청소년인권지킴이 활동, 사이버상의 인권마을운영, 청소년인권 모니터활동 등이 있다.

① 청소년인권 모니터활동

청소년모니터는 청소년인권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청소년인권동아리)를 통해 운영되며, 성인모니터는 법률가, 의료인, 교수, 교사, 종교인, 상담실 실무자, 사회복지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중에서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 의료, 교육, 종교, 상담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현재 20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 중)하여 운영된다. 상담원과 모니터 요원은 청소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해결 및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② 청소년인권지킴이 마당

‘청소년인권지킴이 마당’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할 것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며, 청소년들이 인권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배우고 누려보는 체험의 마당이다.

‘청소년인권지킴이 마당’은 1999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총15시간, 참가비 5천원)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청소년인권을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청소년들을(선착순 20명)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그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 짜	시 간	내 용
7/26	10:00-13:00	‘청소년인권이 뭘까?’(청소년인권의 정의)
7/28	10:00-13:00	‘짜잔~~하고 나타난 청소년인권? 오~우 NO!!’ (청소년인권의 역사)
7/30	10:00-13:00	‘청소년인권! 너를 보여줘!’(청소년인권의 내용)
7/31	10:00-13:00	‘소중한 너! 알러뷰~~♡ 청소년인권’ (청소년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7/31	14:00-17:00	‘걱정마! 청소년인권지킴이가 있으니까!’ (청소년인권지킴이 활동)

③ Cyber상의 인권마을(<http://www.nettore.or.kr>)

‘인권마을’에서는 인권지킴이로서 성인, 청소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모니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파악과 모니터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모니터 사례를 종합·분석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인권마을을 운영한다.

(3) 사업운영 전망

청소년인권센터는 충남에 설립 완료된 시군 청소년상담실 조직을 기반으로 사업을 체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존의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한 청소년 인권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 연구조사, 정보사업 등을 벌이는 등 실제적인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의 모델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인권지킴이 마당’에서 활동한 15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며,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청소년인권지킴이로 활동하게 하는 등 참여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유인가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인권운동사랑방

(1) 주요 활동내용

1993년 3월 창립된 이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차별받는 사회경제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과 권리의 주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민간인권단체(Human Rights NGO)이다.

청소년을 위한 인권활동으로 1995년 2월 ‘제1회 고등학생인권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등학생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공부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토론했도록 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소모임이나 집단활동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는 활동, 알기쉬운 인권교재 시리즈의 개발, 인권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학교나 가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고발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전화’개설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주요활동은 ① 국내 최초의 인권전문 팩스신문인 「인권하루소식」 주5회 발간, ② 국내 유일의 인권정보자료실 운영, ③ ‘진실의 영화, 인권의 영화’를 통해 대중적 인권교육의 마당을 여는 ‘인권영화제’ 개최, ④ 인권교육 방법론과 알기쉬운 인권교재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는 인권교육실 활동, ⑤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법률과 정책 등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권고, ⑥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옹호, ⑦ 동티모르의 자결과 인권을 위한 연대활동 등 구체적 이슈에 따른 국제연대 활동, ⑧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권운동 등이다.

(2) 사업운영현황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내이행 모니터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에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에 가입했다. 국제조약은 일반적인 선언이나 헌장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 정부는 조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약의 국내 이행사항을 일정 기간마다(최초보고서 제출이후 5년마다)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약 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에 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보고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단체들이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95년 3월, 20여개 민간단체들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영역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현황을 총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차 민간단체 반박보고서의 형태로 유엔에 제출하였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의 활동이 단순히 민간보고서 작성작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조약을 홍보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의 활동성과는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을 여는 책, 1997)에 담겨 있다.

1999년 말의 2차 민간보고서 준비사업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청소년 권리분야의 발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는 과정이 됨과 동시에 여전히 정부의 홍보·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는 무기로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아동권리협약의 홍보와 교육을 촉진하는 계기로서 삼을 계획이다.

②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 형성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나 인권교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5년여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권교육의 방법론을 익히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 알기 쉬운 인권교재 시리즈 개발

그 첫 결실이 바로 올해 초 발간된 「인권교육길잡이」(도서출판 사람생각, 1999)이다. 이 책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수많은 학생들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험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필된 인권교육 지침서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첫 인권교재에 이어 청소년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Peace Child International' 주최로 세계 곳곳의 청소년들이 모여 직접 제작한 인권교재, 'Stand Up for Your Rights' 또한 1999년말 번역·출판할 예정이다.

- 어린이·청소년 인권캠프 개최

인권운동사랑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고, 95년 고등학생 인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비정기적 형태의 교육방식을 극복하고 발로 뛰는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 인권캠프와 청소년 인권캠프를 매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첫 작업으로서 올해 8월 '어린이 인권캠프'(1박2일)와 '청소년 인권캠프'(2박3일)를 각각 개최했다. 인권캠프는 자유와 평등, 평화와 관용, 연대 등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캠프과정을 통해 몸소 체험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대학생 인권캠프 개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 대학생연대'와 함께 1999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대학생 인권캠프」를 개최하였다. '인권과 친구하기'란 주제로 열린 이 캠프는 만남

의 마당에서 캠프단기 사이에 7개 마당으로 이루어졌고, 마당을 닫고 참가자들이 인권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마당과 마당사이에는 식사를 하거나, 협력게임, 갈등극 릴레이, 인권가요제, 인권뉴스 제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캠프는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의 모임인 '인권운동 대학생연대'와 함께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첫날은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둘째날은 인권침해사례를 찾아서, 의제를 도출하고, 국제적 인권운동의 전략을 배운 후에, 대학생 인권운동의 전략과 실천모델을 개발하며, 셋째날은 참가자들이 인권캠페인등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2) 사업평가 및 전망

인권교육의 방법론이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제한된 경험과 노력으로는 가능치 않다고 본다. 교사그룹, 청소년단체,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다양한 인권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가 1차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가 결합한 형태여서 안정적인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2차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대회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연대회의의 역할 경계를 확장하고 일상적인 조약이행 모니터 활동과 어린이·청소년 인권담론의 확장, 어린이·청소년 인권운동 등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중·고등학생복지회

중·고등학생복지회(이하 학복지회)는 '청소년인권보장'과 '이상교육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임으로 하이텔, 나우누리의 통신기반을 가지

고 활동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복지회는 중·고등학생 스스로 이끌어 가는 모임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해나가고 있는 모임이며, 많은 학생들과 공감하는 문제점 ‘두발단속, 자율학습’ 같은 학교와 교육제도 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활동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복회는 95년 입시지상주의 학교교육을 제소한 ‘최우주군의 헌법소원’ 사건을 계기로 열린 하이텔 토론방에서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토론참여자들이 만들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이나 학생을 위한 학교만들기 서명운동 등을 벌였고 소식지 ‘돋움’을 통해 인권정보를 알리고 매주 토론회와 세미나를 갖고 있다.

청소년 중심 권리활동의 어려움은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학생 신분이기엔 모이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은 점, 정보나 정보분석이 아직 경험부족으로 힘든 점 등이 현재 활동의 어려움이다. 또한 소식지 등의 경우, 내용이 학교 비관적이어서 학교 내에서의 배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세미나나 토론회의 경우는 고정적인 장소가 없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예를들어, 학복회 초기에는 학교에서부터 회원들이 ‘탈퇴요구’를 받는 등, 학교로부터의 탄압이 심해, 활동회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곤 했었다. 그리고 현실공간에서의 오프라인(off-line)활동 장소가 없어서 ‘카페’ 등을 이용하였으며, 그런 오프활동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학복회는 교육부나 언론에 의지한 활동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요구와 주장을 할수 있는 주체적인 모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생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정보수집과 청소년의견수렴, 관련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발전하고자 한다.

4) 사이버청소년의회

사이버청소년의회는 1999년에 만들어진 사이버상의 청소년인권모임이며,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유스’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목소리를 마음껏 내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공동의 토론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만18세 선거권 부여문제’, ‘교실붕괴? 학교붕괴?’, ‘19세 대학생의 술마실 권리’, ‘나는 대한민국 청소년’ 등 인권에 관련된 의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아니며, 가장 ‘시민사회’적인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민관협동 사이트이다. 프로젝트 기획과 운영 책임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사이버 청소년의회는 크게 Cyber상의 이야기 장소와 Real공간의 놀이로 이루어진다. Cyber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한가지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Real공간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Cyber공간의 의견을 청소년 스스로의 목소리로 알리기 위하여 Real공간을 통한 문화놀이로 연결하는 것이 사이버의회의 활동이다. 이는 게시판에서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자하는 사이버 의회의 목적이다.

사이버상의 토론내용으로 ‘청소년 인권에 선거권이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청소년 인권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청소년의 정치 채널 획득을 위해서는 선거권이 중요하며, 선거권이 있는 곳에 관심과 정책이 있고, 사회적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변화가 무척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들은 다른 일에 가려 묻혀지는 이유가 바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선거에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수 있는 권리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1) 주요 활동내용

'타래'는 1998년 8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1999년 1월에 15명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시작됐다. '청소년 창안제(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 청소년정책아이디어 공모대회)' 수도권 거주 응모자들을 우편 권유하여 회신이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구성되었다. '카페 타래(<http://cafe.daum.net/tarae>)'는 청소년인권신장 동아리 '타래'에서 의견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카페이다. 사이버 의견교환센터인 카페타래를 설치해 청소년인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망 나누누리에도 작은 모임방을 개설·운영중이다. 또 청소년의 기본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청소년인권지킴이 발대식을 갖는 '청소년인권선언' 축제와 '인권문제에 관한 청소년인식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 체육청소년과 실무자를 만나고 9월에는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을 찾아 청소년정책과 시설활용에 대해 조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타래는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의 '청소년 창안제'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분명한 청소년 목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을 개발하고, 다수 관련 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청소년 자율활동의 본보기적인 성격을 가지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억눌렸던 기본 권리를 찾고, 여러 움직임을 통해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2) 사업운영 현황

① 대한청소년인권선언기획(안)

1998년 청소년 헌장이 선포되고, 청소년의 인권이 하나의 사회 이슈로 붙어져 시선을 모으고 있는 현재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기관, 단체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고,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책임을 알려, 사회 여론에 우리의 하나의 목적 의식을 올바르게 알려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교육하여 주체인 청소년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기획안의 세부는 다음과 같다.

- 각 나이별 청소년(9세 ~24세) 대표 16인 선언
- 중앙과 지방 동시 선언(창안제 연대 활용, 인터넷 방송국 도움) 청소년 거리 축제
- 페이스 페인팅, 거리 전시회 (헤어쇼와 협의중), 거리 사이코 드라마, 거리 열린 법정, 퍼포먼스 전시회
- 기존 학생(청소년) 인권 선언과의 차별화 : 교육부에서 ‘학생권리헌장’, 학생복지회의의 인권 선언, 강원, YMCA ‘청소년 인권 선언문’, 진교조의 ‘학생권리 수호선언문’ 과 같이 어른이 주도하였거나, 아니면 잘 홍보가 되지 않아 하나의 단발성 행사로 그친 기존과의 차별성을 중점에 둔다.
- 청소년인권지킴이 발대식
- 인권 선언과 어긋난 권리 침해 사례와 개선된 사례 분석보고
- 지킴이 활동 후 정리 사례집 출간
- 기수 모임을 해 장기적, 하나의 단체로 성격화

② 청소년인식조사사업기획(안)

청소년의 인식을 직접 청소년 스스로의 설문을 통해 조사해 봄으로서 그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그와 동시에 ‘타래’의 홍보를 겸해 타래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후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해 자료집으로 엮어 기타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래 사업 기획 중 ‘대한청소년인권선언문’ 제작시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청소년 스스로와 공감대를 갖을 수 있는 선언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인식 (연령, 지역, 학력 등) : 설문 조사 후 통계 기반 자료
-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의 인지 여부 : 1998년 8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청소년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청소년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의 기초 마련.
- 청소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단점 : 외국과 비교시 청소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부족한 점을 지적, 이들에 필요한 편의를 파악하여 효과적 제공의 기반.
- 청소년이 보는 청소년 : 언론과 TV 매스컴이 만드는 다른 색깔의 청소년에 대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파악
- 청소년의 이상 (꿈을 가지고 있는가?) : 청소년의 목표, 희망에 대한 파악으로 이들의 삶이 척박정도를 후에 추정
-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반응 : 대중 매체 및 사회, 청소년 기관, 단체에서 이슈화한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의식 조사
- 청소년이 보는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자신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 여부 파악, 청소년 능동적 참여의 효과적 정책 운영의 기초 조사
- 청소년이 보는 대중문화 : 청소년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시각 조사, 일본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6) 젊은 모임

(1) 주요 활동내용

96년 4월 19일 제도교육 내에서 수동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광주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모여 시작됐다. ‘청소년인권 119’를 만들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7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과 지역자치모임 대표들로 구성된 ‘청소년포럼’을 통해 학생인권의 현실과 극복방안 등에 대한 공개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권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창립 초기부터 97년까지는 문화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볼런티어 활동이 주된 활동 내용이었다. 청소년 문화학교나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대축제, 사회봉사학교, 송년한마당, 빗고을 광주의 특성을 살린 5.18 일일 체험학교와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청소년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했고 이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후에 지역 청소년 단체들이 진행하게 되었고 1998년에 새로운 목표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 1998년 젊은모임 청소년 운동의 목표를 '청소년 인권의 옹호와 참여의 확대'로 규정하고 5월 충장로에서 벌인 '청소년 인권 거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98년의 대표적 청소년 인권침해 사건이었던 전라고 사건과 영파여중 사건에 대한 나우누리 통신방에서의 서명운동과 청와대·교육부 청원운동을 전개해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챙길 수 있었다.

또한 8월 여름방학에 중·고등학교 방송반, 교지 편집부, 신문반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언론인 학교'를 개최해 이후 '청소년 언론인 클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영역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사회봉사학교'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전남대 대동제때 청소년들의 유흥가로 전락하고 있는 전남대 후문에서 500여명이 함께 하는 '청소년 한마당'을 개최했고 학생의 날을 기념해 1,000여명이 참가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유명무실하게 변해버린 학생의 날을 되찾자는 의미로 매년 진행된 청소년 대축제는 각 고등학교 축제 참가팀 중에서 선된 팀들이 모여 공연하는 지역 청소년 축제로 자리잡았다.

(2) 사업운영 현황

① '젊은모임'의 활동공간별 사업내용 : 첫째, '이야기 공간'은 자서전 쓰는 사람들, 1센티의 자유, 청소년 포럼, 둘째, '사이버 공간'은 젊은모임 홈페이지, 웹진 야자, 사이버포럼, 셋째, '문화 생산 공간'은 젊은모임 문화

홈페이지, 웹진 야자, 사이버포럼, 셋째, ‘문화 생산 공간’은 젊은모임 문화제(문화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소비적 문화생활에서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생활로), 넷째, ‘사회적 실천 공간’은 생활 속의 볼런티어 활동이 있다.

② 청소년포럼 :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힘이 학교와 지역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참여운동의 공간이 필요했고 이는 ‘청소년 포럼’이라는 조직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학생인권의 현실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99년 1월 제1회 포럼이 개최되었다.

③ 광주학생봉사연합 : 청소년 포럼과 함께 상반기에 만들어진 소중한 모임이 ‘광주학생봉사연합’이다. 젊은모임 창립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지역사회 청소년 볼런티어 운동을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99년 4월 10일 창립하였다. 이름 그대로 지역 고등학교에 있는 봉사동아리들의 연합체 형태로 만들어졌고 상반기에 복지시설 활동과 환경 활동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지역 문화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젊은모임 볼런티어팀과 광주학생봉사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대학생 볼런티어들과 함께 젊은세대의 볼런티어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Y-V 21’이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몇 번의 준비모임을 가졌고 9월과 10월 두세번의 워크숍을 거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④ 웹진 야자(YAJA : www.yaja.org) : 청소년 언론매체로 창간한 웹진 야자가 있다. 98년 언론인학교가 끝난 뒤 청소년 언론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몇 회원들과 사이버공간을 주무대로 활동한 회원들이 모여 4월에 창간호를 내고 최근 3호가 업데이트되었다. 아직 기사가 충실히 채워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창간 1주년까지 청소년 대안 언론으로 뿌리를 내리겠다는 각오로 편집진과 기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7) 백영애 선생님의 인권수업

백영애 교사는 인권수업으로 98년부터 인권을 주제로 도덕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아동권리협약’ 전문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각 조항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하나씩 신문기사에서 찾아오도록 하고, 각 조항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영화제, 인권퀴즈, 청소년헌장 만들기, 청소년환경지도 만들기, 교실내 인권침해사례 발표 등의 활동을 한다.

백영애 교사는 30-40명의 청소년(중고등학생)이 총8회 16시간동안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에서 집단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교육의 기법」을 많이 참고하였고, 모둠놀이와 그림그리기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한 점이 돋보인다. 총 8회의 인권교육은 각각 2시간씩 소집단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의 주제는 오리엔테이션과 만남의 시간, 자신의 권리를 알자, 인권개념의 이해,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인권의 존중 보호 증진, 마무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의는 「인권교육의 기법」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적용하였다. 재미있는 인권수업 프로그램을 위하여 영상매체나 동화, 유니세프 비디오 자료로 미리 준비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권리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좀더 가깝고 밀착된 교육방법으로 인권교육을 함으로써 재미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권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국내에서 공식적인 학교 교과과정으로서의 첫시도로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방안을 시사하였다.

8)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3년에 발족된 한국유니세프는 1997년 시민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과제로 삼아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였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번역 및 배포,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정부조직의 감시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회의 등을 개최해 왔고, 1995년경 교육부의 협조를 전국 11,500여 초·중·고교에 아동권리 국제협약 전문 및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를 번역·보급한 바 있으며, 어린이 영상문화,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라는 주제 하에 ‘어린이 권리포럼’, ‘한국아동권리위원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아동권리협약을 가르치는 교사용 지침서인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는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다른 기관의 아동권리교육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첫째 단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학습활동으로 어린이들이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권리문제가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도록 이끈다. 둘째 단락은 활동을 위한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들이 권리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제시하면서 어린이들이 당면한 권리문제들에 대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 가능한 활동들을 소개한다. 셋째 단락은 학교내외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로서 교과과정의 한 학습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부터 1회의 워크숍에서 다룰 수 있는 활동까지 다양한 종류의 학습방법을 다루고 있다.

9)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는 민간인권 운동 단체이다. 특정 정부, 정치적 집단,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 또는 특정종교에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활동하며,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며 전세계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된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하여 「제1회 엠네스티 인권캠프」를 열었고, 1999년에는 제2회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캠프는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에서 활동하는 대학생과 시민 등을 포함하여 주로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주제강연, 집중토론, 인권교육, 관심분야별로 6개의 주제강연, 그리고 크고 작은 인권문화행사로 이루어졌다. 아동의 인권은 주제강연의 하나로 다루어졌는데, 나머지는 여성의 권리, 생명권, 노동과 인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인권교육 워크숍 등이었다. 전체 참가자가 참석하는 강연과 집중토론과 함께, 관심분야별로 주제강연이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휴식과 조별활동, 그리고 밤시간에 인권 관련 문화활동이 있어서 참가자들끼리의 친교를 강조하였다. 인권활동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되었고,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을 한 후에,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1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4년에 창립된 이래 유네스코의 고유활동분야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청소년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격동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함양시키고, 청소년들의 커다란 잠재력

을 개인적·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분출케 하기위해 1965년부터 청소년관련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활동으로는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연수활동과 유네스코 학생회 자원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청소년문제 연구활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유네스코가 1995년 유엔 ‘관용의 해’와 이미 제안된 ‘유엔 인권교육 10년’ 사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작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침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1999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동북아시아에 인권교육 워크숍(12월 1일~12월 3일)을 국내에서 개최하였다.

11) 기타 관련단체

(1) 한국아동권리학회

1996년 발족된 학술단체인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활동을 통해 한국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학회의 주요사업으로 아동권리 관련 지표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1997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와 놀이문화’, ‘아동권리지표개발’, ‘아동권리지표개발 II’, ‘세계의 아동권리교육 현황’, ‘UN아동권리협약 제1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99년 11월에는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국내 아동인권 전문가와 외국의 ‘save the children’ 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외 학회지 발간, 학술강연, 유엔 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워크숍과 권리교육 워크숍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학회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회이며, 그간 아동권리지표개발과 권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애써왔다. 학술대

회와 학회지 발간과 함께, 다른 연구활동을 통하여 아동권리증진 활동을 한다.

(2)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속해, 국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주요활동은 국제인권분야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정부의 국제활동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며 활동기구로 인권교재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자료로는 지구촌 인권통신(소식지) 계간지 발간, 국제인권센터 영문소식지 연2회 발간, 각종 인권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법률 전문가단체이다. 주요활동 내용은 연구와 현장조사, 변론활동, 여론형성 활동, 대외협력활동, 조사·연구활동, 법률구조활동, 여론형성활동 등이며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회 참가활동을 하고 있다.

(4)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1994년 시작하여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 단체이다. 활동내용은 신문발행사업, 전북지역 인권보고서, 평화·인권자료실운영, 생활인권운동, 구속자 지원사업, 평화·인권교육, 프라이버시권 보호운동,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운동, 연대사업, 인권영화제 개최이다. 최근의

활동은 청소년인권캠프,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확충을 촉구하는 활동, 국가보안법폐지운동, 인권교육활동,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경찰 정치사찰 감시활동, 전주교도소 의문사 진실규명활동 등이다.

청소년권익을 위한 활동으로서 ‘청소년인권캠프’를 99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1박2일) 김제 수류성당 교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전북지역 중고생 30명을 대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와 함께 개최하였으며(참가비 1만 2천 원), 캠프형식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인권과 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둘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첫째마당 : 나의 인권지수는? (인권의 개념)
- 둘째마당 :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인권의 역사)
인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인권의 내용)
- 셋째마당 :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권의 가치)
나는 무엇을 할수있을까? 우리는 인권지킴이!
- 넷째마당 : 우리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청소년인권선언문’ 작성

(5)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의 주체로서 바로 서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1989년 9월에 창립하였다. 그동안 열린학교, 민주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성회비 반환청소소송, 돈봉투없애기 운동, 부당 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등을 하였고,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교육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아이들이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며 본회의 뜻에 동의하는 일반인은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 후원회원, 신문구독회원이 있으며, 전국에 지부가 있다.

학부모현장제정 운동을 통하여 학부모현장 제정·선포(98. 9. 29), 학부모상담실 운영, 학부모 신문발간, 언론 모니터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상담실에서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자녀들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자녀 학대같은 문제들

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있다.

(6)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1990년 4월에 만들어진 학부모 교육문화 운동단체이다. 1990년 교육폭력 추방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한 ‘호루라기 상담전화’는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예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적과 학벌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을 심어주지 않는 교육, 다양한 능력과 소망을 펼치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의 당사자이며 주권자인 학부모들이 적극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의 장을 만들어, 교육 본연의 목표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하며, 학력에 따른 여러 차별구조를 철폐하는 운동을 벌이며, 또한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펼친다.

특히 지역학부모모임을 활성화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학부모들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작지만 실천력을 갖는 지역 학부모운동과 관심영역별 학부모모임(초등·중학교·일반계, 실업계, 예체능계), 학교별모임(초등·중학교·고등)을 조성하고, 지역학부모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부모카페를 운영한다. 자치시대에 맞는 지역학부모운동의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위해 각 지역의 연대모임을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7) 부산교대 교육자치연대

‘부산교대 교육자치연대’는 교사대상의 인권학교(1998)를 열었다.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한달동안 현직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권리유린 실태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인권교육 방법 등을 소개하는 인권학교를 개설하였다. 학교현장에서 권리교육의 한계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권교육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막막해 하는 현직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내의 청소년 인권활동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에 조인하면서, 1990년 중반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 권리에 초점 맞추어 활동한 것은 청소년헌장,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하여, 청소년인권활동을 위해 설립된 충남청소년인권센터, 중고등학생 복지회, 사이버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광주 젊은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하여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각 단체의 주요활동 내용 및 활동방법은 주로 청소년모니터, 인권교육, 연구조사, 정보사업, 인권토론회개최, 인권교육 프로그램작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정부이행 및 감시, 청소년인권선언 작성, 청소년 인권문제 의식조사, 청소년포럼, 청소년인권 캠페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홈페이지개설, 웹진, 사이버포럼, 교사들의 인권수업 등이며, 주된 활동방법은 전통적으로 집회, 팩스, 전화 등이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그동안 사회참여가 어려웠던 청소년들과 연령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최근의 변화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정부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국제기구와 각 NGO 단체들의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등의 사업과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 단체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국가나 성인들로부터 권리를 부여받는 수혜적 입장을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국내의 상황을 간단히 조망해보고자 한다. 국내 인권운동 단체활동은 80년대 중반이후 변호사와 종교계가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동안 국가 권력에 대항한 자유권 확보에서 더 나아가 IMF 이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권리와 생존권, 생활권, 사회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8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창립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인권위원회 등의 종교계 인권단체이다. 또한 최근에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국내 각 단체마다 인권만화전, 언어와 인권 심포지엄, 인권 그림전, 새천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종교계 성직자 1000여명 인권선언문(1999)’ 발표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청소년문제와 청소년권리의 신장을 위한 정부 및 각 단체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실제로 아동복지법(1981), 영유아보육법(1991), 청소년육성법(1993), 청소년기본법(1993),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 청소년헌장(1998), 교육기본법(1997), 청소년보호법(1997)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와 비정부조직 및 단체들(인권운동사랑방, 한국아동권리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립되고 시행된다.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부부처에는 보건복지부(아동관련정책 조정 및 협약이행사항)와 문화관광부(청소년관련정책)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부처 이외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아동복지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사업과 아동권리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여러 민간단체 및 기관들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내 단체의 활동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처음에는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엠네스티가 주도하여 성인, 교사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캠프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 청

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운동의 도우미로 인터넷이 큰몫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권활동 방법인 집회, 전화, 팩스를 넘어서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율참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누구나 Cyber 공간에서는 나이, 학력, 성, 지역에 대한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이버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고 연결해내면서 “청소년 인권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찾기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이고 유용한 수단이다.

셋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모임’, 서울에서 결성된 청소년인권 동아리 ‘타래’, 인터넷과 통신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청소년의회’, ‘중고등학생복지회’ 등과 같은 청소년주체의 인권모임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청소년의 권리를 찾는 모임들이다. 이 모임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알리고 청소년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길을 만드는 한편 시행여부를 감독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6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재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대·이대신입생들과 직장인, 참여민주사회연대와 진보정치연합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시도가 되풀이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가 부족했던 이유가 크다. 오히려 사이버 의회나 웹진 야자와 같은 청소년 주체의 활동은 이러한 수차례의 헌법소원보다 더 큰 반향을 가져올 수 있었다. 헌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가면서, 하나의 문화적 주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볼 수 있다.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지원 미흡,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주체의 활동단체의 어려움으로는 자원, 활동시간, 정보나 정보분석, 장소, 학교의 부정적 인식, 다른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부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위의 시선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불온문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에 관한 한 우리교육 현장을 불모지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로써, 아동권리협약을 수업교재로 삼았다가 그것을 불온문서로 취급한 교감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들은 교사가 있었다. 유엔이 각 나라 교과과정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반영하라고 촉구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인권교육 실정은 이러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도덕교과연구회 등 평교사모임과 인권단체들은 최근 부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길잡이’도 인권교육의 불모지에 싹을 틔우는 작업이다. 법과 제도, 정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공무원과 국민의 인권수준이 함께 따르지 못하면 인권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 소리를 듣기 시작했으나 국민의 체감인권은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박탈당해도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교복을 입을 것인지, 머리를 기를 것인지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학교현장에서는 불시에 행하는 소지품검사, 강제로 운영되는 보충수업, 반장선거 및 학생회장 선거에 성적제한 규정, 사랑의 메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정당화된 체벌 등 우리 주위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교육적이라는 허울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명백한 청소년의 인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인, 학부모, 교사들은 물론 청소년 당사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나 사회에서의 인권교육과 훈련제도가 미비하다. 학교교육에서는 국민의 권리보다 사회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

당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고교의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교과내용도 사회와 법 질서를 설명하는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며, 인권교육 방법에도 문제점이 많다. 인권침해의 결과로 억압된 에너지는 불신과 적개심으로 반목하게 하고 이는 학교문화의 황폐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 배움과 삶의 분리, 건강한 시민형성의 실패 등 부정적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하여, 각 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적 문화의 맥락을 고려한 청소년 인권사업의 지표설정과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인권의 사회적인 인식확산을 위해 인권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의 해결방안 모색과 조직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검경청, 언론사 등의 공동연계성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인권정신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 인권보호에 기성세대가 앞장서야 하며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인권의식 발달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정규 교과과정 속에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인권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안정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인력보장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사와 부모의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

인권을 억압하는 우리사회의 구조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군정, 군사독재 등의 불행한 역사적 유산과 남북한의 적대관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인권보장, 민주주의 발전, 평화의 유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명제임을 재인식할 수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보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권력 구조와 법질서의 이념을 갖추는 것

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개별적인 영역의 인권문제에 대처해 나아감과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최근에 91년에 조인한 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국내의 국제기구, NGO 단체, 청소년주체의 인권모임 부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 한국의 청소년권리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청소년권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기관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발송·회수하였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차 활성화되어온 청소년권리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많은 청소년권리에 대한 담론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옴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권리를 언급해온 다양한 학문분야, 학계와 현장,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성인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일은 의미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청소년 권익증진 노력을 위한 필요성 논의, 방향 탐색, 실천과제 모색 등이 다양한 영역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학계의 청소년권리 관련 전문가 14명, 청소년 권리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27명(청소년 4명 포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표를 발송하

였다. 학계 전문가는 그동안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온 다양한 분야의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전문가는 일반인권단체와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 모두를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조사표 응답지는 14개로(학계전문가 7개, 현장전문가 7개(청소년 4개 포함))로, 회수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 현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일반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현장전문가의 경우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 어려움을 알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듯이 아직까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보내옴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체적인 권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4곳에 발송하여 4곳 100% 회수).

조사표의 내용은 크게 권리에 대한 일반인식, 권리 유형별 인식, 권리 확대 방안과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전문가용 의견조사표에는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평가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을 첨부하였다.

문항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없지않아 있었으나, 이는 조사 자체가 개별적 실태와 의견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다양한 청소년권리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응답자들이 질문 문항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청소년권리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다. 특정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분석은 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앞으로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분야로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라 생각된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크게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을 별도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하며,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 원문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제시하였다.

1)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일반 인식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일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권리의 개념,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청소년권리수준과 그 원인, 우리 사회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의견조사표 문항 1~3번, 8, 9번)

(1) 청소년권리의 개념과 의의 및 필요성

① 학계전문가

[학계 B] 아동·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하는 수혜자이기 보다는 독립적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이익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학계 C] 청소년을 단순히 미성숙하고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성장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건설해 가는 자율적 권리를 갖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탄생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율적 능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학계 D] 발달 단계로 볼 때 자기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청소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의 제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스스로의 삶의 향상뿐 아니라 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한다.

[학계 E]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 귀기울여질 때 청소년도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것은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학계 G] 자율은 자유의 개념의 바탕이 되며 권리는 법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청소년은 성인과 다름없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을 누려야 할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청소년들의 이익에 합당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코 시혜가 아닌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원이며, 마땅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당장 권리행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권리행사능력은 권리를 행사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성숙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의 자율성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성숙되어 있는지, 혹은 청소년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또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율성 또한 권리행사능력과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제공할 때만 자율성은 비로소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이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며 권리가 침해됐을 때 외면하거나 묵종하지 않고 이를 정정당당하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이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은 어려서부터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즉 권리를 존중받는 문화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만이 몸속 깊이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을 익히며 성장할 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자세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 B]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의 개념을 정의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들 삶의 주체자로서 보느냐 하는 관점이 개념을 정의하는데 가장 어려운 주제일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의 우려를 접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분명히 그들의 삶의 주체자이다. 때문에 인류가 수많은 시간동안 만들어왔던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 두 대로 더위와 싸우는 자신들의 모습과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교무실의 에어컨을 비교하며 불만을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라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은 시원하게 지내고 아이들은 아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은 덥게 지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 “권리를 누려본 사람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안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평등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자율과 권리를 가르쳐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을 21세기 국가발전의 명확한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자율과 권리를 느껴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성장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 현재의 청소년기에는 미래의 정치가와 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과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 청소년기라고 보았을 때, 권리를 행하여 본 적도, 또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청소년이 늘어만 간다면 결국 자율과 권리 부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 성급히 훌륭한 지도자를 원한다. 한국축구의 앞날을 걱정하며, 유소년 축구교실을 통한 꿈나무들을 키우듯이 운동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모든 영역의 우수 인력 역시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과 미래의 청소년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이고, 청소년기에 행하는 자율과 권리가 성인들이 행하는 정치적인 자율과 권리로 성장하여 만약 기초공사(청소년기에 자율과 권리를 탄탄히 보장받았는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부정부패로 무너지지 않는 민주사회라는 건물이 될 것이다.

[청소년 B] 청소년은 하나의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서, 말 할 자유, 신체의 자유, 사고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자신이 부당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부당함이 인정될 때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다시는 같은 류의 부당함을 받지 않도록)을 받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이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물론 '악'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때, 청소년은 더 이상 하나의 특별한 계층으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욱 살기 좋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더 이상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청소년이 매체에 이슈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소년은 특수 계층이 아닌 모두와 같은 기본권을 가진 인격체이다.

[청소년 C] 청소년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같거나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은 주체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수준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경제생활수준보다 미달되어 있다.

[학계 B]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가 충족되고 있는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 (국제협약 제 24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가령 보건부문에 대한 권리수준은 지역별 (농촌지역의 아동들의 영양섭취량이 도시 국민학교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계층별로 격차가 심하다. 또한 과열학습에 따른 아동의 신체건강문제 (예 : 척추측만증, 안경착용율, 중고등학생의 영양섭취의 불균형 등)도 심각하다.

환경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아동의 교통사고의 80%)는 아동·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입시제도가 청소년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제도의 획일화, 교육의 남녀차별 현상, 열악한 교육여건, 과대학급과 과밀학급, 학교 교육과정의 변칙운영, 학생의 일반권리에 대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가장 심각하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극한 상황에서 아동이 유기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유기되면 100% 책임진다. 대체보호에 있어서도 시설의 지원방식이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있어 상처받은 아동들을 위한 치유적 환경이 되기 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육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자주 교체되어 아동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조항이 3개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원래는 선도·교정에 치중해야 할 소년범 처리가 아직도 형벌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같은 제도는 아동방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학계 C] 아직 미약하다.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아 올바른 성인이 되어가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학계 D] 열악하다. 연령으로 볼 때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 E]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끼리나 사용하는 말이지 이것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말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학계 F] 자율인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학계 G] 법적인 보호는 상당수준이나 실제(준수 여부)는 낮은 수준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인식이 매우 낮으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전반적인 법과 정책, 사회문화 모두가 청소년의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위치짓고 있다.

[현장 B]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현장 C] 우리나라 청소년 권리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성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강조되어야만 하는 지도와 교화의 대상이다. 한가지 추가된 것은 상품의 최대 소비자이다(청소년들은 계속해서 감수성을 자극 받으며, 소비를 강요당한다).

반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및 문화의 발전에 의해 일정정도의 소비능력 및 시간적 여유와 함께 자의식의 확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권리의식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대중문화 안에 내포된 각종의 코드는 잘 포장된 상품으로 전락하였고, 이 속에서 발아된 자의식은 잘 포장된 문화상품을 강매 당할 의무만 지니고 있는 불쌍한 자의식이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권리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어있지 못하며, 청소년들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 내지는 무언가를 잘 모르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과 결정권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권리는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힘쓰는 지도자를 찾아 보기도 역시 힘들다.

[청소년 B] 얼마전 한 설문조사에서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아쉽게도 만 18세 선거권의 필요성에 긍정을 표한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초등 6년, 중고등 6년, 이렇게 12년간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목표아래 너무 타율적으로 생활해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한 발상 또는 무관심을 말했다. 얼마전 청소년 관계 일을 하시는 분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뭘 가져다 줘도 어떻게 쓸 줄 몰라 다시 가져온다.' 아찔한 말씀이었다. 또한 성인의 분류에 포함되는 13~18세 이후의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청소년이길 거부한다. 이런 여러 점에서 아직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다.

[청소년 C]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D] 매우 답답한 수준이며 98년의 청소년 인권 현장 만들기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3) 청소년 권리수준이 열악한 원인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유교적 생활풍습(장유유서)의 그릇된 정착, 부모와 학교에서의 지나친 기대수준과 과도한 학습과제, 청소년의 민주적 생활방식 학습 체험부족 등

[학계 B] 성인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인이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성인의 생각이 항상 아동·청소년의 생각보다 바람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동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묻지도 고려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학계 C] 어른들의 시각이 문제이다. 어른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문제이다. 이런 시각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입시제도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권리의 신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군사주의적 잔재로 인해 청소년들을 항상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도 문제이다.

[학계 D] 청소년이라는 발달 단계를 과도기나 점이기로만 보는 생각과 정책의 경향에 원인이 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니 그나마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지만 청소년은 다르다. 청소년기를 대입, 취업을 위한 준비기로만 보는 경향 또한 문제로서 청소년들에게 온전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부족하다.

[학계 E]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인권(사람의 가치)에 대한 가치 인식 미흡, 유교사상

[학계 G]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국가, 선생님, 부모에 대한 일방적 순종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교육의 부재야말로 권리의 침해와 이의 확대재생산을 양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장 B] 물론 확일적 교육이다.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며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다. 그리고 또하나 있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의 발언권이다. 아무런 힘없는 학생회장 선거에 학생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며,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학생회장을 간접선거로 “그냥 너 해!!” 하며 뽑는 학교도 많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교육의 장이 될 학급회의는 자율학습이나 시간 때우기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게 청소년에게도 기본적인 3심의 원칙도 없이 소명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하겠는가? 당사자가 빠진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다. 어서 빨리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 C] 가부장적 체제와 의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부모, 성인, 연장자 등과 자녀, 비성인(아동 및 청소년), 연소자 등의 대립되는 개념은 절대적 권위와 일방적 복종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가부장적 체제와 의식은 한국적 자본제 사회구조와 결합되어, 개인의 성공이 최대의 미덕이 되었다. 이러한 미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물질주의의 이기적 세계관을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은 물론, 개인의 권리조차도 자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여기에는 한국의 정치적 비민주성을 결합하면? 답은 신문을 보면 된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일반 국민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청소년권리가 증대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 즉, 사회 여론화 작업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이를 뒷받침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줄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언론 측의 관심, 정치권의 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나 일선 청소년단체들은 단체 운영하기도 빠듯한 실정에 새로운 의식을 갖을 여력조차 없다.

청소년권리라는 말 자체가 학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반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론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그럴싸한 중앙 행정기구가 없다보니 청소년관련 사고소식이 아닌 바에야 언론을 통한 여론화가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일반 국민이, 어느 기자가, 어느 정치인이 청소년권리를 구태여 생각해 보겠는가? 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 밖에 없다. 학계에서만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도 다른 계층에서 호응이 없다면 안타까운 탁상공론이 될 뿐이다.

[청소년 B]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했지만... 청소년 권리 수준이 열악한 것은 12년의 공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에 목표를 두고 인성 교육 등은 등한시하고 불합리한 커리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이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C]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나 약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 같다.

[청소년 D] 한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대상화하며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적 존재' 이외에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그들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소외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4) 우리사회와 정부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 정도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정치적(당리적) 목적의 구호성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예컨대 두발, 복장 자율화, 교육내용 선택의 확대 등).

[학계 B]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 학교와 전체 사회가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노력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사회의식의 변화 : 우리 청소년은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거나, 스스로 주장하게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계 C] 말뿐인 것 같다. 그들을 주체로 인정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계 D] 생각해 볼 문제들 : 청소년개발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어떠한가? 개발원의 연구가 얼마나 정책화되는가? 대학의 청소년학과의 설립취지는 청소년을 부각하는 소비자 집단으로 보지 않는가? 청소년에 대한 기본 시각은 비행 청소년에 있지 않은가?

[학계 E] 이제 시작 단계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왜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 바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학계 F]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학계 G] 낮은 수준이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최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제도와 법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홍보와 교육, 이행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장 B] 현 정부에 들어와서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2차)과 새로운 청소년 현장이 만들어지고 청소년참여증진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권리에 대한 현정부의 관심과 개선 노력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선언’이 청소년과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다가 반발에 부딪쳐 유보된 것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형식적인 면이 보여지는 단면일 것이다. 청소년권리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

이나 청소년 현장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책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정책이 말이 되는가? 청소년현장의 경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현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현 정부의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소년정책을 기대해 본다.

[현장 C] 소수 청소년의 자발적 운동과 일부 인권단체의 부문운동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부장적 의식과 입신양명을 최고의 미덕인 사회 일반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 - 지금까지의 개혁을 통해 확보한 방과 후 시간,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디에 가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학원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우선 현 정부에는 청소년전문가가 거의 없다. 청소년관련 업무가 청소년을 위한 일인지 업무를 하는 성인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청소년관련 주제가 부각되어 본 적도 없고, 정부 정책에서도 청소년관련 정책 발표는 전혀 언론과 국민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분야 인사가 개혁적 성격이 아닌 비전문가이자 무사안일주의적인 인물로 기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B] 관심은 많다 본다. 청소년 문제가 이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이슈화를 이용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개선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

[청소년 C] 우리사회나 정부 차원에서 개선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 D] 가시적 접근이다.

(5) 우리사회와 정부의 청소년권리 증진 노력의 문제점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정부주도적인 정책을 탈피하고, 순수민간기구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

[학계 C]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에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로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다.

[학계 D] 부처를 초월하여 청소년권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청소년위원회의 강화. 가정, 지역, 학교, 직장 등의 문제를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주고 상담하는 ombuds퍼즌제 도입(신나는 학교 만들기 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지원, 확대 방안이 적함)

[학계 E] 아동·청소년은 뒷전이고 청소년들이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된다

는 생각이 팽배하여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계 F] 겨우 정치적 선전 효과 정도에 그치는 전시효과성 정책이 주류입니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시설과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없으려는 청소년의 권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학계 G] 주관부서의 활동이 불명확하며,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하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하기 힘들다. 우선적으로는 청소년과 인권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도 권리의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교육정책, 복지정책, 소년사법제도, 문화정책 등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장 B]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이 분명하지 못하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수행평가에 대해 청소년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대학과 연관되어지는 수행평가는 청소년들의 삶의 전반이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의 활동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으로 시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폭넓은 정책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도할 청소년기관의 설립이 아쉽다.

[현장 C] 학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그러나 학교 행정을 비롯하여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정 및 행정에 부분적이거나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권리신장은 물론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는 것과 전문가 부족이 가장 큰 단점이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선거 때만 끼워넣기식으로 반짝하는 선심성 공약들은 효력이 없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지도사 제도를 변경하는데 청소년지도를 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담당자가 되고, 청소년지도자가 될 대학생이나 지도를 받는 청소년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탁상공론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청소년분야는 시대흐름에 뒤쳐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다루는 시대에 60-70년대 서당 훈장식의 지도방식으로는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지도 당하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관련 정책입안자의 세대교체가 와야 한다. 보리고개 세대가 현재의 청소년 세대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과감하게 청소년행정에 젊은 청소년전문가를 기용하고, 이들이 수련원장이 되고, 정책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대, 30대 국회의원도 나오는 세상에 청소년분야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소년 B] 현재로선 좋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곧 사회와 정부도 입장을 달리해 질적으로 높은 방향으로 전환 하리라 믿는다.

[청소년 C] 청소년을 어린 존재로만 치부하던 구시대적 관점은 사라져 가고 있다. 국제적 흐름도 그러하다. 하지만, 아직도 왜 정부는 청소년을 ‘어린존재’로 여기며, 어르고 달래는 정책을 하려 하는가?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화를 만드는 존재이며,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존재이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른 정책의 방향일 것이다.

2) 청소년의 권리유형별 인식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청소년의 권리의 유형을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주요 장별로(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하위집단별로(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여자청소년, 농촌청소년 등) 특별히 착안해야 할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그 외 세부사항으로 청소년의 자립시기에 제기되는 몇 가지 권리와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의견조사표 문항 4~7번).

(1) 유형별 청소년권리에 대한 의견

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권리부분

① 학계전문가

[학계 B]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종교적 생각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만명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 얼마나 경시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타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물론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도 경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의 3대 원인이 자살이고, 전체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에 아동들의 여가, 오락 활동과 문화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을 위한 음악회, 연주회, 연극, 인형극, 오페라 등의 공연예술이 매우 부족하고,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중요시하여 연극, 특별활동이나 클럽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 지도전담교사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아동·청소년 도서 중에는 학습참고서와 만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시와 관계없는 독서에 몰두할 시간도 없다. 학교나 지역사회에 도서관 수도 극히 적고 도서의 배치상황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장소와 건전한 놀이감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최근까지 성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청소년 시기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습하게 하는 상황은 집단적인 고문과 같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성폭력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야간자율학습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입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을 건전한 놀이와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신체와 소지품에 대한 수색과 압수, 사회적 상규에 맞지 않는 교육목적의 체벌, 두발과 복장에 대한 강제적 규제 등은 학생의 헌법적 기본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명칭하고 청소년·아동끼리 가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아동방임이라고 볼 수 있다. 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와 함께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도, 가정살임을 청소년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그의 양육과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경제적·인적·정서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너무 쉽게 우리나라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

다. 가정보호 우선주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친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호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일단 아동이 버려지면 국가에서 100%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아동유기를 조장하는 제도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국가가 보호하게 되는 아동은 국내입양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대안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쉽게 해외입양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서 “국제입양은...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이라는 사항과는 모순된다.

[학계 C]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의 욕구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과열 입시교육으로 뒤틀린 학습을 받고 있고,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적 복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런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모의 배려나 보살핌 결여로 마땅히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는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에 대한 위해나 학대(특히 체벌)가 어른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신체적 처벌은 삼가해야 되고 가능한 도덕적 설득이나 이해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처벌은 처벌당사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부당할 경우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변론의 권리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계 D]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학교 부적응 등의 교육문제에서 상당부분 비롯된다고 볼 때,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와 시민적 권리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와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기본적 조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은 다른 권리의 보장에 근거가 될 것이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생명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조건을 확보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강권(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나 각종안전사고, 대형사고의 위험성 극복(이른바 '위험사회' 극복),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분단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 부의 양극화현상 극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학교선택권 포함)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공간과 물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얽매어 문화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진정한 향유의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 권리는 또한 청소년의 존엄성과 유엔의 원칙(평화와 자유 증진)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고 그러한 학교규율 속에서 학습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시위주의 교육과 통제중심의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목표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과거 성인에게만 인정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1989년 채택된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보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결성, 매체 제작 등이 학교나 정부당국의 검열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마땅하다.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양육과 보호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청소년에게는 대체가정을,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양육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빈곤가정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나 방임과 유기 등에 대한 제도적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 신체의 자유는 자의적인 구금이나 체포, 반인도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사법절차 과정에 놓인 청소년이 법적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가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공간은 학교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체벌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학교징계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내 행정절차에서도 사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절차 또한 청소년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

다. 형사절차가 아닌 보호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년교도소나 소년원 등 소년구급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반인도적 처벌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C]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청소년은 생명과 생존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권리의 행사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 및 제도 등에 대한 반대·개선 운동 혹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학교 및 생활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가 보호되고 행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학습과 문화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의미는 ‘억압’이며, 내일의 성공(?)을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학습이란,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즉, 지식의 습기로 대체 가능한 학습이라면 청소년들에게는 그러한 학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들의 ‘선배로서의 적절한 도움’과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의한 선택’이 조화롭게 결합한 성장과정으로서의 학습권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습권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식·주의 총체적 모습으로서 삶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문화 - 의식주의 문제가 일정정도 해결되어 약간의 부로 인하여 지탱 가능한 문화, 기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문화란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소년들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문화 그 자체를 인정할 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문화 향유의 권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의 행사는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려서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의 대중매체의 발달은 이러한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이 과거와 같은 지근 거리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통로는 성인들의 인식경로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이면 직접적이지 부족하지 않다. 물론, 음모적 뉴스의 접촉유무를 따진다면 한말이 없지만, 청소년들은 세상을 빠르게 알아가고 있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익혀나가고 있는 중이다. 사회는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소년의 능력들이 올바른 양식으로 구현되도록 적절한 권리행사 훈련을 제공해야만 한다.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청소년들의 세계인식이 과거와는 달리 크게 향상되고 또 그러한 권리행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가능한 한 많은 보호가 필요하며, 여기서의 보호는 제한과 제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인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상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 정확한 용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법정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10대답게(?) 사고를 치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 보면 일단 주눅부터 들기 시작한다(왜 그런지 가보면 안다). 문제를 교화하는 최고의 방법론은? 학교 교사의 손에는 다양한 크기의 막대기가 들려 있고, 심하면 각종의 애칭이 붙어 있다(답변은 충분한 것 같다).

나.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권리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계 B] 모든아동의 경우 시민적 권리와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가 열악하며, 요보호아동의 경우는 양육과 보호받을 권리도 매우 열악하다.

[학계 C] 올바른 학습을 받을 권리와 문화향유권

[학계 D] 시민적 권리와 자유(적용 차원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함)

[학계 E]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학계 F]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학계 G]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다섯 부문 모두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은 신체의 자유 침해일 것이다.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이 가장 큰 청소년 인권침해의 양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 체벌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장 B] 학습 문화에 관한 권리

[현장 C] 솔직히 오십보 백보라고 생각한다. 최근 청소년 자체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가 아무리 과보호를 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공염불? 또 하나 더 있다. 청소년도 인간이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권자이다. 그러나 아무도 청소년을 시민권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듯 하다.

③ 청소년

- [청소년 A]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청소년 B]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 C]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청소년 D] 시민적 권리와 자유

다. 청소년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권리

① 학계전문가

- [학계 A]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계 B]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계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계 D]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계 E]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학계 F]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학계 G]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일 것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기회가 확장(선거권 획득 등)되고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 청소년 인권문제도 그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청소년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 되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성취했을 때만 올바른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장 B]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현장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청소년

- [청소년 A]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 B]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 D] 시민적 권리와 자유

라.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권리 (우선순위)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학계 B] 모든아동의 경우 시민적 권리와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가 가장 시급하며, 요보호아동의 경우는 양육과 보호받을 권리가 시급하다.

[학계 C]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신체의 자유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계 D] 시민권 - 학습문화권 -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계 E]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신체의 자유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계 F]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학계 G] 신체의 자유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시민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

[현장 B] 학습 문화에 관한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신체의 자유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현장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청소년

[청소년 A] 시민적 권리와 자유

[청소년 B]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신체의 자유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 C]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청소년 D] 시민적 권리와 자유

마. 그 외의 청소년권리 유형 제언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평등권

[학계 D] 권리 영역은 진학자 뿐 아니라 2/3이 넘는 고졸 최종 학력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노동권 등의 별도 권리와 위 유형에 속하나 다른 필요성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는 가급적 위 유형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계 E] 각 수준의 의사결과정에 청소년참여

[학계 G] 사생활의 권리 (의복, 몸단장 등)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도 모든 청소년의 권리를 포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분보다는 일반적인 인권유형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좀더 타당할 듯 싶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대별된다. 이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도 위의 두 가지 유형의 권리가 성인과 다름없이 마찬가지로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좀더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첨가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전쟁 상황, 난민의 지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현장 C] 청소년노동권

③ 청소년

[청소년 C] 청소년에게 기본적 성인의 권리는 주어져야한다. 거기에 덧붙여 배워가는 존재, 자기 완성을 위해 준비하는 존재로서의 권리가 필요!

(2) 청소년의 생활영역별(가정·학교·사회), 하위집단별(학생·근로·장애·여자·농촌청소년 등) 권리 중 시급한 사항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특수한 필요(special needs)를 요하는 청소년 모두 (이들에게도 동등한 인권이 있기 때문)

[학계 B] 학생청소년에는 거의 모두가 포함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장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입시제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계 C] 학생청소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다수가 초중등학교에 취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 D] 학교, 시간의 비중, 체험의 영향력의 비중. 그러나 학교를 중심에 두어도 학교 부적응 학생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학계 E] 학교.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학계 F] 학생청소년입니다. 물론 근로청소년과 장애청소년, 여자청소년, 농촌청소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집단들은 소외집단 범주에서 그동안 작지만 여러 형태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청소년은 청소년의 주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잘 알다시피 한국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적 상황은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학생청소년의 상황이 악화되어 앞의 소외집단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근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직접 다가가야 합니다.

[학계 G] 장애청소년(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음) - 농촌청소년과 근로 청소년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 특히 유흥업소나 주유소 등지에서 노동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생계비와 학비를 함께 벌어야 하는 소년소녀가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장 B] 학생청소년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청소년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청소년 폭력, 청소년들의 자살, 집단 따돌림 등등 청소년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저기서 큰일 났다고 소란을 떠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아왔다. 하지만 이 모든 청소년문제의 근원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의 자율과 권리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시도되는 이야기들에 환영을 표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 청소년 위주의 소수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정책에서 대부분의 건강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도되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는 일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청소년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장 C] 근로청소년분야. 근로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적법성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노동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 모두가 잠재적 근로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일반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수많은 청소년집단 중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학생청소년이다. 학교에서 이들은 학생회의 자치 운영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사로부터 그밖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되어 보지 못한 청소년은 거의 없다. 흔히 학생청소년으로 생각하는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은

그저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하는 기계와 같다. 특히 중고등학교에도 학생회장 직선제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나 이를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으며, 학부母的 참여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들에게 권리나 권익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일 뿐이다.

[청소년 B]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학생·청소년이겠다. 그리고 대학 청소년, 만 24세 미만의 기타 청소년에 대한 ‘청년 = 후기 청소년’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왜? 물론 여러 청소년 집단 모두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대다수의 청소년이 학생이지 않느냐?

[청소년 C]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 사회제도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으며, 학교나 교육제도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D]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 문제라는 것이 한 부분만의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관심분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청소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란 곳이 청소년을 가장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묶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말도 안되지만) 많은 편이다. 그에 비해, 특히 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 노동권의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을 단순한 소비의 주체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그들의 생산력과, 그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

(3) 생활영역별·하위집단별 청소년권리 확대를 위한 제언

① 학제전문가

[학제 A] 참여권 보장, 동등한 대우(청소년간, 성인-청소년간), 부당한 간섭 배제(특히 보호 명목의 간섭 배제)

[학제 B]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중단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의 환경이 보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청소년에는 근로, 장애, 여자, 농촌청소년이 모두 포함된다. 학교내에서 일반학생 뿐 아니라 보다 더 특수한 문제를 갖고 있거나 소외·차별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변해 주고 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차원(정서적 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문제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교제도의 변화 등)에서 노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직접 입시와 관련된 교과내용을 학습하는 교사일 경우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도 힘들고, 학생

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 C] 학생청소년들은 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에 진정한 학습권을 누리게 해야 한다. 근로청소년들은 학습권과 생존권 그리고 문화향유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정상적 아동보다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열악한 위치에 있기에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차별이 더 심하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발전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농촌청소년들은 도시화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기에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존재에 대한 복지적 배려가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나 미약한 실정에 있다.

[학계 D] 1. 실업고 학생들의 학습권·문화권·노동권 2. 장애청소년들의 학습권·문화권·노동권 3. 문화소외 지역 학생들의 문화권 4. 학교생활에서의 시민권 등이 필요하다.

[학계 F] 학생청소년 - 무엇보다도 교육의 개선이 있어야 겠지요. 그러므로 학교교육 정책을 청소년 문제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내의 청소년 인권 상황을 긴급 점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학계 G] 학생청소년 :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근로청소년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안전시설 등), 장애청소년과 농촌청소년 :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여자청소년 : 안전, 시민적 권리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가정 : 학대나 성적 착취, 방임, 빈곤문제, 학교 : 일상적 차별, 언어폭력, 비합리적 생활규정, 자치활동 억압, 검열, 사회 : 노동청소년들의 노동환경 문제, 청소년 문화공간의 부족 등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교와 학교 밖 동아리의 활성화이다. 한 예로 송파구의 구정평가단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술과 정치, 경제, 과학 등 분야별로 일선 학교나 청소년회관에서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 청소년들의 의식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별 청소년대표위원회 제도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 B] 우선 학교에서의 자유롭게 말 할 권리. 주위들은 우스운 하지만

비참한 얘기가 ‘교칙이 헌법을 넘어 선다.’이다. 넘 슬프다. 자기의 부당함을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바로 말 할 수 있는 기본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C] 청소년은 주체다.

(4) 취업, 군입대, 결혼,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자립시기에 제기되는 청소년권리를 위한 노력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스스로의 자율능력 함양

[학계 C] 군입대로 인해 정상적인 청소년의 발달(지적 정신적 문화적 발달 등)을 가로 막고 있다. 획일적 군사문화와 너무 긴 군복무기간 때문에 정상적 발달을 가로막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취업을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과 가치실현이 가능해야 함에도 청소년의 직업적 권리로서 취업권이 박탈되고 있다면 미래의 주인이 될 그들의 장래는 매우 어둡기에 직업구조의 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계 D] 1. 각종 법에 따라 성인으로 규정되는 나이와 생활의 불일치의 해소 2. 취업과 진학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체험을 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3. 정치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정에서의 정치교육

[학계 F] 취업과 진로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이라는 틀에 묶여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이 대학까지 졸업한 후 우왕좌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계 G] 군에서의 민주주의 원칙 준수(최소한 체벌의 금지 등), 선거연령 낮추기(18세로), 취업에서의 연령제한 철폐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취업에 앞서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먼저 교육해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양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노동의 내용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정치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연령의 하향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내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청소년전문 행정기

구의 설립과 청소년, 학계, 정책 입안자, 대학생, 현장 지도자 등 각 계층별 협의체를 통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관련 의견들을 종합하여 홍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 청소년관련학과에 청소년인권 전공과목 설치를 권장하고, 일선 지도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근로, 장애, 불우 등 다양한 부류의 청소년 대표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 B] 취업에서의 학력별 지나친 차별을 없애는 것. 막대한 국가적 낭비인 우수 인력 착취 군제도의 개편. 만 18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 설립, 정계 진출.... 하지만 만 20세 넘어야 할 수 있는 선거...

(5) 선거권 부여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19세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 정치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학계 C]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이 정도 나이이면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정치발전이 잘않되는 것은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지 않는 데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발전을 위해 민주적 성인이 될 수 있는 투표권 행사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계 D] 고 3이라는 학생 신분과 갈등이 없다면 18세가 적합하다.

[학계 F] 당연히 18세로 낮아져야 합니다. 유엔에서도 17세까지만을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는 성인(adult)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숙과 미성숙의 관점에서 아동기로 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18세부터는 이제 성인기에 들어가며 자율적 인권을 향유해야 합니다.

[학계 G] 18세 (참여의 기회는 정치적 관심을 갖게 하며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 된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청소년이 더 잘 접근되어 있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선거연령은 그 사회의 정치적·교육적·문화적 수준을 고려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만 18세면 대학생이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연령을 무조건 높게 책정해둘 것이 아니라, 선거연령을 낮추더라도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현장 B] 우선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주제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될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행평가다 특기적성교육이다 해서 꼭꼭 묶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는 어른들만의 말 많은 이야기로 끝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18세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연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율과 권리에 대한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모스키토’라는 뮤지컬이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것을 본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청소년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의에 앞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는 의미에 대해 교육 받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어른들만의 말 많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현장 C]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무의 부여와 권리의 행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선거권의 제한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반영한 것일 뿐 어떠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고정된 기준은 아니다. 18세로의 하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며,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참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능력은 나이와는 별반 무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청소년의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수준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놀랍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를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성의 무능하고 음모적인 정치의식보다는 더욱 건강한 정치의식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거 등을 통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민주적 시민 의식과 정치의식의 그리고 공동체적의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어떠한 지식의 전달보다도 뛰어난 사회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세계적인 추세라서가 아니라 19세는 상당수의 고졸자 내지는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어 20세와 별반 차이가 없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낮출 경우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 당국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이다.

이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선거권을 갖고 있으므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올바른 참여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민주정치교육이 실시될 것이고, 선심성의 우려도 있으나 각 정당들은 청소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선거권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울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청소년문화공간의 확충이 예상된다. 또한 각 학교별 학생자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 B] 18세 하향에 동의한다. 18세와 19세의 차이는 슬로건과 타협이라 할까? 16세 하향 조정이나 18세 하향 조정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는 낮추자는 것이지 16, 18은 그리 중요한 수가 아니다. 단지 영화 등급만 보더라도 연소자 관람 불가 등급이 만 18세와 같은 우리 사회 곳곳의 사례가 만 18세에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만 19세는 현행 20세와 새로운 슬로건인 18세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청소년 C]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가질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청소년 D] 1. 선거권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2. 18세 논의가 옳다. 내 생각에는 더 낮춰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선거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먼저, 당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여기서는 20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구성원이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대로 굴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청소년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의무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등에서 그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20세 이상의 성인들만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필요하다. 선거권은 청소년에게 당위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권리이다. 선거권이 있으므로 그들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이는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장기적 수단이다. 이 선거권으로 청소년 인권문제나 권익등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은 선거권을 갖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선거권 논쟁에서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웃지 못할 모습이 있지만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성인도 자질을 말하기엔 역부족인 사람이 태반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회에 관심이 있으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육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 먼저 선거권을 준 후 그에 필요한 것은 차차 스스로,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배워가야 한다. 선거에 대한 교육은 평생 될 것이다.

3) 청소년 권익증진 방안과 과제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제도, 인권교육활성화 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청소년인권센터 및 청소년권리 분야 연구활동에 대한 제언, 그리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청소년 권리 확대를 위한 제언과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의견조사표 문항 10 ~ 16번).

(1)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① 학계전문가

[학계 C]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청소년헌장’ 개정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청소년 자율활동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청소년발언대’를 마련하여 그들의 의식성장과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학계 D] 1. 교육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의 연계망·기구 설립과 입체적 협조 2. 임의적·선심적·주관적 적용이 아니라 유엔조약 등 정책과 입법의 근거 활용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점검·보완해야 한다.

[학계 E] 청소년자율활동과 권익증진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넣어야 함)

[학계 F]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는 반드시 청소년 대표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정책들은 법률과 제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정책관료들과 정치가들의 선심성·인기성 정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학계 G] 청소년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백서가 필요하다(조직, 정책내용 등). 지금까지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노력은 다소 산만하게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약이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시켜 조약이행을 위한 국내계획이 전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B]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에는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 활성화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지만 수행평가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이외의 활동을 막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청소년자율활동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몇가지 청소년자율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청소년자율활동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인정이 요구된다. 수행평가에 큰 점수를 반영해 준다던가 아니면 대학입시에서 인정해 준다던가 하는... 물론 강제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수행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자율활동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면들은 시행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학교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현재의 시간 배우기 식의 프로그램은 정말 안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자율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중창단, 댄스 동아리, 만화 동아리 등 청소년 스스로 최선을 다해 활동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재정 지원은커녕 동아리방도 지원해 주지 않을뿐더러 활동 자체를 막는 곳도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축제인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기저기 구걸(?)을 하러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자율활동 활성화는 어렵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의 학생회는 스승의날 선물이나 준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모금하는 허수아비 학생회이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모든 학교의 직선제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하고 성적 위주의 출마 자격에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으로서의 출마 자격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회비를 학생회에서 운영해야 하고, 교무회의 등의 학교 정책과정에 학생회 임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회의 활성화는 모든 청소년자율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자유와 권리, 평등을 실제로 배우고, 지키며, 누려나가는 학생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막상 사회에 나가서 선거때 아무 생각없이 홍보지 한 장 달랑 보고 투표를 하거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놀러가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장 C] 청소년 주도의 선전 및 참여유도, 자율적 프로그램 구성(청소년의 의식 및 선택을 존중), 청소년이 가진 특정 능력에 대한 지원 및 활용(문화적 감성 및 정보통신능력의 특화), 청소년에게 유효한 언어 등 특정한 문화적 코드 활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다른 어떤 매체나 성인들의 선전보다도 또래 청소년들의 입을 통한 유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러한 활동들이 대입이나 취

업 등의 사회진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잔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인권영화제나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하는 백일장이나 그림경연대회 등 청소년권리증진과 연결된 문화사업 형태의 각종 행사 역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중요한 것은 전시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행사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들로 하여금 즐기면서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활동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학교의 클럽활동 지도교사를 청소년지도사로 배치시켜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아니면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실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현직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의식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맡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 청소년회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통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율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는 대학 자율적으로 그러한 활동실적에 따른 입학 점수를 인정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관련학과는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나 동아리활동을 해본 경험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B]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나 ‘청소년 현장’ 모두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말들어 질 때 과연 진정한 청소년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의문을 구한다.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 현장 개정시 서동욱님 혼자 청소년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청소년 문제를 논하면서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말하니 말이다... 이제는 싸고도는 보호의 정책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게하는 스스로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청소년 C] 청소년을 주제로 만드려는 시도는 보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극’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만든 청소년 단체들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만든 계획에 청소년을 집어넣으면서 그게 무슨 청소년 주체란 말인가? 자생적 청소년 모임이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권리 인식이 필요하다.

[학계 B] 전체적인 사회의식의 변화 : 우리 청소년은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거나, 스스로 주장하게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행동상의 변화와 제도적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계 C]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의 의식변화를 위해 교사의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변화에 앞서 어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계 F] 학교교육의 개선이 없으면 모든게 불가능합니다.

[학계 G] 시민의 의식변화(청소년 권리의 중요성 인식).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임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부터 체벌이나 언어폭력, 비합리적인 생활규정, 자치활동 억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목표와 학교내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현장 B]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물론 청소년지도자를 조차도 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은 청소년들의 삶의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른들이 뭔가 주는 것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인식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기존의 청소년정책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를,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권리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청소년폭력, 청소년자살, 청소년성, 청소년 왕따, 청소년 문화 등 청소년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소란을 떨고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이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아닌 그들 삶의 주체자로서 청소년들을 보고 그들의 자율과 권리에 관심을 갖는 시도가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 지금이나마 청소년들의 자율과 권리에 관심을 갖고 시도되는 작은 이야기들에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현장 C] 가부장적 의식구조 개혁, 청소년은 물론 가능한 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청소년들의 소속집단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개진활동 보장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특정 청소년 현안에 관해서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 내의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고민할 수 있고, 행정당국과 토론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 같은 형식의 자격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B] 반복해 말하듯 청소년들의 바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청소년을 믿고 지원해주는 후원자로서 성인들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일에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C] 자율적 청소년 문화가 성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교 안에만 묶여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인권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인권지킴이 양성, 인권교육 담당자 훈련·양성

[학계 B] 일단 학교내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자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충족을 위한 실천적 의무 뿐 아니라 협약에 제시된 원리와 조항들에 대해 성인과 아동을 포함하는 회원국 성원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한 곳이 몇군데나 있을까 의문시된다. 사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국제아동권리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아동·청소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계 C] 우리가 선진국 청소년들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치문화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타율적 삶에서 자율적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의 길은 자치문화 함양밖에 없을 것이다.

[학계 D] 인권교육의 내용을 교과 전반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프로젝트교육 형식의 별도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계 E]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계 F] 교육부·문화관광부·법무부 등 제 관련부처들이 공동관심을 쏟아야 한다.

[학계 G] 교육관련 법령에 반영(적법절차에 관한 내용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반영되었으나 준수가 안되고 있음. 대학의 학칙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음), 정부의 재정지원 및 홍보노력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유엔은 인권교육10년 사업의 이행을 위해 국내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부터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행계획 수립시 인권교재 개발, 인권교사 양성, 학교교육 내 인권교육 도입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B] 청소년인권센터를 통한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추체자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관련 정책 홍보, 유엔 아동·청소년권리 조약 홍보

[현장 C] 각종의 매체(방송, 언론, 컴퓨터통신 등)를 통한 시민인권교육 활성화(방송에서 인권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없다 -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이다?)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교 교육 안에 교과목으로 선정되거나 최소한 기존의 교과목 내용의 개정을 통하여 그 안에 인권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인권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지도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학문적으로 이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수련활동 특히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지도활동은 이제 한계에 왔다. 놀거리만 제공하는 지도자 양성이 아니라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양성과정이 설치되고, 무분별하게 지도사 자격증을 남발하려고 하는 변경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면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 B]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닌 지금의 동반자라는...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까지 타율적으로 길러온 것을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듯..

[청소년 C] 인권교육의 의무를 우리나라 역시 국제조약 비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교육제도(학교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권억압이나 인권유린....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4)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과제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 정비

[학계 B] 구체적으로 아동권리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규모로 조약에 대해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조약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가정·학교·사회에서 각자 조금씩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계 C] 가정은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의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소유물처럼 취급한다면 정상적 발달을 할 수 없다. 학교교사는 청소년들을 전인적 성장과 자치능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적 능

력뿐 아니라, 그 능력을 도덕적 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천적 수업이 필요하다. 지행합일의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사회는 비록 청소년들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느그러운 포용의 정신이 필요하고 따뜻하게 대우하는 수용능력을 가져야 한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로서 대응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가로막고 만다.

[학계 E] 권리교육,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리고, 특히 그 혜택을 경제적 이득으로 환산하여 필요성 알리기

[학계 F] 청소년 인권 지표와 실태의 정기적 조사와 모니터링

[학계 G] 가정·학교·사회(직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생활지침(guideline)을 만들어 배포함 (예 :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말할 기회를 준다, 월 1회 가족회의를 개최한다 등)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우선 가정, 학교, 사회 등 각 부문에서 자발적인 권리존중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약의 내용을 교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파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현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수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리지표의 개발과 이에 따라 인권상황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구체적인 개선파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생회 자치활동을 실현할 수 있게끔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에 학생대표 참석을 명시한다. 학교는 학생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를 상대로 한 청소년교육을 청소년관련기관과의 협력 하에 실시하고, 학교 운영과 청소년관련 단체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각 가정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는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여 여론화에 주력한다.

[청소년 B]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의존하는 성향을 줄일 수 있도록, 부모와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가족 구성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것이고... 학교에서는 부정한 것을 말 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특별한 계급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보통의 계급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청소년이 이주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C] UN 아동권리조약은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국제적 아동관을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아동관이

받아들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청소년 주체적인 사회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청소년권리 연구의 유의점과 활성화 과제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청소년의 발달상 특성 고려

[학계 B] 사실 좀 빗나간 이야기 같지만 개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법 그것도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분류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를 24세까지 연장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 국제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는 0-18세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려면 연령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백서에서는 연령의 분류가 10~14세, 15~19세, 20~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0~18세까지를 아동·청소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자료를 비교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성인과 다르게 아동·청소년은 보호·양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보호·양육받을 권리는 성인의 입장에서, 성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호·양육받을 권리가 아니고,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는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보다 건강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양육받을 권리를 말한다.

[학계 C] 인격적 대우와 민주적 자치능력의 신장에 대한 사항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학계 D] 가능성의 발견과 실제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특수 학문 분야가 아니라 학제간 연구가 초기부터 정착되어야 한다.

[학계 F]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의 맥락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계 G] 청소년의 책임의식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동질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이라는 신분엔 있어서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청소년 집단 내부에도 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 연구를 좀더 세분화시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장 B] 청소년인권센터 사업을 진행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청소년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청소년권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다. 청소년들을 직접 접하는 청소년지도자나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청

소년권리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나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청소년권리에 대한 영역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분야를 정착·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도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장 C] 청소년의 권리와 성인의 권리를 동일시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충분한 교육과 인도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기존의 방법과 내용 안에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 '인도'의 대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청소년권리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녹아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에는 성인의 권리와 청소년권리의 차이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가능한 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차이와 제한에 의한 차이의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청소년권리에 대한 구현방식이 교육적 대안으로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 권리의 구현은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교육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한 예로, 생명·생존권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와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의 전달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라 청소년권리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수업의 과정으로서 그 권리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생활에서 이러한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환경이나 교통문제 등)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 대안을 모색하여 실천하거나 필요할 경우 항의(반대)시위를 조직하여 실행한다면 그것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청소년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교과서적 지식 이외에 다양한 활동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연구활동은 각종 청소년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 상설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공식적인 장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그 실효성을 빨리 검증해 보아야 한다. 현실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상적인 방안 제시는 무의미하다. 가령 모의지방의회 활동 같은 것은 얼마나 실제로 실시해 보았는지 의문이 간다. 만들어 놓은 방안은 최대한 활용해 보고 반드시 그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청소년 B] 청소년시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자아는 아직 미성숙한 경우가 많은, 하지만 발전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빈번히 이슈화 시킴으로서 마치 특별한 계급인 양 취급한다면 청소년은 자폐적 보호 본능을 발휘할 지 모른다. 이런 점에 유념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C] 청소년은 그 청소년 개인의 미래와 꿈을 이루어 가고, 행복을 만들어갈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 가능성은 그들의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한다.

(6)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따른 청소년권익증진 과제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청소년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보장

[학계 B]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한 상태에서 무슨 문제든지 풀어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요보호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중심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청소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로 모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관련 위원회에 관련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계 C] 청소년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학계 F] 청소년 인권의 개념화

[학계 G] 청소년 권리에 대한 홍보

② 현장전문가

[현장 A]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기능을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법이 제정되면 사회 각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교육부장관과의 협의하에 학교내에 인권교육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내 인권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분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과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일이 인권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될 터인데, 이때 국제조약의 이행을 감시·권고하는 일도 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따라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국내 이행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청소년분야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장 C] 청소년의 정치·경제적 지위문제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선거권 문제를 비롯하여 최소한 청소년 자신들과 관련된 제도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가능한 한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경제적 문제이다. 근로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통하여 정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청소년 취업의 양성화를 통하여 청소년 고용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청소년의 불법취업과 노동착취의 악순환을 없애는 동시에 청소년의 음성적 서비스산업으로의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우선 청소년단체들은 시민단체적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과감히 고발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는 그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심사하여 시정 조치 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 내에 청소년분야가 만들어 져야 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 B]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있는 청소년 자율 참여가 아닌 듯 싶다. 청소년 자율 참여 증진은 청소년 권익 증진과 직결되어 있으니 말이다.

[청소년 C] 청소년에게는 인권을 침해당하고도 인권침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무런 기관도 없다.

(7) 청소년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① 학계전문가

[학계 A]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청소년·부모·교사·당국자 및 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토의한 결과를 사심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학계 B] 개인적으로 그 기관에 대한 충분한 욕구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여건의 조성 없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단체들이 여러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걸어 놓고 설립되지만 진정 효과적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우선 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심도깊고 냉철한 성찰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 설치된다면 그 운영도 단순히 연구자료만을 생산하는 단체이기 보다는 현장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서 움직여지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 C] 어른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은 어른에게도 어느정도 있으나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청소년인권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계 F]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센터는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통계 지표 개발을 일차적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학계 G] 청소년인권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현장전문가

[현장 B]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차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센터의 필요성은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이 있다. 충남청소년상담실에서는 상담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담의 대부분이 청소년인권침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도적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센터 모델이 현재의 시점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

[청소년 A] 현재 여건하에서 청소년인권만을 담당할 별도 국가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 관련 전문 행정기구도 없는 실정에다가 국가인권위 신설 움직임도 나타나는 상황에서 단독 청소년인권센터에 소요되는 인적·재정적 지원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 기구는 불가능하며 현실성이 없고, 청소년전문기구나 국가인권위 산하 기구로의 추진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청소년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 기관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이 순서도 맞지 않고, 아마 이 어려운 국가 현실에 국회의원들의 반발만 살 것이 우려된다. 일반 국민들에게 청소년인권에 대한 공감대부터 확산시켜 놓고 고려해볼 문제이고, 연구조직으로서의 시작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B]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 있다는 말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전에 여성이 그러했듯 여성 또는 청소년이 하나의 특권 특수 계층이라 생각하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청소년에게 인권센터가 잘못 어필된다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사회 타 계층들간의 열등감)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C] 청소년 인권 센터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청소년 인권 센터가 청소년 참여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청소년의 참여 없이, 청소년 인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센터를 바라지 않는다

[청소년 D]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센터는 그 이름과 예산에 비해 영향력과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차라리 사회단체등이나 청소년 자발 단체

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서로의 성격을 견제하면 발전하는 것이 좋다.

(8) 기타 제언

이 외에도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이 제시되었다.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왜 성공했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이 왜 실천될 수 있었는지를 심층 검토하고 난 후에 추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국제아동권리협약 항목별 이행사항이나 개선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근 자료를 제시하며 자세히 대답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실제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 관계나 청소년의 권리와 성인의 권위 사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내외 법안에 관한 논의와 예산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외국 연구보다는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세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권리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청소년의 의무나 책임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범죄 관련(예방책과 교정대책 등)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연결체제와 캠프 관련 안전한 시설 확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등 여건이 청소년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종합 논의 : 청소년권리 실태와 과제

(1) 청소년권리에 대한 일반인식

청소년권리에 대한 일반인식으로 청소년권리의 개념, 의의 및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수준과 그 원인,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권리의 개념과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답변으로는 학제 및 현장전문가와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은 미성숙한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의 권리인식이 미약하다고 해서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성장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권리행사능력 또한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과

교육을 통해 성숙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조사표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자율과 권리를 느껴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성장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같거나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며, 청소년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열악하다, 미약하다, 낮은 수준이다....’ 등의 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수준이 낮음을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끼리나 사용하는 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며, 한 청소년은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도 부족함을 언급하여,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 인식과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또한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인식이 매우 낮으며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 지도와 교화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점 등이 여전히 지적되었고, 청소년권리의 ‘법적 보호는 상당수준이나 실제 준수여부는 낮은 수준’이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성인들의 권위주의적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를 단순한 과도기로 인식하거나 미래만을 준비하는 시기로 간주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유교적 생활풍습,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전반적으로 인권과 약자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지적되었고, 이 외에도 입시위주의 획일적·비민주적인 교육으로 인한 민주적 생활방식의 체험 부족, 인권교육 부재, 그리고 한 청소년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담당자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등도 지적되었다.

“우리사회와 정부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 정도”에 대한 응답도 대부분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직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 인식도 부족하며, 그나마 90년대 이후 점차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청소년권리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목적의 구호성 주장으로 그치거나 정부차원의 노력들 - 청소년헌장 개정,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등 - 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확산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 개선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시적 접근이다’, ‘현 정부에는 청소년전문가가 거의 없다’ 등의 지적을 통해, 우리사회와 정부의 미약한 노력을 비판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와 정부의 청소년권리 증진 노력의 문제점”으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예의 청소년참여 미흡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와 정부,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주관부서의 불명확성 및 활동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 확대, 청소년권리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립, 옴부즈퍼즌제 등이 제안되었다.

(2) 청소년의 권리유형별 인식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주요 장별(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하위집단별(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여자청소년, 농촌청소년 등) 착안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자립시기에 제기되는 몇 가지 권리와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권리’에 대해서는 ‘시민적 권리’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와 비슷한 수의 응답자가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도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신체의 자유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요보호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과

달리 ‘양육과 보호받을 권리’ 또한 열악한 실정임이 지적되었다. ‘청소년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권리’로는 대부분 ‘시민적 권리’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권리’는 대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권리’의 경우와 비슷한 응답형태를 보여 ‘시민적 권리’와 ‘학습 및 문화에 대한 권리’가 비슷한 비율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청소년집단의 권리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등권, 사생활의 권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노동권 등이 제시되었고, 성적·경제적 착취, 전쟁 상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기 완성을 위해 준비하는 존재로서의 권리 또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영역별(가정·학교·사회), 하위집단별(학생·근로·장애·여자·농촌청소년 등) 권리 중 시급한 사항”으로는 많은 경우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청소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장애청소년’, ‘근로청소년’,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 등의 권리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여러가지 유형별 권리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참여권 보장, 보호명목의 부당한 간섭 배제, 입시제도 개선 등이 제시되었으며, 학교 내 소외받고 차별받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내 인권상황 모니터링,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과 정책참여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자청소년이나 농촌청소년들처럼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맞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취업, 군입대, 결혼,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자립시기에 제기되는 청소년권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령별 권리의 불일치 해소, 취업과 진학시 충분한 제형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치참여 준비를 위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치교육, 군대에서의 민주주의 원칙 준수, 선거연령 하향화, 학교에서의 취업·진로지도, 청

소년 고용창출, 근로청소년의 권리 신장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권리를 위한 총괄적 행정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청소년관련학파에 청소년인권과목 설치,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대표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선거권 부여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응답자 전원이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충분한 자질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민주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 신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청소년은 18세보다 더 낮추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 청소년 권익증진 방안과 과제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제도, 인권교육활성화 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청소년인권센터 및 청소년권리 분야 연구활동에 대한 제언, 그리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청소년 권리 확대를 위한 제언과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로는 청소년발언대 등을 통한 참여 확대, 관계부처(교육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를 총괄하는 중앙기구 설립,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근거법 제정과 그에 따른 지속적·일관적 정책수행, 체계적 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행정적·법적 조치, 국내 기본계획 수립),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 자생·자율·자치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 지원, 청소년인권영화제나 백일장 등 각종 문화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도

특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학부모와 교사, 지도사,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삶의 주체자로 보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 내의 비민주적·반인권적 현실(체벌, 폭력, 과도한 생활규제, 자치활동 억압 등) 개선, 청소년의 의사표명권 및 의사결정권 보장,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제도적 참여 활성화, 자율적 청소년문화 성숙 등이 제시되었다.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실정에 맞는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권지킴이 양성, 인권교육 담당자 훈련,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자치문화 활성화, 교육관련 법령에의 반영, 정부의 재정지원, 인권교재 개발, 학교내 인권교육 도입 및 인권활동 프로젝트 개발·실시, 청소년인권센터 활동 활성화, 각종 매체(방송, 언론, 컴퓨터통신 등) 활용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UN아동권리협약 이행 과제”로는 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 정비,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조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권리교육, 청소년 인권지표와 실태의 정기적 조사와 모니터링, 인권보고서(백서 성격) 발간, 청소년권리 보장을 위해 가정·학교·사회 등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개발·보급(가족회의 안내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권리 연구의 유의점과 활성화 과제”로는 청소년의 발달상 특성을 고려할 것, 국제비교가 가능한 연령구분을 통한 체계적 연구, 민주적 자치능력 신장에 중점을 둔 연구, 학제간 연구 및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의 맥락연구,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 교육, 다양한 차별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특수성에 따른 권리 관심과 연구,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 양성과정의 정식 이수과목으로 청소년권리에 대한 영역 포함,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실천교육으로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가 제안

되었으며, 유사한 맥락으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현장과의 피드백이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따른 청소년권익증진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는 하겠으나,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하위 부문으로 청소년인권 담당 부서 또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청소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 인권의 개념화나 청소년권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들이 인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은 인권센터의 의의와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과 그 실효성과 의미에 대해 우려스러운 인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응답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성에 찬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경우도 완전한 거부라기보다는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총괄적 기구를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들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통계 지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인권센터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 인권센터에 청소년참여를 반드시 보장할 것, 영향력과 효과 확대를 위해 사회단체 등이 서로의 성격을 견제하며 운영하게 할 것 등의 제안을 내기도 하였다. 인권센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는 기관 설립 이전에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심도깊고 냉철한 성찰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의미와 실효성이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기관 설립 이전에 일반 국민들에게 청소년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권리에 대한 의견들은 주로 청소년권리를 위해 학계와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의 인식보다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방향에 있어서도 학계와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활동가들이 크게 상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모아,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 실천과제들을 모색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뜻과 힘을 모으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일반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진단 또한 필요할 것이다.

3. 아동권리협약과 한국사회의 이행과제

1991년에 한국 정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한 이래로, 이 조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정부는 1994년 1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으며, 1999년 현재 제2차 보고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1991년을 계기로 하여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 협약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운동을 하던 비정부단체들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절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래로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

(1)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한 입법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 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837조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협약은 당사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도 입양이 가능하다(민법 제869조, 제878조, 호적법 제66조).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탄압제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10조 4항, 군사법원법 제534조).

그러나, 위의 3개 조항이외에도 한국의 법률은 국제결혼한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 국적 취득권,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적절한 처우, 근로아동의 최소노동가능 연령 등에서 아동권리협약과 다른 국제조약에 배치되었다. 이처럼 명백히 유보조항은 아니었지만, 협약과 모순관계에 있던 민법, 국적법,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 1997년 12월 개정된 민법은 제781조 제1항 가운데 “부가 외국인인

-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母)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의 국적취득과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 1997년 12월 국적법 가운데 제2조 제1항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 19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취업금지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5세 미만자로 확대시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제1차보고서 제51항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 기아 및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도록 보장하고 있다.(중략) 그러나 한국인 여자와 출생지주의 국적법에 따르는 국가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에서 무국적인 될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다.

(2)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기반의 조성

한국사회에 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운동단체, 연구기관, 전문학회 등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아동운동단체가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를 단편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를 연구했고, 이에 대한 비정부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전문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인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와, 유엔에서 채택된 각종 국제규약에 깊은 관심을 가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학술자료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아동권리학회’를 창설한 1996년은 아동권리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활동의 전

기가 되었다. 이 학회는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아동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학회를 창설하고, 일년에 두차례 이상 학술대회를 갖고 ‘아동권리연구’란 전문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연구성과는 1996년대 중반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보고서(한국청소년개발원, 1996)를 시발로 하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7), 아이들의 권리 세계의 약속(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 1997), 청소년의 권리(최윤진, 1998), 인권교육의 길잡이(인권운동사랑방, 1999) 등이 대표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연구성과가 쌓이면서,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의 주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혹은 인권이 채택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1999년에는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남청소년인권센터 등이 경쟁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학술토론의 주제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아동권리지표의 개발, 아동권리 지침이 교육용 자료집의 개발 등이 시도되고 있다.

(3)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의 확산

일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권리는 미풍양속으로 인식되어온 생활양식에 의해서 침해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운 아이 딱 하나 더 주고, 귀한 아이 매하나 더 때린다’는 속담은 신체적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로 미화시켰다. 임금, 스승, 부모는 한 몸이라는 ‘군사부일체’의 생활양식은 신하이교 제자이며 자식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인격체로 대우받는 것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10월에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부가

기존의 청소년헌장을 폐지하고, ‘청소년의 권리’ 11개항과 청소년의 책임 9개항을 담은 ‘새로운 청소년헌장’을 개정한 것은 가시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같은 해에 교육부가 시도한 ‘학생인권선언의 제정’이 공교육기관과 교사들의 반발로 좌절되었지만,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된 권리를 다시 한번 청소년의 권리로 강조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은 ‘청소년의 헌장’의 개정에 의해서보다는 청소년들의 자각과 자발적인 인권소모임의 확산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입시를 주된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보편화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 자율학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운동을 펼친 집단은 ‘중·고등학생복지회’ 등 청소년인권단체이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며 학생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교사에 의한 학생 구타와 체벌, 야간자율학습의 강요, 획일적인 머리와 복장의 강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지품검사와 개인생활용품의 압수,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과 성폭력,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학생징계 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99년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었고, 특히 적성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많은 학교에서 학생징계규정이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발적인 동아리활동도 단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지도교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량씨클’로 낙인찍혔던 악습은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익명’이나 ‘실명’으로 펼 수 있게 되고, 학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의 주장은 점차 힘을 갖게 되었다. 중·고등학생복지회의 조직화 계기가 되었던, 최우주 군의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주장은

‘하이텔’이란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되었다. 또한,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청와대에 의견을 낸 ‘전라교의 한 학생’을 징계한 사건이 네티즌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학생을 징계한 ‘교장의 좌천’으로 끝난 것도 가상공간에서 청소년의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은 전통적인 남녀 차별적 생활양식이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장유유서적 생활양식이 연령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자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녀수의 감소로 가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중시되고, 이들이 신세대, X세대, 혹은 N세대로 불리는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구축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한 영역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학대받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입법되었지만, 그 동안 기아와 같이 매우 심각한 사례만 ‘아동상담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한편,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진 사회복지사, 의사, 아동학자 등이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를 조직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왔다. 특히,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 및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전후로 하여, 한국복지재단, 지역사회아동복지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구 한국어린이보호회), 한국이웃사랑회 등 관심있는 민간단체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일시보호 등 전문적 개입을 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아동학대를 발견할 때 전문적 개입,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 등이 불비하여 사실상 아동학대가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아동복지법의 개정이나 ‘아동학

대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는 더욱 확실하게 구축될 것이다.

아동학대와 별도로 청소년학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 의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성폭력특별법에 제정되고, 성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주로 10대)을 돕기 위한 쉼터가 마련되었다. 학교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에는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등을 금지하고 위법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1990대 중반이후로 아동학대와 청소년학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들을 위기상담, 일시보호, 단기보호하고 법적·의료적으로 서비스하는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논의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 비교할 때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는 매우 미흡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제도적 장치도 입법과정에 있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여겨진다.

(5)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 그 내용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볼 때, 1990년대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에 관한 권리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999년 현재 약 55만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혹은 반액정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20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사실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하여 생활보호하고, 이와 함께 가난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교육보호,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을 실시하는 생활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로 비롯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은 그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같은 서비스를 부자가정에게 확대한 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은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지만, 부모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개설, 부모의 사망·이혼·별거 등으로 사실상 방임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집단가정인 소규모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이나 급식비의 지급, 방과후에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은 1990년대의 성과라고 여겨진다.

요약하면 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한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혹은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상황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가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학술활동으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확산시킨 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중요한 담론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인 1998년을 전후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며, 인권교육을 강조하게 된 것은 다가오는 2000년대의 과제를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2) 아동권리협약의 2000년 이후 과제

(1)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센타의 운영

아동권리협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동권리위원회 혹은 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책임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권침해사태의 발견과 상담,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의 보급, 인권교육의 실시, 인권활동가의 양성, 인권에 관한 자료의 집적,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조직은 1999년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을 존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형식으로 조직되될 것이다. 현재 인권법안은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위원회법(안)’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지만, 두 법안은 기존의 경찰사법기관과 새로운 인권기구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위원회의 경우 과거 경찰사법기관에 의한 고문이나 각종 불법행위, 대량학살사건과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그 핵심적인 기능이 인권교육이기 될 것이기에 부설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센타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행기관으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보센타, 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이에 대한 대응도 생활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부터 시범적으로 인권센타를 설치하고, 점차 도청소재지와 중소도시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점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인권센타는 기존의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되어서 설치·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인권활동가의 양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이들을 가까이에서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학대하고, 억압하는 부모와 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 사회는 성차별과 함께 연령차별이 매우 심각한 생활문화를 이룬바 ‘미풍양속’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 반할 수 있는 남녀와 노소가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권리를 지키면서도 관용을 하는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먼저, 인권과 관련된 사회과, 도덕과, 윤리과 등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내고, 이를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맞는 내용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또 하나의 교과목으로 전락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토착화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이 좋아하는 노래, 그림, 게임, 연극 등으로 표현하고 배우는 학습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와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을 때 이를 법적·전문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집단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경찰, 검사와 판사,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교도관 등이 비록 법을 어겼거나 비행을 한 아동과 청소년이라도 인권을 존중하면서 보호하거나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수칙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와 관련전문가에게 전

문적 지식과 실천기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원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대학원에 NGO학과가 생겼듯이, 인권교육가와 인권활동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정규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심있는 민간단체들이 단독으로 혹은 연대하여 단기의 전문가과정이나 자원활동가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3)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모색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논의하면서, 실제생활과 유리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학생의 선택과 수준이 무시된 획일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력이 억압당하는 학교문화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시민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세우면서도 비민주적인 생활양식을 강요하는 학교를 개개인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특기적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에 맞으면서도 국민기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많으면서도 공교육비가 적은 비효율적인 ‘풍요속의 빈곤’을 반성하고, 학교를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으로 바꾸어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과거의 생활양식을 강요하지 말고, 민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의사결정능력의 배양,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활용능력의 제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부가 지겨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와 통합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 학교교칙의 제정에 학생의 참여, 교육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학생의 선택권보장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즉, 학습의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에 두면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모형을 정착시켜야 한다.

(4)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의 획기적 신장을 위한 조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 한다. 과거의 학생관은 군사부일체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새로운 학생관은 학생의 참여와 의사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를 전제로 한다. 이밖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에서 그 당사자의 의견을 늘 존중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청소년의 참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외국의 대부분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일부 나라는 16세 이상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세 이상에게만 참정권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18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국방의 의무도 진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20세이상 선거권 연령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선거권의 연령은 선진외국의 수준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연령이 ‘18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사회적 마찰을 빚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성인기로의 진입이 빨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에게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음주와 흡연 등을 청소년에게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지향할 때 과거에 당연히 했던 생활양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권리를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한 시도가 될 것이다.

(5) 보호권이 취약하거나 박탈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보호
한국 사회가 점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낙관할 지라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최근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면서 미혼의 성생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혼의 혼외성생활이 이혼과 별거로 이어지게 될 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부모의 자녀, 이혼과 별거가정의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 동안 가족의 해체나 결손, 부모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생긴 요보호아동을 가족에게 방치했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때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폈는데, 앞으로는 미래 세대를 가족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시각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국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국가도 가급적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가족을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을 소규모 집단가정으로 바꾸고, 주로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국내에서 입양을 하도록 입양기관과 양부모를 지원하며, 성적 착취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교육을 강화시키는 일, 요보호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일 등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행과 범죄소년으로 낙인찍혀서 방치되고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에게도 적법절차에 맞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보접근권의 정착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절실하다. 과거에는 취학률로 한 사회의 교육정도를 파악하였지만, 앞으로는 전국민의 대부분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해당 연령층의 70%가량이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취학률보다는 적절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정보접근권을 논의할 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나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정보소외계층에 한정된 듯했다.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보접근권을 논의할 때는 소외집단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에 관한 시설과 설비의 구축, 정보문화의 토착화가 절실하다.

인터넷도 할 수 없는 컴퓨터라도 대수만 많으면 된다는 학교의 컴퓨터 설비, 아동과 청소년에게 폭력성과 성적 자극을 하는 정보만 넘치는 컴퓨터통신문화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청소년이 스스로 좋은 정보를 만들고 이를 가상공간에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대도시부터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만들고,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도서관에 ‘인터넷체험실’을 만들며,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고속도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유익한 정보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며, 동시에 실공간에서 인권활동을 가상공간과 연계시키는 일도 2000년대의 도전이 될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인권활동가들이 각자 관심영역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연결시켜서 ‘청소년권리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2000년대 이후에도 아동권리협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먼저 책임있는 기관으로 아동권리위원회나 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청소년인권센타를 대도시부터 만

들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활동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철저히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고, 다양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나아가서 실제공간에서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통한 삶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이 정보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가상공간을 통한 인권활동도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만 하면 곧 실현시킬 수 있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90년대 후반에 들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정책 가치인 ‘청소년 자율·참여 및 권익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청소년권리 증진활동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권리 관련 세계적 동향과 선진외국의 현황을 제시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권익증진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 모든 청소년 관련 부문에서 올바르게 정착되고 실천프로그램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자율과 권익증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 및 의의를 밝히고, 청소년권리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권리의 세계적 동향을 UN 등 국제기구의 주요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사례 및 프로그램과 관련 단체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선진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을 위한 활동프로그램과 단체 활동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국내의 경우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추출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 검색, 전문가 의견조사, 워크

습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국내의 청소년권리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청소년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견해를 총망라해볼 수 있었으며, 워크숍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권리단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활동경험을 나누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로 평가되었다.

먼저 II장에서는 인권과 아동권리, 그리고 청소년권리의 내용과 역사적 발달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권리의 범위와 특징을 논의하였다. 청소년권리의 특징으로는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보장, 오늘의 사회구성원이면서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의 조화 등이 제시되었다.

III장 1절에서는 세계적인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주요 국제문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회의 등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성인과 등등한 능력과 보다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권리를 제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정리해 내었다. 주요 국제문서로는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UN의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등 10여개의 문서가 검토되었다. 2절에서는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련 현황을 알아보고, 인권교육 현황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인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터어키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종합적으로 외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였다.

3절에서는 선진외국의 청소년권익증진활동 사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미국 시민자유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 재단 Australian Youth Foundation의 국가 아동·청소년 법률 센터 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와 시민권과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Citizenship And Service Education Program,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국가 비정부 단체 CIVITAS, 4-H Center의 Wonders of Washington (WOW) 프로그램, Citizenship Washington Focus(CWF) 프로그램, Street Law Leadership(SLL) 프로그램, 아동 옹호가 Children's Advocate, 연령 제한이 없는 사회를 위한 단체 American for a Society Free from Age Restrictions, 청소년들의 가상국가 Nation 1, 미국의 청소년정치가 Young Politicians of America, 청소년 협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Program for Young Negotiators).

IV장 1절에서는 국내의 청소년 권익증진활동 사례를 충남청소년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중고등학생복지회, 사이버 유스, 인권동아리 타래, 젊은모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국내의 청소년권리 관련 단체들의 어려움과 현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사결과는 청소년권리에 대한 일반 인식, 청소년의 권리유형별 인식, 청소년 권익증진 방안과 과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제시하였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 현황과 과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국내의 청소년권리 현황이 매우 미흡하며 그 극복 노력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앞으로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3절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국사회 이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가 논의되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생존·보호권적 권리 중심의 아동의 권리와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생애주기로서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참여권과 시민적 권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한다.

둘째, UN 아동권리협약, UN 청소년행동프로그램, 리스본 선언 등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에 기반한 법제 마련, 실천프로그램 개발·실시, 지속적 연구조사 활동 등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스스로의 권익증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범사회적인 노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기본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의 '복지권'과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자유권'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시민권 확대 노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하위집단별(장애, 여성, 학생, 근로, 농촌, 극빈 청소년 등) 특수권리 신장을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제고

본 연구의 워크숍 토론과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 권익증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회전반적인 인식 부족 문제이다. 이에 청소년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UN 인권교육10개년사업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인권의식 고양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권교육10개년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내용을 점검하고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에 배치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교사, 경찰, 사법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 청소년권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교과 - 도덕, 윤리, 사회과 등 -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직무연수 시 인권과 청소년권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인권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연수'를 현재의 청소년봉사활동 연수처럼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 전문 연수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권리교육 관련 교육·홍보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하여, 이를 널리 보급한다. 이러한 자료는 인권범주별, 대상별, 수준별로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며, 일반 책자 형태 뿐만 아니라, 만화, CD-Rom, 게임카드 등 각종 시청각 자료와 교구들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다양한 청소년권리 주제의 문화프로그램과 행사, 대중매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 예시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권리대상(Youth Rights Award), 청소년인권지킴이 대상(Youth Rights Ombusperson Award), 청소년인권영화제, 청소년인권연극제, 청소년인권 백일장, 청소년인권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인권 관련 TV프로그램(다큐멘터리, 드라마, 토론프로그램 등)이나 공익광고 프로그램 제작·방영, 청소년권리 신문·잡지 발간, 청소년인권대회(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사례발표 및 경험 나누기), 청소년인권주간 선포 및 행사 개최(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청소년인권선언 제정·선포, 인권지킴이 발대식), 인권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의 정기적 참가, 인권관련 국제청소년인권캠프 운영.

2. 청소년 권리실태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 연구조사 및 모니터링

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권리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도구로서 청소년권리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가능하고 외국의 청소년권리 현황과도 비교가능한 지표체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권리백서를 발간한다. 이 백서는 청소년권리지표에 따라 조사된 청소년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적 통계자료와 각종 현황자료들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백서는 청소년권리 관련 단체·기관과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어 우리사회의 청소년인권 현황을 인식하고 인권신장 노력을 기울이는 데 중요한 준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지킴이(Ombusperson) 활동을 통한 청소년인권 현황 모니터링이다. 청소년권리를 옹호하는 성인들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를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청소년인권 신장 모범사례집 및 침해사례집을 발간한다. 아직 우리사회는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청소년 권리신장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소개하여 권익증진활동의 모델로 삼게 하며, 침해사례의 경우 또한 널리 알림으로써 권리침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선진 외국의 청소년권리 현황 비교 연구를 통한 벤치마킹이

다. 선진외국의 다양한 모범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이 어떠한 환경에서 한계나 어려움을 갖는지, 또는 활성화되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게 시행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보다 일관되고 힘있는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를 규제하는 각종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 및 각종 국제조약과 상충하는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이나 학생들의 학교 내 의견표명·의사결정·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학교 내의 학칙제정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나 두발이나 복장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비인권적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우리사회에 청소년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국제법과 상충하는 국내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 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제시한다면 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업의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권익증진을 보장하는 법조항 또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하위법으로 청소년참

여증진법이나 청소년권리증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이 명실상부하게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아낼 수 있도록 청소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반 규정 등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인권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다.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법정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가 UN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와 그 업무를 통괄·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로서(현재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청소년 인권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많은 부처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발간도 인권위원회에서 총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인권 전담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청소년분야에서 아시아인권센터의 기능을 우리나라가 갖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국제청소년인권캠프를 내년도 5.18. 20주년 인권행사에 부대행사로 병설·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넷째,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연구개발 기구인 청소년인권센터를 청소년인권위원회의 부설기구로 설치한다. 인권센터는 시·도별로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가급적 시·군·구는 교육구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홍보,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점차 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발, 청소년인권백서의 발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인권보고서 제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기구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현정부의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와 관련하여 청소년권리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다섯째, 청소년권익증진 활동 부문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화하여 청소년지도사 전문분야의 하나로 (청소년 권리와 참여 부문) 공식 채택하

고,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인권 부분의 ‘전문연수 실시’와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한다.

4. 다양한 청소년 권익증진활동 지원 및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 권익증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청소년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의 청소년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집단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학교와 사회, 가정, 사이버공간 그리고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문제가 결정되는 모든 의사결정의 장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발언대’, ‘청소년위원회’와 같이 청소년의 의견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문화의 발달로 사이버 상의 활동이 모든 사회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듯이, 인권에 대한 정보를 가상공간을 통해 널리 알리고 가상공간의 청소년 권익증진활동을 지원하는 등 가상공간을 통한 인권활동을 적극적으로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정부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복지회’와 같은 권리단체가 가상공간에 “청소년인권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인터넷상에 ‘Nation1’이라는 청소년 가상국가가 운영되고 있음을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는 실제 생활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도 청소년 의견표명의 장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Youth Speak, Youth Parliament, Voices of Youth, Student Rights Forum, Official Teen Rights, TeenVote, RightsTALK, Teenboard, Teen

Revolutionary Front Conference System, Kids Vote Page 등)

둘째, 다양한 청소년 자생자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이상적인 형태의 청소년 권리 향유는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타인의 임의적인 규제없이 자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성인들에 의해 무시되고 규제되고 심지어 탄압되어오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부모, 교사, 지도사 등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자율자생모임에 대한 사회·문화·심리적 지지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학교, 가정,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 내실화되고 자율·자치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족회의’나 ‘가훈과 생활규칙 함께 만들기’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권리를 주제로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단체·시설에 보급한다. 청소년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청소년 권리신장과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단체·기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모든 활동프로그램이 그러하지만 특히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은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갖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 및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프로그램은 학교 교과과정 자료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교육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권리를 찾기 위한 청소년 자생단체와 민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를 조직·운영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청소년 권리의식 및 시민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American for a Society Free from

Age Restrictions(ASFAR), Nation 1, Children's Advocate, Citizenship and Service Education Program(CASE), Program for Young Negotiators, 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 Canadian Youth Rights Association(CYRA), 4-H Center - Citizenship Educational Programs(WOW, CWF Program, Street Law Leadership Camp), Young Politicians of America, 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Association for Children's Suffrage(ACS), National Child Rights Alliance 등).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청소년' 집단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청소년전문 인권단체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성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 - 중고등학생복지회, 인권동아리타래, 사이버유스, 젊은모임 등 - 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정부와 성인들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다. 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이를 모니터, 변호, 지원해 주는 단체나 시스템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며,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시민교육자료와 정보, 프로그램 등을 개발·적용하며 자체 예산과 기부금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자문을 해주는 기관도 없으며, 청소년 권리를 위해 일하는 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나 정보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이들 단체간의 연계·협력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5. 청소년 하위집단과 북한청소년 권리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여러 세계적 회의결과와 문서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청소년권리는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세분화되어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소외된 하위집단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단계 우리사회는 ‘청소년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 환기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청소년, 여성청소년, 농촌청소년, 극빈청소년, 근로청소년, 약물중독청소년, 위법청소년, 경제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 등의 권리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다양한 청소년 하위집단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특수한 관심,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¹⁾

다음으로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법적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등 다양한 생활 장면별로 누려야할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 및 세부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어느 장면에서 어떤 행동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개인적·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권리 보장 지침이 다양한 매뉴얼과 지침서, 만화, 사이버 상담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여러 하위집단 중 여성청소년의 권리는 지금까지 특히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집단은 여성집단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같은 위치에 처한 여성분야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운동과 연령차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의미의 청소년운동이 서로 만나서 이중적인 차별 속에 있는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전달할 민간단체를 창설하고 이에

1) UN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청소년 행동프로그램’에서는 10가지 정책 우선영역으로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 남용, 청소년 일탈, 여가활동, 소녀와 젊은 여성, 그리고 의사결정과 사회생활에의 청소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단체가 청소년단체와 함께 여성청소년인권 포럼, 인권축제, 인권캠프, 인권대회 등을 기획·수행하는 데 여성특별위원회 등이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제안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청소년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와 공존과 관용의 문화를 지향하는 새천년의 문화 속에서 남북통일은 더욱 지향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일명 ‘꽃제비’ 사건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소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한 동포라는 인식으로 북한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울이고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 영역 -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노동의 권리 등 -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각 권리 유형별로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연구와 청소년과 관련 집단들의 요구 및 인식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수행 전략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1998). 청소년 자율참여와 청소년활동의 방향. 한국청소년학회 편, 21세기 청소년포럼(pp. 201-214).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1999. 3).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시론. 서울: 교육부.
- 국제사면위원회 저·이용교, 이회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서울: 인간과 복지.
- 국제아동복지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 - 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서울: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
- 김용자(1998). 인권의 의미와 발전과정.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2호.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래(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욱(1999).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정주(1999). 청소년참여.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 총론(pp.477-512). 서울: 양서원
- 김형식 편(1998).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류은숙(199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 - 정부 최초보고서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1998). 1998년에 바뀐 새로운 청소년 현장 이야기. 서울: 문화

관광부.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8). 새로운 청소년현장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배경내(1998).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영애(1998). 인권교육 수업 프로그램. 21세기를 여는 '98 전국도덕교사 여름연수자료집. 전국도덕교사모임.

변용찬·서문희·배화옥(1998).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볼프강 후버(1992). 인권의 사상적 배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성정숙(1998). 학생과 교사의 아동 청소년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1998). 한국 인권교육의 진로. 서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손춘석 편역(1998a). 새로운 천년을 향한 세계 청소년 동향. 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

손춘석 편역(1998b). 세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

슈란스키, V. P. 저·윤종희, 이재연 역(1994). 아동기의 실종. 서울: 교보문고.

스기하라 야스오 저·석인선 역(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1998).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정책 - 청소년을 살리는 발상의 대전환.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안경식(1994).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 학지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5a).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b). 관용: 평화의 시작 -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지침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c).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 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 서울: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편(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아동의 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96). 국가발전백서.
- 유엔인권센터 편·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기범(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23-34.
-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이희길(1997).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용교(1999). 청소년인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pp. 161-181).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이용교(1999. 11). 아동권리 지침이 프로그램. 한국아동권리학회 편, 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pp. 5-20.
- 인권운동사랑방(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 임성호 편역(1998a). 청소년 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 위한 UN의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 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
- 임성호 편역(1998b).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
-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협약 - 청소년의 권리. 서울: 예지각.
- 정희욱 편역(1998).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상희(1999).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조혜정(1998. 5). 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권을 다시 생각함 -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정책 - 청소년을 살리는 발상의 대전환(pp. 27-52).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서울: 참여연대.
- 천정웅·김영지·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1999).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발전노력과 주요국 정책 동향. 최윤진 외,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pp.79-114)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1998a). IMF시대 청소년참여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편, 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pp. 169-222).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1998b). 청소년정책의 방향전환과 청소년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pp. 1-19).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a). 청소년참여 증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b).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최윤진(1998. 5). '보호'로부터 '자율'로의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정책 - 청소년을 살리는 발상의 대전환(pp. 67-70).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 최윤진(1999).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의 현주소.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pp. 23-77).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최충욱(1991).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소외.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2000년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pp. 46-54). 서울: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 표시열(1997). 학생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오늘의 청소년, 통권 제118호(97. 4), pp. 14-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안)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아동권리학회(1997. 12).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1997. 2).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1999. 11). 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8).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9).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진 편(1998).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황성기(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Hammarberg, T.(1993). The Work of the Expert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unicef.org/crc/proced.htm>.
- Hart, R. A.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UNICEF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Rayner, Moira(1995).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In Bob Franklin(Eds.),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pp. 188-199). New York: Routledge.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6).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s of activities to promote youth rights

Lee, Yong-Gyo · Kim, Young-Ji · Lim, Jee-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trends of activities to promote youth rights and interest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This will contribute to get ideas about youth policy and programs expanding youth rights in Korea.

For this purpose, first,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rights were reviewed. Second, world trends of youth rights and activities, programs, and organizations concerning youth rights and realitie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were surveyed. Third, the realities and activities promoting youth righ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Through this process, we confirmed the world trends that youth was recognized as a equal citizen and major human resource for development as well as key agents for social change, economic development. UN and many advanced countries give them lots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many other decision making process.

In case of Korea, the situation of youth rights was poor but since late 1990s efforts and activities to promote youth rights has spread and expanded gradually.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efforts to promote youth rights were suggested : expanding of social concern and awareness about youth rights, continuous survey and monitoring about realities and conditions of youth rights, preparing the laws and system promoting youth rights, support and promoting of various activities expanding youth rights,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policy about various youth subgroups - young woman, disabled youth, youth labor, extremely poor youth, youth in conflict with the law, substance use youth, and economically, physically and sexually exploited youth etc. - and concerning about the rights of youth in North Korea.

부 록

- 전문가 의견조사지(학계용·단체용)
 - 청소년 권익증진 연구자문단
 - 청소년권리 관련단체 연락처
- 유엔인권교육 10개년(1995~2004)행동계획

자문위원용

전문가 의견 조사지

-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 연구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청소년 자율참여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과 정책 프로그램들을 발굴·소개하고 전반적인 국내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 확대를 위한 정책과 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UN을 주축으로 한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권리확대를 위한 세계적 흐름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과 청소년헌장 개정 등 국내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1999년 8월 21일(토)까지 답변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8.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137-715

☎ 02-2188-8846/8859 Fax 02-2188-8849

이용교 · 김영지 · 임지연

E-mail : yjkim@youthnet.re.kr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 www.youthnet.re.kr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 연구

1. 연구목적

1998년이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세계적 동향에 따른 정책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청소년 자율·참여·권익증진'이라는 새로운 정책가치가 창출되고 정책·제도화되기에 이르는 시기였다면, 1999년은 본격적으로 수립된 정책방향을 올바로 구현하고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청소년정책 가치인 '청소년 자율·참여 및 권익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청소년권리 관련 활성화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사례제시와 모범 정책 소개는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 모든 청소년 관련 부문에서 올바르게 정착되고 실천프로그램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주요내용

1)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 및 의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가치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어 사회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된 사회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세계적 동향 검토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의 관련역할과 활동 동향을 검토한다. 유엔총회보고서 및 유엔 인권 비준서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논의의 역사적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요한 정책프로그램 현황을 분석·정리한다.

3)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사례 및 관련 기관·단체 현황 조사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사례와 청소년 권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구·단체의 현황을 알아본다. 특히,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구체적 실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우수 활동사례가 더욱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의 우수 활동프로그램들을 국내에 소개하도록 한다.

4)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시사점 추출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조사·검토
- 2) 인터넷 자료 검색 및 번역 : UN 등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의 청소년 권리 관련 정책 및 활동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주요 자료들은 번역하여 소개
- 3) 전문가 자문 :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학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기관·단체 관계자,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4. 기대효과

- 1)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세계적 동향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
- 2) 선진 외국과 국내의 우수 정책·제도 및 활동프로그램 발굴·소개
- 3)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추출

□ 의견작성 후 회신방법

※ 마감일은 8월 21일(토)입니다.

1. 인터넷 E-mail : yjkim@youthnet.re.kr ⇒ E-mail회신 권장. 첨부자료는 우편으로 별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첫 장에 있음)
2. 팩스번호 : 2188-8849.
3. PC통신 전자우편 : 천리안 nil3, 하이텔 IPYnet, 유니텔 s2ynet.

※ 연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소정의 연구자문비를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명 _____ 연락처 _____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자택주소 _____

※ 다음 문항들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자율과 권리에 대한 의견

1.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의 개념,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 수준이 열악한 편이라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때, 각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②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 ③ 시민적 권리와 자유
 - ④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 ⑤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4-1. 다섯 가지 권리 중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 다섯 가지 권리 중에서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권리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현재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 주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를 굳이 매겨본다면)

4-4. 위의 다섯 개 권리가 포괄하지 못하는 또다른 청소년의 권리유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요 장(場)에는 크게 ① 가정 ② 학교 ③ 직업공간(직장 등) ④ 기타 사회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은 자신이 갖는 특수성에 따라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여자청소년, 농촌청소년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청소년 집단 중에서 우리사회 청소년의 권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쏟아야할 부분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1.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각 장별, 또는 조건별로 청소년권리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들로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소년의 자립시기에 제기되는 청소년의 권리에는 ① 취업 ② 군입대 ③ 결혼 ④ 정치참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부여 연령은 만20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외국 등 세계 98개국의 선거가능연령이 18세이며 호주, 캐나다 등 16세로 하향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가 되면 다른 많은 현행법상 성인 자격을 갖게 되며 청소년들의 의식도 20세로 선거연령을 결정했던 40년 전과 달리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세계적 흐름에 따라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도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부여연령 하향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8세와 19세 논의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현재 우리사회와 정부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해 본다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9. 현재 우리사회와 정부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노력이나 정책·제도 등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청소년의 자율과 사회적 권리를 중시하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청소년헌장’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청소년 자율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정책들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도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사회의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적·제도적 차원 모두 포함)
12. UN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을 통해 인권 교육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청소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조약에 비준하였지만, 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제반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UN아동권리조약에 상응하는 권리 확보 노력을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소년권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아동이나 성인의 권리와 달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연구분야를 정착·확대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할지 귀하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15.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권익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총괄적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인권센터'의 필요성, 설치·운영방안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에 대한 일반사항

1. 본 연구가 우리사회의 청소년 자유헌동과 권익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내용면 또는 연구방법면 등을 모두 포함하여)
 2. 청소년자윌과 권익증진을 위한 세계적 동향과 활동 중에서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정책·제도, 활동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추세나 경향 등)
 3. 본 연구를 위해 참고할 만한 국내외 문헌자료나 인터넷사이트, 활동사례, 관련 전문가 등의 정보가 있다면 몇 가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내의 청소년권리관련 활동프로그램이나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목차(안)을 보시고 제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질문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관련기관 · 단체용 추가내용

그동안 우리사회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청소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수준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 가운데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성인 중심의 유교문화로 인해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UN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비준,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청소년의 주체적 삶과 자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청소년헌장’ 선포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 등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적·주체적 삶의 확대 노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인권수준 향상과 평화로운 사회문화 건설을 위해서는 성인 뿐만 아니라 오늘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권리수준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과 같은 인권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기관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반 인권관련단체에서도 ‘청소년인권’ 부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귀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활동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이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개된 자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청소년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 자료는 모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본원 자료실에서 공식 관리되도록 하여 청소년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관련 기관·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권리’ 주제의 워크숍(9월 중)을 기획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언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문항들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사업 수행 사례

1. 귀 기관·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단체 소개 브로셔나 팸플릿 등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관명
- ☐ 설립목적 및 기관 성격
- ☐ 기관연혁
- ☐ 주요활동
- ☐ 회원
- ☐ 연간 예산과 조달방법
- ☐ 조직과 담당자
- ☐ 주요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홈페이지와 E-mail 주소

2.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율과 권익증진 관련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평가서 등)

-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의의
- ☐ 사업대상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등)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
- ☐ 사업수행 동기
- ☐ 사업연혁
- ☐ 발간도서와 시청각 자료목록

3. 귀 기관의 청소년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들의 호응도 및 관심도
- 사업 성과 및 효과
- 청소년들의 반응 및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 사업 운영과정 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 사업 활성화 방안 (향후 보완점 및 발전방향)
- 사업전망 예측

※ 자료 협조

1. 사업 운영현황 및 활동사례를 나타내주는 자료들이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예 :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회의록,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자료, 각종 활동자료, 사진자료 등)
2. 본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외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예 : 타단체의 청소년권익증진 관련 사업 사례 정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소개 등)

※ 위 질문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귀하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 권익증진 연구자문단

구 분	성 명	소 속
대학 · 연구소	강 순 원	한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 정 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김 정 주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노 해 련	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박 제 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변 응 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심 성 보	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이 기 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 봉 철	한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재 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 해 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천 세 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천 정 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최 윤 신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표 시 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허 종 령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단체 · 기관	담 당 자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담 당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담 당 자	불교인권위원회
	담 당 자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담 당 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담 당 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담 당 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담 당 자	인권운동사랑방
	담 당 자	전교조 학생생활국
	담 당 자	전국도덕교사모임 · 전국사회교사모임
	담 당 자	전북 평화와 인권센터
	담 당 자	좋은 학교 만드는 이들의 모임
	담 당 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담 당 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담 당 자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담 당 자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 교육관 인권학교
	담 당 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담 당 자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인권센터
	담 당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담 당 자	한국아동권리학회
청 소 년	담 당 자	한국어린이보호회
	담 당 자	한국이웃사랑회
	담 당 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담 당 자	한국청소년학회
	담 당 자	전국대학교청소년학과 학생회 연합
	김 민 찬	인권동아리 '타래'
	김 우 나	중 · 고등학생복지회
	이 정 훈	청소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천 정 훈	사이버 유스

청소년권리 관련단체 연락처

단 체 명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E-mail Address	주 소
교육운동연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T. 02)3675-4238 F. 02)3675-4539	chs47@chollian.net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홍사단빌딩 401호
국제엠베스티 한국지부	T. 063)426-2533 F. 063)422-1966	amnesty (천리안, 하이텔) amnesty@amnesty.or.kr	(706-600) 대구광역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36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T. 02)743-7942 F. 02)743-7944	nschild@yahoo.com www.okedongmu.or.kr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T. 02)522-7284 F. 02)522-7285	minbyun7 (하이텔) m321 (천리안) http:// minbyun.jinbo.net/home.htm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병지빌딩 4층
불교인권위원회	T. 02)734-6401 F. 02)734-6402	Buddhah@chollian.net	(110-210) 서울시 종로구 화동 138-12 삼성건축 3층
사이버 유스	T. 02)362-3983 F. 02)363-1095	marquess@hanmail.net soundrain@hanmail.net www.cyberyouth.org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 지 연세대학교 신인문관 103호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T. 02)2610-4137 F. 02)2610-4137	IHP@green.skhu.ac.kr	(152-140) 서울시 구로구 함동 1-1 성공회대학교 원당관 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T. 02)755-3015 F. 02)755-7477	unescol (하이텔) unepln (천리안) hmlim@mail.unesco.or.kr www.unesco.or.kr	(100-022)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유 네스코회관 (100-600)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4호

단 체 명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E-mail Address	주 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T. 02)723-8218 T. 02)735-2310 F. 02)738-8504	unicef (천리안, 하이텔) www.unicef.or.kr	(110-03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T. 02)776-2597,8 F. 02)766-2599	go horuraky (천리안) go parent (유니텔) horuraky@chollian.net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 호투라키 상담전화(766-2593): 교사제벌문제, 청소년폭력상담위원회
인권농아리 '타래'	T. 017-311-1558	go 타래 (나우누리) fitas@hanmail.net fitpapa@channel.net http://cafe.daum.net/tarae	(122-050)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85-9 청운빌라 301호
인권운동사랑방	T. 02)741-5363 F. 02)741-5364	rights@chollian.net www.iworld.net/~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T. 02)521-5364 F. 02)584-7701	cohandi (하이텔) cowalk (천리안)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교조 학생생활국	T. 02)675-6181 F. 02)675-6184	Chambb@nownuri.net www.ktu.org	(150-04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15 대영빌딩 3층
전국대학교 청소년학과 학생회 연합	T. 02)820-5157	visionk@nownuri.net www.cau.ac.kr	(156-07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전국도덕교사 모임·전국사회 교사모임	T. 02)2631-2913 T. 02)2631-2915 F. 02)675-6184	chamgg (나우누리)	(150-04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15 대영빌딩 4층
전북평화와 인권센터	T. 0652)231-9331 F. 0652)231-9332	onespark@inp.or.kr http://inp.or.kr/onespark	(561-16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1304-1 숲정이성치 사회관

단 체 명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E-mail Address	주 소
좋은 학교 만드는 이들의 모임	T. 02)335-0971(2) F. 02)335-0609	KCC8608 (천리안)	(121-200)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1-15 빈지 우봉빌딩 4층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중·고등학생 북지회	T. 019-371-8266	go sws (하이텔) go 학북회 (나우누리) yoo96@kmail.com outslave@nownuri.net	(110-011)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36-2 삼성하이츠빌라 303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T. 02)790-3153 F. 02)798-6094	HAKBUMO (천리안)	(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74 2층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국제인권센터	T. 02)723-4255 F. 02)723-5055	pspd@soback.kornet.nm.kr www.pspd.org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천주교정의 구현사제단	T. 02)3672-0251 F. 02)3672-0255	cpaj@kor.inp.or.kr www.kor.inp.or.kr/CPAJ/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전진상 교육관 인권학교	T. 0343)444(9)-2876 F. 02)446-2876	aycc@chollian.net	(430-0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 동 676-136번지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청소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젊은모임)	T. 062)511-1318 F. 062)514-1602	go sg youth (나우누리) hopehunt@nownuri.net	(500-04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49-4
청소년폭력예방 재단 정보문화 사업팀	T. 02)585-0098	kydn@jikim.net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6-2 동관빌딩1층
충청남도청소년 종합상담실 청소년인권센터	T. 0417)554-2131 ~3 F. 0417)556-8704	chwith@chollian.net www.nettore.or.kr(개설예 정)	(330-070) 충남 천안시 원성동 543-4 신희 3층
천주교인권 위원회	T. 02)777-0643	CHRC (하이텔, 천리안)	(100-022) 서울시 명동2가 카톨릭회관 3 층 338호

단 체 명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E-mail Address	주 소
친구사이	T. 02)3141-7942	Hwarang (하이텔) wodud (천리안)	(121-240)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60-28 수원빌딩 2층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T. 02)764-0203 T. 02)744-3717 F. 02)744-6189	nochuman (천리안) nnck@peacenet.co.kr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수동 136-46 기독교회관 706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T. 자료실 02)385-8149 F. 02)352-2181, 9129	ycbyun@khasa.re.kr www.khasa.re.kr	(122-7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한국성폭력 상담소	T. 02)576-5513 F. 02)576-7127	ksvrc (천리안) www.sisters.or.kr	(135-27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한국아동 권리학회	T. 02)3274-1669 F. 02)3274-1669	kocright@hanmail.net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숙명여대 본관 905호
한국어린이 보호회	T. 02)336-5242 F. 02)336-6232	h5242@Chollian.net. h5242@Hitel.net	(121-22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6-9
한국여성의 전화	T. 02)2269-2962 F. 02)2269-2966	kwhl (하이텔, 천리안)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외집
한국이웃사랑회	T. 02)704-9923	gni (천리안) gninc (나우누리) goodneighbor@channeli.net www.gni.or.kr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 35-1 마포현대빌딩 4층
한국인권 단체협의회	T. 02)763-2606 F. 02)745-5604	gyusun@chollian.net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선2동 592-72 층 민변사무실
한국청소년학회	T. 02)522-8111 F. 02)522-8110	zpiyout5@chollian.net	(137-063)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3-41 구미빌딩4층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T. 02)743-2511 F. 02)743-2515	yks80 (하이텔, 천리안)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Distr.
GENERAL
A/51/506/Add.2
12 December 1996
ORIGINAL : ENGLISH

Fifty-first session
Agenda Item 110(b)

인권문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을 포함한 인권문제

사무총장 검토
추가자료

사무총장은 총회에 1995년 12월 총회결의안 50/177에 의거한 유엔인권교육10개년(1995-2004)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A/51-506).

첨 부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서 문

1.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6. 비엔나)는 비엔나선언(Vienna Declaration)과 행동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에서 인권교육, 훈련과 대중홍보는 공동체 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증진과 달성을 위해, 그리고 상호이해, 관용과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가는 문맹을 없애고 완전한 인성발달과 인권 존중 및 기본적인 자유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것은 모든 국가와 기관들이 모든 형식적 및 비형식적 학습기관의 교과과정 주제로서 인권교육, 인권법(humanitarian law), 민주주의 그리고 법규칙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세계회의의 제안에 따라, UN총회는 1994년 12월 23일 결의안 49/184에서 1995년 1월 1일 UN인권교육10개년사업을 시작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총회 보고서에 포함된 10개년 행동계획 초안을 받아들였다(A/49/261-E/1994/ 110/Add.1, annex).

3. 총회는 모든 정부가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문맹 제거와 인성의 완전한 개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증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 총회는 정부 및 비정부 교육기관들이 실행계획의 권고에 따라, 특히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총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행동계획 실행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4. 동결의안에서 총회는 특별기구들과 유엔 프로그램들이 그들 각자의 권한 영역 안에서 행동계획 실행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 광범위한 범위의 비정부 단체 등이 인권분야의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에의 참여를 증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 현재의 인권모니터 기구들이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 책무에 대한 회원국의 실행을 강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5. 행동계획은 다섯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욕구 사정 및 전략 수립 ; 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강화 ; 인권교육자료 개발 ; 대중매체 강화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세계적 보급. 행동계획은 국가적·지역적 활동과 사업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두며,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 단체, 전문가 연합, 개인, 그리고 대규모의 시민사회들 사이의 협력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6. 행동계획의 다양한 활동에 비정부단체, 대중단체와 전문가연합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공의 주요소로 여겨진다. 총회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특히 다른 사회정의 집단, 인권 옹호자, 교육자, 종교단체와 미디어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발전과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지역적·국가적 비정부 단체들에게 인권분야의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7. 행동계획은 이 문서의 부록에 제시된다. 그것은 총회와 인권위원회가 요청한대로 정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부 록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인권교육 - 삶을 위한 교육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 Human rights education - lessons for life

목 차 (단락)

- I. 기본원리와 정의 (1-2)
- II. 일반 원칙 (3-9)
- III. 목적 (10)
- IV. 행동주체 (11-19)
- V. 대상집단 (20-26)
- VI. 조정 및 실행구조 (27-28)
- VII. 실행프로그램 (29-92)
 - A. 요소 1 : 욕구과악 및 전략수립 (30-42)
 - B. 요소 2 : 국제적(international)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43-52)
 - C. 요소 3 : 지역적(regional)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53-56)
 - D. 요소 4 : 국가적(national)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57-63)
 - E. 요소 5 : 지방(local)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64-69)
 - F. 요소 6 :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70-77)
 - G. 요소 7 : 대중매체 역할 강화 (78-84)
 - H. 요소 8 :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85-92)
- VIII. 세계적 중간평가 (93-95)
- IX. 10개년사업의 완료 (96)
- X. 10개년사업 후속작업 (97-99)

I. 기본원리와 정의

1. 유엔인권교육10개년(이하 10개년)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7조, 비엔나 선언 제33항과 제34항 그리고 비엔나 행동프로그램 제78항에서 82항까지를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인권문서 규정에 기반을 둘 것이다.

2. 그러한 규정에 따라 그리고 10개년의 목적을 위해,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알리고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편적 인권문화 건설을 목표로 하는 훈련, 홍보 그리고 정보 노력으로 정의되며 다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 (b) 인성과 그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개발
- (c) 모든 국가, 원주민, 인종적·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 집단들 사이에 이해, 관용, 성평등 그리고 우애의 증진
- (d)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e)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 촉진

II. 일반 원칙

3. 유엔인권교육10개년은 이 행동계획의 I 장에 제시된 정의와 기본원리를 따를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그리고 다른 관련 국제적인 인권문서 등에 담겨있는 모든 규범, 개념, 그리고 가치들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 광범위한 인식을 만들어내고자 할 것이다. 10개년은 문맹을 없애고자 하는 국가와 다른 주체들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이 인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회의 다원적 삶에서 불변의 요인임을 이해한다.

4.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유엔이 정의한 바와 같이 10개년 하의 모든 활동들에 채택될 것이다.

5. 10개년 목적을 위한 교육은 시민사회제도, 가족,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비형식적 학습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업적·전문적 훈련을 통한 형식적 학습에서도 모든 남녀 연령집단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6. 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10개년을 위한 인권교육 노력은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들이 인권을 추상적 개념의 표현에서 그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의 현실로 변화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인권 특성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강화를 인식하여, 10개년에 따른 인권교육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의 보

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제적·사회적 진보와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8. 10개년에 따른 인권교육은 성별 편견, 인종적, 그리고 그외의 다른 편견들(stereotypes)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9. 10개년에 따른 인권교육은 이 행동계획과 이것이 기반하고 있는 국제 인권문서들에서 밝힌 모든 다른 원칙들과 일관되게 학습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목 적

10. 10개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육구과악과, 비형식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형식교육에 있어 모든 학교수준에서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

(b) 세계적·지역적·국가적,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 구축 및 강화

(c)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개발

(d)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

(e) 가능한 최대한 많은 언어로 그리고 다양한 문해능력과 장애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IV. 행동 주체

11. 정부는 자발적 기금을 위한 강화된 기부자 지지와 국제적·국가적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제도교육체제에 국가적 인권교육 교과과정의 소개 또는 강화, 인권에 대한 국가적 홍보 캠페인 실시, 그리고 인권 자원, 정보, 그리고 훈련센터에 대한 국민대중의 접근 개방 등을 통해 10개년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2. 인권위원회, 옴부즈맨 사무소, 인권 연구 및 훈련기관 등과 같은 국가 인권기구는 국가적 수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조정·시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3. 국가적 비정부단체, 일반대중 단체, 전문가 연합, 그리고 관련된 개인들은 10개년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고무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단체는 기술적 지원과 훈련,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돕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 프로그램, 정부, 그리고 인권교육 활동에서 그들을 돕는 다른 활동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14.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최고 담당자이다. 그는 특히 1993년 12월 30일의 총회 결의안 48/141을 따르면서 인권분야와 관련되는 유엔교육과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조정할 책임을 맡는다.

15.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고등판무관이 정책방향과 활동 우선 순위를 정하면 센터가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통일체이다. 인권센터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UNESCO)와 협의하여, 요청할 경우 정부에게 인권교육, 훈련, 정보, 협력 및 자문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센터는 이 점에 있어서 교사, 경찰, 교도공무원, 변호사, 판사, 공무원, 미디어, 군대, 비정부단체, 선거 공무원, 그리고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센터는 국제적인 민정 사무관, 개발 공무원, 그리고 중재인(peacekeepers) 등에게 지속적으로 인권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16. 유엔인권조약 감시기구들인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 그리고 다른 모든 유엔인권기구와 프로그램들은 10개년 기간 동안 그들에게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인권고등판무관, 그리고 인권교육과 관련된 다른 대상들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통해 인권교육 증진을 촉진할 것이다.

17. UNESCO는 교육, 교육방법, 그리고 인권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NESCO 학교 네트워크, 클럽, 인권 강좌, 그리고 국가위원회를 통해 행동계획에 따른 프로젝트들의 기획·실행·평가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UNESCO는 행동계획 실행에 있어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도록 요청될 것이다.

18. 유사하게, 다른 유엔 특별기구들 - 인권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무국의 부서들과 프로그램들 -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자원봉사단(UNV),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간거주센터(Habitat), 사회개발·인도주의센터, 유엔대학(UNU), 그리고 연구 및 훈련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유엔기관들 - 은 인권교육을 위한 현재의 역량이 10개년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조정되고 결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고등판무관과 함께 활동하도록 격려될 것이다.

19.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단체 등과 같은 다른 국

재단체들은 인권교육 분야의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하도록 격려될 것이며 10개년의 목적을 위해 인권고등판무관과 공동 노력하도록 촉구될 것이다.

V. 대상집단

20. 10개년에 따라 수행된 활동들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 둘 다를 통해 10개년의 목적을 가능한 광범위한 지지자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될 것이며, 이를 위해 훈련자 훈련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역량을 구축하도록 계획된 접근이 촉진되어야 한다.

21. 일반 대중들은 그들에게 국제인권문서들에 나타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도록 계획된 원대한 인권 정보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22. 10개년에 따른 인권교육 사업은 모든 수준의 문해능력 및 교육 수준의 사람들과 장애자들에게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의 활용을 포함할 것이다.

23. 10개년에 따른 인권교육 활동 중에서도 여성, 아동, 노인, 소수집단, 난민, 원주민, 극빈자,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환자, 그리고 다른 취약집단들의 인권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것이다.

24. 경찰, 교도공무원, 변호사, 판사, 교사,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자, 군대, 국제적 민정 사무관, 개발 공무원, 그리고 중재인, 비정부단체, 미디어,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인권 실현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밖의 집단들에 대한 훈련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25. 학교, 대학, 전문적·직업적 훈련 프로그램들과 기관들은 초기 아동기, 초·중등, 중등과정 이후 그리고 성인교육 단계에서의 형식교육으로의 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제적 제공자들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인권 교육과정과 그에 맞는 교수(teaching) 및 교재를 개발하도록 격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26. 시민사회에 적합한 기관들 - 비정부단체, 노동자 및 고용자 단체들, 노동조합, 대중매체, 종교단체, 지역사회 단체, 가족, 독립적인 정보·자원·훈련센터, 그리고 기타단체들 - 은 인권교육을 비형식적 프로그램과 통합시키는 목적을 위해 정부와 국제적 제공자들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비형식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격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VI. 조정 및 실행 구조

27.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행동계획 실행을 촉진하고 조정할 것이다. 그는 행동계획과 관련된 유엔인권조약 모니터링 기구 및 현장에 기초한 인권 기구들과 협의하고, 인권교육 분야에서 그러한 기구들에 의해 제안된 권고들을 지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그는 정부, 종교단체, 국가기관, 특별기구, 비정부단체, 그리고 일반대중 집단 및 전문가 집단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러한 자원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진 발전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28. 국가적·지방적 수준에서의 활동이 인권교육의 효과적 촉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행동계획은 효과적인 국제적 조정 구조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a)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모든 나라에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담기구는 관련 정부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부문과 교육자 대표자 등을 포함하는 특별 위원회들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옴부즈맨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적인 인권훈련 및 연구기관 등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적절한 구조나 기관들이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될 수도 있다.

(b) 각 국가전담기구는 국가적인 인권교육의 욕구 확인, 국가행동계획 개발, 자원 확보, 10개년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적·세계적 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10개년 목표 실현을 위한 요구, 제안과 발전에 대해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c) 각 국가전담기구는 또한 개별 국가 내에서 지방적·대중적 수준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투입, 정보 그리고 지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d) 각 국가는 국가적인 인권 수단과 연구, 훈련자 교육, 인권교육 자료의 준비, 수집, 번역, 보급, 그리고 회의, 워크숍, 그리고 교육과정 조직에 종사할 능력을 가진 훈련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될 것이며, 그러한 센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역할 강화를 위해 일하도록 격려될 것이다.

(e)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단체들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10개년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지방적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VII. 실행프로그램

29. 10개년의 특별한 목적인, 각 프로그램 요소들에 대한 후속작업과 평가를

위한 목적과 수단 현실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것이다.

A. 요소 1 : 욕구파악 및 전략수립

목적

30. 요소 1의 목적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수준에서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욕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31.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고 UNESCO와 협력하여 1995년도에 현재의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것이며, 그 조사와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32. 예비보고서는 현재의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하고, 10개년 목표의 현실화를 위한 결점과 필요사항을 확인하며, 10개년 동안 그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활동을 권고할 것이다.

33. 고등판무관의 예비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참여한 모든 국가 전담기구, 세계적·지역적 단체, 비정부단체, 특별기구와 프로그램, 그리고 관심있는 다른 기관들은 고등판무관에게 그들 자체의 독자적인 평가와 활동들에 바탕을 둔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특히, 국가 전담기구는 자신의 국가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즉시 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34. 조사와 평가 결과 작성된 최종예비보고서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의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며 특히, 유용한 인권교육 자료의 수와 유형, 현재의 인권교육 기구와 센터, 그리고 상설전담기구, 인권교육 훈련을 받은 교사의 전국비율, 초·중등학교와 중등과정 이후 단계에서 인권교육 교과목을 채택한 학교 비율, 그리고 전문훈련과 비공식적 교육프로그램에서 인권교육 요소의 수량과 유형 등을 파악할 것이다.

35. 예비보고서는 또한 회원국가, 비정부단체, 그리고 10개년의 목적에 공헌하기 위해 현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른 실행파트너들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할 것이며, 그 결과들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36. 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방향의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교육 외의 사회화 과정의 다른 측면을 탐구해야 하며 그림으로써 인권 가치가 보다 효과적

으로 사회 구성구석에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37. 보고서 부록으로 10개년과 협력하는 국가 전담기구, 국제적·지역적 단체, 현재의 인권연구 및 훈련 기관과 센터, 그리고 다른 10개년 협력자들의 명단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부와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비정부 교육기관·단체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 단체, 협회와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와 후속작업

38. 고등판무관의 예비보고서 발표에 따라,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UNESCO, 10개년에 참여하는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기구, 지역적·국제적 관련단체 및 비정부단체 대표자, 정부, 전세계의 교육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0개년에 대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39. 그 회의는 고등판무관의 예비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권고안을 실행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한 계획은 시간계획(timetable), 지방적·국가적·지역적·국제적 실행기구, 예산수립과 집행 및 자원 전략 등을 포함할 것이다.

40. 고등판무관은 그 회의를 예비보고와 회의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재원을 지지할 기부자들을 설득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41. 회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될 것이며 그것은 고등판무관의 예비보고서와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함께 10개년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정부 그리고 국가 전담기구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2. 보완 보고서를 받는 대로 모든 국가 전담기구는 목표집단, 방법론, 시간 계획, 예산과 재원확보 전략을 포함하며, 2000년 중간평가 시기까지 10개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당라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세부 5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B. 요소 2 : 국제적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적

43. 요소 2의 목적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의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들

44. 인권고등판무관의 총괄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인권센터는 선정된 대상을 위한 인권안내서와 훈련매뉴얼 개발을 포함하여, 목표 인권교육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센터는 인권과 사회사업, 인권과 선거, 인권과 사전심리 구류, 그리고 인권보도 등에 대한 매뉴얼과 안내서의 광범위한 보급을 담당할 것이며, 앞으로 인권과 국가기관, 인권과 경찰, 인권과 감옥, 인권과 사법부, 인권과 군대, 인권과 헌법(constitutions), 인권과 갈등해결, 인권과 교사, 인권과 미디어, 인권과 의회 등에 대한 매뉴얼과 안내서를 개발할 것이다. 이 자료들에는 모든 권리의 보편성, 개인성 그리고 독립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명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45. 인권센터는 인권 분야의 자문서비스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 아래,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 모두를 위해 인권교육과 관련된 기술적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46. 인권센터는 UNESCO와 협력하여 모델이 될 초·중등학교 인권 교육과정, 교수법(pedagogical techniques)과 교수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인권센터는 인권분야의 자문서비스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 아래,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47. 각 특별기구는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노력을 강화하고, 각 기구의 권한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공동의 교육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와 일할 인권교육 연계사무소를 지정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각 기구는 고등판무관의 예비, 중간,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위해 고등판무관에게 인권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프로그램과 제작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48. 인권센터는 우선적 인권주제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한 개념, 자료와 방법들을 확인하는 국제적 워크숍 조직을 촉진할 것이다.

49. 세계 인권회의의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인권센터는 인권 기준, 개념과 방법들을 활동의 기획과 실행에 활용하는 데 있어 협력 중재자, 국제적 민정사무관, 그리고 개발 사무소 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이러한 각 집단을 위한 특수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동에 적용하는 데 있어 유엔의 관련 기구 및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50. 인권센터는 관련 특수기구와 국제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국제적 프로

그럼, 국가 전담기구, 교육자, 그리고 10개년과 관련된 자원과 훈련센터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촉진시키기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전자우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교환 등을 포함하는 진보된 기술의 발전과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51. 사무총장은 자문서비스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인권센터가 관리하게 될,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자원기금을 설립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그 기금은 국가 수준의 정부기관과 비정부단체의 인권교육 역량을 구축하는 데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10개년 하의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52. 고등판무관은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들에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요소들에서의 진보와 발전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 요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 요소들과 관련된 각각의 국제적 활동주체는 고등판무관에게 최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C. 요소 3 : 지역적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적

53. 요소 3의 목적은 지역적 수준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54. 모든 지역적 그리고 하위지역 조직들은 인권교육 분야에서 자신들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될 것이며, 또한 각 조직의 개별 지역에서 인권과 관련된 공동의 교육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와 일할 인권교육 연계사무소를 지정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연계사무소는 또한 고등판무관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를 위해 각 조직을 대표하여 고등판무관에게 인권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프로그램과 제작된 자료들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55. 그러한 조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하위지역에서는 고등판무관이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조직을 구축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56. 고등판무관은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들에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요소들에서의 진보와 발전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 요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 요소들에 참여하는 각각의 지역조직은 고등판무관에게 최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D. 요소 4 : 국가적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적

57. 요소 4의 목적은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58. 각 국가는 국제적 계획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하며 인권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그러한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은 모든 관련된 국가적·지방적 관계자와 집단들과 협의하여 1995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것의 실행에 있어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전해져야 한다. 각 국가계획은 취학전, 초·중등학교, 고등교육, 전문학교 등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 훈련과 일반대중 정보를 포함한 비형식적 학습 등의 강화를 위한 특수한 목적, 전략과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국가 전담기구는 정기적으로 구조의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59. 28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모든 국가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를 지정하도록 요청될 것이며, 그것은 육구 확인, 국가행동계획의 발전, 재원 확보와 인권고등판무관과의 세계적·지방적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60. 모든 국가는 국가적 인권자원·훈련센터(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 또는 그러한 센터가 이미 있는 곳은 국가적·지방적 수준의 인권교육을 지지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고무될 것이다. 국제적·지역적 프로그램과 단체들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그러한 센터의 설립과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고등판무관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를 위해 고등판무관에게 그러한 센터의 존재, 운영, 기능과 자원 등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1. 국가적 인권자원·훈련센터는 국가 전담기구와 협력하여 특히 다음의 업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a)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

- (b) 훈련자료들의 번역과 문화적으로 적합한 각색
- (c)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
- (d) 훈련자들을 위한 성감수성(gender-sensitive) 훈련
- (e) 인권교육 개발에 관심있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인턴쉽프로그램 조직
- (f) 인권에 대한 예술, 음악, 연극 등을 위한 특별 문화행사 조직, 잡지 발간, 대중도서와 시청각 자료 개발
- (g) 인권교육 분야의 국가 전문가와 기관들의 명단 관리
- (h) 국제적으로 후원되는 인권교육을 위한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 실행 지원
- (i) 인권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과 집단들에게 유용한 자문, 출판, 교수자료 개발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인권 신장 서비스 확립. 요청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지침과 자료 개발 지원이 유용한 국제적 프로그램과 조직들에 의해 국가적 자원·훈련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와 후속작업

62. 고등관무관은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들에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요소들에서의 진보와 발전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 요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 요소들에 참여하는 각각의 국가 전담기구는 고등관무관에게 최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63. 고등관무관의 보고서는 모든 국가 전담기구에 유용할 것이다. 그들은 프로그램 개발, 재원과 기술적 지원, 10개년의 다른 주제들과의 연계를 위해 그의 권고를 참조하고 보고서에 실린 다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 요소 5 : 지방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적

64. 요소 5의 목적은 지방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65. 국가적 전담기구는 인권교육을 위해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역량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고 요소 4에서 설명한 전국적 명단에 들어있는 모든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조직을 포함하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 자원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포함한 그들의 노력과 자원들이 그러한 지역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들을 가능하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될

것이다.

66. 국가적 전담기구와 자원·훈련센터들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조직들은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문해교육, 지방 비정부단체들, 가족 파견활동과 종교교육을 통해 대중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67.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는 지방 모임 및 대표자들과의 정규 협의와 연례 회의를 조직할 의무와, 국가적인 평가, 행동계획, 프로젝트 그리고 고등판무관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68.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집단들은 또한 사회의 모든 수준과 부문에 10개년의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프로젝트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되어야 한다.

평가와 후속작업

69. 고등판무관은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들에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요소들에서의 도전, 진보, 그리고 발전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 요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 요소들에 참여하는 각각의 국가 전담기구는 고등판무관에게 각 국가 전담기구와 협력하는 지방 및 지역사회 기반 집단들의 갯수 및 유형들과, 부딪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지방 수준에 행해지는 지원들에 대한 최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F. 요소 6 : 인권자료의 공동 개발

목적

70. 요소 6의 목적은 효과적인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을 확고히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71.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UNESCO와 10개년의 다른 모든 주체들과 협력하여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와 함께 지침서(manuals), 안내서(handbook), 교과과정, 시청각 도구 그리고 그의 자료들을 포함하는 유용한 인권교육 자료들의 현재 목록과 정기적 갱신 목록들을 개발하고 출판할 것이다. 이 목록은 또한 어떻게 그러한 자료들이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

록할 것이다. 그 목록은 가능한 빨리 전자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목록과 관련되어 수집된 교육자료는 인권센터에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집단들의 요청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72. UNESCO와 다른 국제적·지역적 단체와 기구들은 고등판무관의 목록 편집에서 나타난 빈틈과 필요한 현재 자료들의 강화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그러한 자료 개발 활동을 강화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73. 국제적·지역적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자료들은 국가 전담기구들과 국가적 자원·훈련센터들의 검토와 참여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국제적·지역적 프로그램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번역, 문화적 개작, 실험 및 개정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 프로그램에 활용되어야 한다.

74. 모든 국가 자원·훈련센터는 국가 및 지방 프로그램 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국가 전담기구는 고등판무관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점에 있어 국가적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전담기구는 그러한 자료들이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집단들, 국가적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전국적 비정부단체와 10개년의 다른 국가적 주체들에 활용될 수 있게 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75. 특별 대상자들(specialized audiences)을 위한 새로운 자료의 개발과정에서, 이 행동계획의 I 장에서 V 장 사이에 설명된 기본원리와 정의, 일반 원칙, 목적과 대상집단 등에 더해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 동료적 제시(collegial presentation) : 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훈련 노력들이 실천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 명단(list)으로부터 끌어내져야 한다. 교수나 이론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모으기보다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관련분야의 실천가들 - 변호사, 판사, 경찰공무원 등과 같은 - 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수-학생 훈련모델에 의해서보다 경찰들끼리 토론하는 방식과 같은 동료적 접근(collegial approach)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b) 훈련자 훈련과 역량 구축(training the trainers and capacity-building) : 인권과정 참여자들은 그들의 책임이 훈련과정 완료 후에 계속될 것임을 이해하고 선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보통 직무 신분으로 복귀한 후 그들 스스로 훈련이나 보급 노력을 수행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해진 정보가 관련 기관들을 통해 확산됨으로써 그러한 과정의 효과는 몇 배로 증가된다.

(c) 교수 기술(pedagogical techniques) : 10개년에 따라 개발된 과정들은 각

경우에 특별대상자(specific audiences) 훈련을 위한 다양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제안하도록 계획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창조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수방법 활용을 위한 기술들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수방법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예정된 참여를 확보하는 최선의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한 기술들은 특별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작업집단, 강의-토론, 사례연구, 패널토론, 원탁토론, 브레인스토밍 회의, 격려와 역할연기, 현장답사 활용과 시청각 보조기구 활용 등을 포함한다.

(d) 대상자의 특수성(audience specificity): 보편적 적용성에 대한 모호한 원칙의 단순 반복은 정해진 대상의 실제 행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말로 효과적이고 노력할 보람이 있는 훈련과 교육노력은 경찰, 보건 담당자(health care worker), 변호사, 학생 등과 같은 특정 대상들을 목표로 하여 그들에게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10개년의 교수활동 내용은 거리가면 이론적 개념보다는 대상자들이 살고있는 지역사회 의 일상 활동 및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e) 실천적 접근(practical approach): 한 나라의 경찰서 폭력을 조사한 최근 의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증거에 대해 경찰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심문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시대의 방법으로 심문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심문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의 방법을 비교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심문 방법을 연구하고 알기 위한 기회를 갖고싶어 했다. 그러한 이야기는 두가지 중요한 핵심을 드러낸다. 첫째, 고문과 같은 심각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세계의 경찰(그리고 다른 집단들)은 그 규칙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훈련 노력들은 믿을만하지도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0개년 하의 교육적 노력들은 해당 직업을 위한 최선의 실천에 대해 전문가들의 권고와 문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대상자의 직무 수행을 위해 증명된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f) 기준의 포괄적 제시(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standards): 10개년에 따라 개발된 과정과 자료들은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도구들과 간략한 학습 도구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에 맞게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g) 민감하도록 가르치기(teaching to sensitize): 10개년 에 따라 개발된 자료와 과정의 목표는 기준과 실천기술 전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무의식적인 폭력적 행동 가능성에 민감하도록 고안된 연습 또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훈련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

나 행동에서 성적(gender) 또는 인종적 편견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잘 개발된 훈련은 매우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여성들에게 적용한 특정 기준의 특별한 취지를 항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다양한 국제적 문서에서 발견된 것처럼, “불명예스러운 취급(degrading treatment)”이라는 말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 적용되었을 때, 또는 다른 문화집단에 비해 또다른 문화집단에 적용되었을 때, 다른 실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h) 기획과 적용의 유연성(flexibility of design and application) :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과 자료들은 훈련받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의 견고한 초점이나 접근이 아닌, 그것들의 융통성있는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들은 특정한 문화적·교육적·지역적, 그리고 경험적 필요와 대상집단 내의 다양한 잠재적 대상자들(audiences)의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i) 평가 도구(evaluation tools) : 훈련 자료와 과정들은 실험 질문지 등과 같은 사전 및 사후 훈련 평가 연습을 포함해야 하며, 이것들은 세가지 중요한 목적을 제공한다. 사전단계 질문지는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훈련자가 자신의 과정을 대상자의 특정 교육적 필요에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후단계 질문지와 평가활동은 훈련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10개년 하에 제공된 과정들의 지속적인 (중요한) 변화와 개선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76. 고등관무관은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와 함께, 모든 국제 및 지역단체들과 국가 전담기구에게 이 요소에 설명된 유용한 훈련자료들의 현재 목록을 배포하는 데 유용할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77. 고등관무관은, 국가 전담기구와 10개년의 다른 협력자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발전된 요구에 의한 새로운 자료들을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격려될 것이다.

G. 요소 7 : 대중매체의 역할 강화

목적

78. 요소 7의 목적은 인권교육 촉진에 있어 대중매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79. 인권교육을 다양한 문해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외진 곳에서 살거나 일하

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부문에 실현시키는 데 대중매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언론인, 방송인, 그리고 다른 매체 전문가들은 10개년 기간 동안 인권 정보와 공교육을 그들의 작업에 통합시키는 데 증가된 훈련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10개년에 따른 훈련과 기술적 협력 제공에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과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권센터는 매체를 위한 인권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매체 훈련활동을 증대시켜야 한다.

80. 10개년의 모든 관계자들은 매체 접촉에 있어, 매체 독립성과 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인권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공공 담화에 기여하는, 인권 이슈의 강화된 대중적 방송(coverage)과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81.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의 협력으로 유엔공공정보국(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은 유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인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것이다. 공공정보국은 인권에 대한 비디오, 영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도록 요청될 것이다.

82.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공공정보국과 협력하여 인권에 대한 공공정보와 교육을 위한 매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 기준과 기제를 홍보하기 위한 대중매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83. 세계 인권 대중홍보캠페인(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Human Rights)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관련 비정부단체·기구와 협력하여 관련유인물, 연구, 그리고 다른 대중홍보 인권 자료들의 발간을 활성화할 것이다. 인권센터는 또한 1995년도의 유엔 50주년 기념, 1998년도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과 같은 대중적인 인권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것이다. 고등판무관은 이러한 행사에 대한 세계적인 매체 방송을 촉진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84. 고등판무관은 그의 예비, 중간, 최종보고서에서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인권이슈에 대한 매체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된 대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국가 전담기구는 인권이슈에 대한 국가 언론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평하고 그러한 보도에 대해 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유사한 언론 비평이 인권센터와 공공정보국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H. 요소 8 :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목적

85. 요소 8의 목적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언어로, 그리고 다양한 문해수준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다른 형태로 전세계에 세계인권선언을 보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86.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UNESCO, 공공정보국과 유엔 정보센터와 협력하여 1995년부터 현재 전세계에 있는 세계인권선언이 인쇄된 언어와 그림과 시청각 형태의 번역판들을 조사할 것이며, 각 회원국의 다양한 보급판들의 유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87. 조사결과에 더해, 고등판무관은 각 회원국의 국어로 된 최소한 하나의 인쇄된 형태와 최소한 하나의 오디오나 각 회원국의 다양한 문해수준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형태가 있음을 확인하는 데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세계인권선언의 훨씬 많은 언어 번역판 생산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소수인과 다른 국가 언어, 그리고 다른 문해수준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른 형태들로 된 추가 도구들이 곧바로 개발되어야 한다.

88. 고등판무관과 각 국가 인권교육 전담기구와 협력하고 조사결과 개발된 계획에 따라, 정부와 전국적 비정부단체, 대학과 기관들은 필요한 경우 국제적 단체와 프로그램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세계인권선언을 적절한 형태로 번역, 출판, 보급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인권센터, UNESCO, 다른 유엔기구와 국제적 비정부단체들의 자문서비스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단체와 프로그램들은 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그러한 지원을 수행하도록 촉구될 것이며 국제적 공동체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지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89.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주요 경축행사가 조직될 것이며, 그 기간동안에는 세계인권선언 규정에 대한 보편적 지식과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선언이 세계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회원국들의 모든 인권교육 단계에 통합되도록 하는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인권선언 보급에 대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지역단체와 국가 전담기구들은 행사에 참여하고 국제회의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90. 고등판무관에 의해 수행된 조사결과와 1998년에 개최될 국제회의 보고서 는 모든 지역단체, 국가 전담기구, 그리고 10개년의 다른 관련협력자들의 도움으 로 완성될 것이다.

91. 모든 지역단체, 국가 전담기구, 그리고 10개년의 다른 관련협력자들은 고 등판무관에게 2000년도 중간평가와 2004년 최종보고서를 위해, 기념행사와 인권 선언의 가능한 번역 형태 등과 같이 조사완료 이후 이루어진 발전과 이러한 프로 그램 요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요구와 도전들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92. 고등판무관은 그러한 모든 정보를 그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것 이며, 모든 프로그램 협력자들은 그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와 권고안들에 따라 그 들의 노력을 위한 방향설정을 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VII. 세계적 중간평가

93. 2000년도에는, 10개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중간평가가 10개년의 다른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 센터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고등판무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총회에 보고할 것이 다.

94. 평가보고서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무엇이 수 행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설명하고, 해결하지 못한 한계와 요구들 을 확인하며, 10개년의 남은 5년 동안의 활동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95. 고등판무관의 목적을 위해 모든 국가 전담기구, 국제적·지역적 단체, 비 정부단체, 특별기구와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들은 그들의 고유한 독립적 평가와 활동에 근거하여 고등판무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특히 국가 전담기구는 자국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고등판무관에게 보 고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IX. 10개년사업의 완료

96. 2004년은 인권교육10개년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해는 국 가 행동계획 실행을 통해 보편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목표의 해가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권교육 자료의 총괄적 수집을 완료하고 모든 회원국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표의 해가 될 것이다. 10개년의 결과,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 역량이 전세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X. 10개년의 후속작업

97. 10개년의 결과 이후, 고등판무관은 인권센터의 지원과 UNESCO의 협력으로, 지방적·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 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고등판무관은 최종보고서에서 세계인권선언 번역 언어, 국제적·지역적 단체와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인권교육 지침서 및 안내서와 교수자료들의 수량과 유형, 국가 수준에서 설립된 인권교육기관·센터, 또는 상설전담기구의 수, 인권훈련을 받은 교사의 전국적 비율, 인권교육과정을 채택한 학교 수, 전문분야와 비형식·무형식 교육에서의 교육의 수와 종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전을 가능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어떻게 다양한 언어의 세계인권선언 번역판들과 인권 교수자료가 관련집단과 개인들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8. 10개년 하의 국가적·지역적·국제적 구조와 네트워크는 인권교육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상설 전담 및 중재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UNESCO와 협력하여 그러한 단체와 전담기구의 현재 명단을 유지하여 요청에 따라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99. 10개년 하에 개발된 인권교육 자료들은 변화하는 요구와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보완·개정되어야 하며, 최대한 광범위한 기반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